

백면
(아무것도 안 들어감)

- * 본 『여성과 인권』은 연2회 발간되는 성매매방지 정책전문지로서 저작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은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지와 동일하게 흑백으로 들어감

여성과 인권

2012년 상반기 (통권 제7호)

• 책머리에 / 김호순

특집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바로보기

지구화된 성매매 시장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진 엔리케즈(Jean Enriquez)	2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 : 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	17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구매 수요에 대한 억제 방안 / 정재원	30

현장연구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현장의 목소리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특성 및 송출구조 / 남재우탐장 인터뷰	50
해외로 인신매매된 성매매여성의 삶과 법적 지원의 한계 / 최수연	64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목소리 :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 최선화	75

논문 |

성구매 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 / 맥스 월트먼(Max Waltman)	88
---	----

이슈&피플 |

- [해외전문가 인터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그 단면을 보다,
세계 최초의 오페라 “Anyal7” / 작가 벤 카이예(Ben Kaye) 인터뷰 … 124
- [여인이 만난 여인] ‘제주 공무원 성매매 사건’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송영심소장 인터뷰 …………… 130

주제서평 |

-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 김주희 …………… 138

정보마당 |

- 성매매 관련 통계 …………… 150
-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1년 발간) …………… 156
- 성매매 관련 법령(2012년 개정) …………… 166

● 책머리에

최근 언론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미국무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신매매의 발생국이자 경유국으로, 한국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국내를 비롯 세계 각국으로 매매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한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 전지구적 차원의 국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인 여성의 피해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고된다.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유기적인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국가별 상이한 입장 차이로 인해 인신매매의 폐해와 심각성이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전지구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성과 인권』(통권 제7호)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한 원인과 구조, 실태와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바로보기〉를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진 엔리케즈의 「지구화된 성매매 시장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전지구적 관점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 및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어 논지를 전개하였다. 저자는 인신매매의 발생 원인을 성매매를 “신체를 팔고 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시각과 가부장제, 인신매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에서 찾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 산업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와 지구적 자본주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연대체 구축, 범죄 규정 등 수요적 측면과 더불어 성매매 교육 및 프로젝트 실시 등 공급적 측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캐롤라인 노마의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 :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성매매 합법화를 고수하는 호주정부의 정책이 인신매매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인신매매의 척결을 위해 성매매 폐지론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의 정책과 맞추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재원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구매 수요에 대한 억제 방안」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계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성매매 카르텔 구조의 거대한 힘을 지적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공급적 측면과 더불어 수요적 측면의 적극적 차단 방안 모색을 논의한다. 저자는 해결방안으로 성매매 수요 차단의 매커니즘 구축, 여성의 접대부 역할 금지 법안 마련, 겸업형 업소 폐쇄 및 업종 전환의 입법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장연구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사건의 특성과 송출구조를 파악하고, 해외로 송출된 한국 성매매여성의 실태와 현장 지원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특성 및 송출구조」는 부산지방경찰청 남재우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성매매 관련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 현황과 여성들의 송출구조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사건 수사에 있어 여성단체와의 공조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해외 성매매 사건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수연의 「해외로 인신매매된 성매매여성의 삶과 법적 지원의 한계」는 부산 지역 내 해외 성매매여성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삶과 피해실태, 법적 지원의 한계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선화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목소리 :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지난 6월 5일 개최한 국제심포지움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종합토론에 나온 향후 과제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인 여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적극적 홍보활동,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정책을 제시하였다.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맥스 월트먼(Max Waltman)의 「성구매 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 논문은 스웨덴의 성구매 금지법의 잠재적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다. 성구매자를 범죄화시키는 법의 시행은 인신매매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며,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국가의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슈&피플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를 조명한 세계 최초의 오페라 “Anyal7”의 작가 벤 카이에(Ben Kaye)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오페라를 기획한 배경,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다. 그리고 올해 초 발생한 제주도 공무원 성매매 사건과 현장의 활동, 사건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송영심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한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뿌리 깊은 성매매의 역사를 다룬 도서를 통해 국가와 권력이 어떻게 성을 거래해 왔는지 고찰해보는 주제서평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호부터 정보마당을 신설하여 성매매 분야의 중요 정보 및 이슈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호에는 성매매 관련 각종 통계 및 발간된 연구자료, 개정 법령 등의 정보를 게재하였다.

『여성과 인권』은 성매매 방지 및 여성인권을 주제로 한 정책전문지로서, 국내·외 이슈를 분석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지가 우리 사회 내 성매매 방지 현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방향 설정 및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2012년 6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김호순

특 집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바로보기

- 지구화된 성매매 시장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 진 엔리케즈(Jean Enriquez)
-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 :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캐롤라인 노마(Caroline Norma)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구매 수요에 대한 억제 방안 / 정재원

지구화된 성매매 시장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진 엔리케즈(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 아시아태평양양지부 대표)

재산과 상품으로써의 인권

노예(Slavery)라 함은 “소유권에 귀속된 어떤 형태의 힘이 지배하는 인간의 지위나 상태”를 일컫는다.¹⁾ 소유권이란 개념이 많은 사회에 등장하면서 노예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말해 태생적으로 계급에 근거한다는 말이다. 많은 소작농들이 빚을 갚기 위해 노예가 되었고, 고대 아테네 인구의 1/4 정도가 노예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개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여성은 성적 노예로 활용되었다.

제국의 확장 과정에서 보면, 히브리인이나 이집트 전쟁의 포로들처럼 지배 국가의 국민이나 이주자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다. 파라오를 위한 “조공(tributes)”에는 노예도 포함되었다. 노예들의 이동은 영토의 식민 정복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재임 기간 당시 노예 수는 이탈리아 전 인구의 1/4로 추산된다. 노예제도의 ‘전달(delivery)’은 제국주의의 이익이었으며,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국내적으로도 발생하는 것이었다. 유럽 식민지의 노동 수요 증가와 유럽 무역업자의 등장은 노예 제도를 극악무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유럽인들이 미국에 도착한 이후 농장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1518년 후

1)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전담반의 정의.

인 아프리카 노예를 실은 배가 첫 출항하게 되었다. 그 후 350년 동안 영국의 북미 식민지 광산 개발과 함께 인신매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²⁾

여성의 몸 착취는 정치적·경제적 정복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서양 노예선의 선주였던 존 뉴튼(John Newton)은 운송 중 발생하는 강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묘사했다. “발가벗긴 채로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이나 여자아이가 승선하면... 야만적인 백인들의 비열함에 표적이 된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나누어지고... 저항하거나 거절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³⁾ 노예였던 에퀴아노는 “킹스선의 백인 선원들이 10살도 안된 여자아이와의 야만적 관계에 만족하는 모습”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이 사건이 있고 오랜 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 군인을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납치와 조달이 시작되었다. 버마의 한 여자아이 사례가 말해 주듯이, 많은 수의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과 ‘해외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속아 넘어갔다. 시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0명~30명에 달하는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serviced)’를 제공했다. 전쟁 기간 동안 보통 여성의 몸은 ‘상품(goods)’으로 취급 받는다. 한 일본 군인은 “우리는 군에 설치된 업소든 일반 마을이든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강간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예화란 역사적으로 볼 때 계급, 인종, 성(sexual) 불평등에 기반한 것이다.

오늘날 여성과 여아를 성매매로 유인하고 모집하는 수단은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보수와 돈이 결부된 경제적인 것이다. 심지어 결혼 제도를 통해 유인되기도 한다. 오늘날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분석해보면,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주된 목적지는 지구의 북반구이며, 목적지 국가의 도시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빠르게 확장되고

2) Perry, M, et al. A History of the World. 1988.

3) Hochschild, A. Bury the Chains. 2005.

있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장과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적 상품에 대한 수요이다. 과거 식민 정복자와 지역 하수인들이 식민지 여성을 성적 노예로 취급하고 성착취를 위해 제국으로 이송했던 것과 같이 인신매매 또한 제국주의적 인종차별주의와 맥을 함께 한다. 즉, 악화되고 있는 오늘날 인신매매 문제의 기저에는 경제적, 정치적, 인종적, 성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대 노예제도의 노예들이 오랜 기간 지원받고 보호되었던 것과는 달리, 성매매와 같은 현대판 노예제도의 노예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버릴 수 있으며, 다시 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⁴⁾

여성의 몸이 구매자와 업주에 의해 착취되는 성매매는 '시장'의 '공급'을 담당하는 인신매매, 수요적 측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함께 성산업 또한 국제화되었다. 수요는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공급이 확보되기를 원한다.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은 남반구 국가의 관광산업 투자, 섹스관광을 통한 구매자의 직접 구매, 혹은 단순한 정보 통신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가 내포하는 인간의 상품화, 가부장제, 인종차별주의 등 수요를 떠받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수요 자체를 비난하지 않고, 인신매매를 비난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인신매매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만을 중심으로 비판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인간의 노예화를 조장하는 수요를 창출하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표면화시키고 있는 산업, 바로 성산업의 근절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존의 노예제도에서 수요 측면, 즉 식민 정복자들, 자원, 토지, 노예 착취를 통해 이윤을 추구했던 대농장주를 비판했듯이⁵⁾, 현대판 노예제도

4) Leidholdt, D. Prostitution: a Form of Modern Slaver.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의 (1998년 스위스 제네바) 발표 논문.

5) 포르투갈 식민지의 파젠다스 농장과 스페인 식민지의 하시엔다스와 유사한 고대 이탈리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고위층이 소유했던 대규모 농장

에서도 이익관계가 머무르는 곳이 어딘지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성과 아동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장을 구조적·역사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고대 노예제도가 계급제도와 결부된다는 비판과 같이 오늘날의 성적 노예제도가 젠더 불평등이 계급 및 기타 구조적 불평등과 결부되어 등장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몸은 생존 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의 재산이나 상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남성은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권력을 누리게 된다.

구매자가 있는 수요적 측면

수요는 남성 내면의 ‘필요(need)’를 창출하는 포르노의 도움을 받으며 지구의 북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 존(The John)’이라는 책에 따르면, 엄청난 수의 성구매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구매자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구매를 한다. 이는 성구매가 주로 남반구 국가의 섹스관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는 것이다. 비록 섹스관광이 성산업 자유화에 힘입어 여전히 성구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보기술의 성장과 함께 구매자들은 단순히 ‘손가락만으로 관광지를 걸을 수 있는’⁶⁾ 상황이 가능해 졌다.

매년 약 510만 명의 섹스관광객이 태국을 찾고 있지만, 미국 남성의 75%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구매하고, 48%의 남성이 성매매를 통해 첫 성관계를 가졌다고 미국 연구자들이 밝혔다.⁷⁾ 캄보디아의 경우 60~70%가

6) Malarek, v, the Johns: Sex for Sale and the Men who Buy it, 2010.

7) Brown, L, Sex Slaves: The Trafficking of Women In Asia, 2000.

성구매를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 캘커타에서만 매일 약 6만 명의 남성이 성구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⁸⁾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의 한 연구에서는 런던에서만 매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의 수가 8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⁹⁾

호주의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합법화는 수요 증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만 매주 6만 명 이상의 남성이 성구매를 하고 있다.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합법화가 성매매여성의 안전을 도모하지는 못한다. 1998년 연구는 성구매 남성의 40%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¹⁰⁾ 2002년 이후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의 경우 매년 성구매 수치가 최소 1백만 건에 달한다.¹¹⁾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대중매체나 연구 논문은 남성을 언급하지도, 가시화하지도 않는다. 초점은 오로지 구매되는 자에게 맞춰진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구매자는 면책을 받는다. 금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구매되는 여성을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으로 처벌하겠지만, 남성 구매자에게는 처벌은커녕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는다. 성산업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입장을 취하는 국가의 선전 문구에는 자신들은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성이 성구매를 통해 여성과 심지어 어린 남성,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의 해악을 끼치는지는 언급되지 않는다. 성산업에 대한 묵인과 합법화를 조장하기 위해, 여성이 받는 고통과 불균형한 권력 관계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성산업이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8) 같은 책

9) 같은 책

10) Norma, C. The Age. 2011

11) Herz, A.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with special emphasis on the new German prostitution law. 2003

하지만 무엇보다 극명한 사실은 구매되는 자의 거의 전부가 여성이며 구매하는 자는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성매매에서 자행되는 폭력과 성구매 행위는 포르노를 통해 동기화 된다고 2003년 CATW-AP가 실시한 인터뷰의 응답자들이 말한다. 이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리프카 아니사(Rifka Anissa)와 엘비에이치-에피크(LBH-Apick) 연구에서 그리고 인도의 산라프(Sanlaap)와 에프네 아프(Apne Aap)의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성구매 동기에 대해 17세~22세 남성들은 포르노 때문이라고 답했다. 타블로이드나 잡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남성 잡지'의 포르노 사진을 보면 특정한 어떤 행위를 여성이 하기를 원한다고 비쳐지고, 이를 여자친구에게 요구한다. 이를 여자친구가 거부하면, 성매매여성을 찾게 되고, 포르노에서 그런 것처럼 구매된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진짜 사나이'를 외치는 동료집단의 사회적 압력도 아시아 젊은 남성들의 성구매에 한 몫 한다. 동정을 잃지 않은 남자에 대한 낙인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 18세 이전이라도 '통과의례'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성관계 경험이 많은 남성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고, 그래서 성구매를 자주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여성들은 그저 한 번의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성구매 행위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다. 남성의 섹슈얼리티나 남성성은 현재 성적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그 정의하에서 여성은 단순히 정복되어야 할 수동적 성적 대상으로 간주된다.

금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는 남성성에 대한 가부장적 가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섹스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성들은 성산업을 통해 기존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게 된다.

몇몇 부유층 집안의 젊은 남성이나 직장 남성들은 성구매를 하는데 경

제적인 힘이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했지만, 빈곤층 남성의 증언을 보면 ‘급하면 언제든지 배출해야 한다’는 남성주의적 사고가 더 강하게 작동하며, 돈은 단순히 성구매 수단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한다. 도시 빈곤 지역 조직폭력단의 조직원들은 같은 여성 조직원들에게 ‘샤부(마약의 일종)’를 주거나, 핸드폰 사용 포인트를 주면서 피어내거나, 다른 여성들을 단순히 강간함으로써 성관계를 가진다고 답했다. 이는 성구매 행위와 여성을 강간하는 것 모두 여성의 몸은 남성이 언제든지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질 수 있고, 남성의 성적 욕구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널리 퍼져있는 이런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념은 성산업의 자본을 지탱하는 거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수요 측면 제2의 행위자: 부당 이득자

위에서 인용한 국제이주기구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동남아시아의 성산업 규모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각 나라 국내 총 생산량(GDP)의 2%~14%에까지 달한다.

태국의 경우, “도박, 노동자 인신매매, 가짜 디젤 오일 유통, 무기 거래, 마약 밀수를 제치고 성매매가 가장 큰 지하 조직 사업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연간 성산업 총 거래액이 12억 달러~33억 달러까지 추산된다.

유엔은 인신매매가 매년 70억 달러의 총 수익을 올린다고 추산한다. 이런 까닭에 여성과 아동의 몸을 통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는 이 사업을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다. 국가에 압력을 가해 자신들의 ‘사업’을 합법화하고, 국가는 또한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포르노 산업도 연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포르노는 성산업 광고기능을 통해 남성 구매자의 내적·심리적 ‘필요’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포르노 산업은 인신매매의 목적이기도 하다. CATW-AP로 신고되는 사이버섹스 산업 피해여성의 구출 요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 이들은 여성에게 성행위를 시키고 웹캠으로 그 장면을 찍어, 구매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 이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이 곳 여성들은 생계 수단의 상실로 인한 극도의 빈곤과 성학대 경험으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함께 포르노 산업은 좀 더 값싼 투자 장소를 찾고 있다. 이러한 성적 종속은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쉘라 제프리(Sheila Jeffreys)의 책 ‘산업화된 여성의 질(Industrial Vagina)’에 보면, 포르노 제작자인 돈 산들러(Don Sandler)는 본인이 “아시아 성노예”라고 스스로 칭한 아시아 여성을 이용해 구매자들로 하여금 “속이 풀릴 때까지 이 여성들에게 굴욕감을 줘라”고 부추겼다고 한다. 산들러는 미국 수요 시장을 겨냥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는 체포 후 미국으로 국외 추방 되었을 뿐 기소되지 않았다.¹²⁾

마약 산업도 성산업과 밀접히 관련된다. 스스로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성들은 마약 복용을 강요받는다. 한 스트립 걸은, “성매매여성들은 정교한 방어 기제와 대처 전략을 생각해 놓아야 한다.”고 전한다. 그 중 하나가 기억 조작과 구획화이다. 업주들은 마약에 중독되면 될수록 성산업에 머무르게 된다는 절박함을 알고,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마약을 제공한다.¹³⁾

12) Jeffreys, S. The Industrial Vagina: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Global Sex Trade. 2009.

13) Lee, T. Not for sale. 2004.

성매매를 일상화하고 성 거래를 합법화하면 성산업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이권이 창출된다. 여성은 이 거래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이고,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관리하는데 그다지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그저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할 뿐이다. 이 상품들은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에서 넘쳐나는 더 어린 여성들이다.

일본, 호주, 다른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 및 미국 등지의 수요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얻는 폭리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필리핀 정부와 함께 빈곤국가의 공급 체계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신매매와 구매자 처벌을 정면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반인신매매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공급은 저지하면서 수요는 내버려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인신매매 범죄자들에게 모집되어 일본인과의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고 있다. 우리가 목격한 '남편' 혹은 업주를 통한 필리핀 여성 강간사건을 보면, 여성들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업주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동적으로 선불금과 빚을 갚기 위해 성매매로 유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주와 미국의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자국 성매매 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남성들은 계속해서 그곳의 성을 구매하고 있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에도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 그 수요는 가난한 국가를 섹스관광하는, 인터넷을 통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아내나 가사도우미를 자기 나라로 부르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식으로 존재한다.

업주, 알선업자, 관리자, 홍보자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가져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들이 성매매와 인신매매로부터 이익을 얻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몸은 매일 매일 성구매자에 의해 사용되고, 신체적 폭력을 당하며, 강제된 미약, 흡연, 음주로 축나고 있다. 성산업에서 자신들의 '가치(value)'는 너무나 빠르게 떨어지고 결국 24살이 되면 버려지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글로벌 사업을 정당화, 조장화, 일반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은 노동력 수출이 국가의 주요 고용 전략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중심의 직업 창출에 실패한 국가에서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못한 목적지로 떠나게 되고, 인신매매에 더욱 취약하게 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여성으로, 결국 성노예로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하게 될 알선업자(불법과 합법 모두)의 먹이 사슬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성산업 정당화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는 근거로 이 산업을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함으로써 나타난다.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주의자와 국가들 사이에서 성매매는 성적 착취라는 합의가 있었다.¹⁴⁾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등장하면서 사회운동의 분화가 일어났고, 적지 않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성노동(sex work)’이라 부르며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노동기구도 1998년 보고서에서 “정부는 이 산업을 다른 합법적 직업과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세금을 부가함으로써 증가하는 이익에 관여하라”고 권고하였다. 성산업을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의 이런 권고는 결국 많은 나라에 팽배해 있는 보수 자유방임 시장 이데올로기에 대한 항복을 뜻한다.¹⁵⁾

국제무역기구의 영향 하에 정부가 농업과 어업분야를 개방하면서 농촌 지역 거주자의 소유지와 수입이 박탈되었다. 더불어 관광산업의 자유화는 어업지역을 관광지로 변모시켰고, 그곳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때때로 섹스관광객들의 매력물로 팔려나가고 있다.

정부는 또한 안마 시술소, 오락, 노래방(videoke)을 내세운 성매매 업

14) 1949년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의한 착취 금지 협약은 “성매매와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하는 행위 및 그와 결부된 유해 행위는 인간의 가치와 권리에 위배되며 개인, 가족, 사회의 안녕을 위협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한다.

15) Raymond, J. Legitimizing Prostitution as Sex Work: UN Labour Organization (ILO) calls for Recognition of the Sex Industry. 1999.

소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 비용으로 50페소~200페소까지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성구매 남성의 안전을 위한 성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인 건강 검진이 부재한 상황의 여성들은 심각한 빈혈증, 결핵 및 정신 질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병에 방치된다.

‘성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자들은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구매하는 자 즉 수요의 측면은 간과하고 있으며, 단순히 성산업의 사업가와 구매자를 개인화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행태라 하겠다. 애초부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몸을 만드는지, 즉 남자에게 봉사하고 남성의 그림자가 되어 아름다움과 날씬함을 유지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지에 대한 ‘훈련(trained)’은 존재하지도 않는다.¹⁶⁾ 여성주의적, 구조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누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권이 충족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오로지 대상화된 여성의 몸을 필요로 하는 시장을 겨냥한 사업가와 무조건적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남성 구매자들이 있을 때 존재한다. 다시 말해 성매매의 존재 이유, 국제화된 성산업의 성장과 방향, 원동력을 조정하는 것은 구매자와 자본가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인 것이다.

구매되는 자

국가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의 성산업 여성들은 성인이 되기 전 시장으로 유입된다. 이는 여성들이 원해서 성매매를 한다는 성매매 옹호자들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아동 성매매는 반대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지난 2007년 287명을 대상으로 인신

16) Lee, T. Not for Sale. 2004.

매매와 성매매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 43.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성년 이전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고 답했고, 이 중 최하 10살 때 유입된 여성도 있었다. 응답자 중 15.3%는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시설에 입소한 여성 중 어린 나이에 근친상간을 당한 여성이 90%에 달한다. 미국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 중 75%~80%의 여성이 어린 시절 성적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 저자가 상담한 한 생존자는 “아빠, 삼촌, 사촌들에게 매일같이 강간을 당했다. 업주에게 500페소를 받고 하는 성매매와 다른 것이 뭐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체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이런 수치들은 가정의 폭력이 공공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연속체, 즉 어린 시절의 성적학대 (때로는 매 맞는 아내)가 성매매 혹은 인신매매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필리핀 국내 연구 자료에 나타난 인신매매의 패턴은 대부분 내부적이다. 여성과 여아는 시골 지역에서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라와(Laoag), 카바나투안(Cabanatuan), 다구판(Dagupan), 올롱가포(Olonagapo), 앤젤레스(Angeles), 바탕가스(Batangas), 카비테(Cavite), 세부(Cebu), 젠산(GenSan), 키다파완(Kidapawan), 다바오(Davao), 잠보앙가(Zamboanga)와 같은 도시 지역의 성매매 업소로 모집된다. 이는 지역 성매매의 상당한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 우월주의적 행태가 매우 보편적이며, 반드시 국내·국제적 양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혼인 여부를 살펴보면 총 피해자 중 73.9%에 해당하는 212명이 독신이었으며, 35.9%에 해당하는 76명이 부양가족이 있었다. 이 중 2명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64%에 해당하는 49명이었다. 이는 해로 유입되는 자가 가난으로부터 가족을 해방하려는 엄마의 부담을 물려받은 딸들이라는 이전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CATW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받은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교육 수

준이 낮으며, 부모의 생계 수단이 부재한, 거주지가 없는, 편부모 아래의, 혹은 계약직으로 직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인신매매 당한 원주민 여성은 주로 바란족(B'laan), 티볼리족(T'boli), 카우로족(Kaulo)족이며 모로족(Moro)은 마라나오(Maranao), 만다야(Mandaya), 바자오(Badjao), 사마(Sama), 마노보(Manobo), 루메드(Lumad)를 포함한다. 이 소수 민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료들을 보면, 이 곳 여성들은 문제를 부족 내 비밀로 붙이는 문화때문에 인신매매와 성매매피해 사실을 잘 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사실 이들은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의 인신매매 여성과 여아의 주요 공급지이다.

실행가능한 해결책

성노예 철폐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여성 아동 피해자들을 지원, 비범죄화, 임파워먼트하는 방향과 수요적 측면을 처벌하는 방향 두 가지가 통합된 개입을 제시한다. 여성과 아동의 몸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자와 그런 사업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명확하지만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법을 통한 방식과 규율을 통한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초범 성구매자들에게 성매매 현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생존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아태지역 여성인신매매 반대연합(CATW-AP)은 필리핀의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젠더 문제, 섹슈얼리티, 성매매를 교육하는 캠프를 열고 있다. 캠프는 인기있는 교육 방법을 통해 남성들이 전통적 남성성이 형성된 자신의 사회화 과정을 되짚어 보고, 자신의 남성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3일간 진행된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매매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미몽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개념은 부서진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으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들 또한 성매매에 있어 떳떳할 수 없음을 알고, 가정 문제로 인한 이런 폐해를 알게 되면서 자신들 또한 고용주와 공장으로부터 이와 유사하게 학대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참가 남성들은 교육 후 필리핀 여성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다른 형태의 폭력행위에 대항하는 사명감을 갖춘 열정적인 운동가로 변모한다. 우리는 또한 여성학대 취약성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캠프도 개최하고 있는데, 청년학생성평등추진회(Youth Students Advancing Gender Equality, YSAGE)는 이 캠프 참가자들이 설립한 단체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아시아 국가의 법 개정 압력을 가함으로써 (과거 영국과 스페인이 자신들의 식민지에 시행했던 정책에서 볼 수 있는) 성산업 여성의 비범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북유럽 모델을 따라 구매자와 업주를 범죄화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필리핀의 반인신매매법에 따라 인신매매를 지원하거나 눈감아 주는 지역 정부는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가 공공연하게 영업하며 여성의 몸을 물질화시키고 있지만, 업주들 대부분이 영향력 있는 공공영역의 인사이기 때문에 법 집행자들은 이를 묵인한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여성의 성적 노예화와 상품화를 일상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과 군사주의를 강력히 반대한다. 또한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 기지가 아시아 지역에 설치되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국가에 제국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우리는 노동자, 농부, 이주자, 인권 운동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완전고용, 성매매 노동 간주 불가, 토지 분배, 이주자 권리 보호, 정의 실현(특히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을 요구한다.

수요측면을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공급측면도 주목하고 있다. 주요 공급지역, 특히 가장 취약한 곳으로 연구자들이 지목하고 있는 원주

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예방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CATW의 인신매매 하는 자/업주 감시 프로젝트 (Trafficker/Pimp-Watch Project)를 원주민 여성의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파푸아뉴기니와 네팔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관계당국자들은 국제 인신매매의 기준을 교육받고, 국가가 반인신매매 기준을 마련, 혹은 실시하도록 로비하고, 어떻게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이해 관계자와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지역사회 주민들도 교육을 통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과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지역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법 등을 알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를 보면, 이를 통해 다수의 인신매매 사건이 미연에 방지되었고 인신매매범 검거와 함께 더 많은 수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생존자의 임파워먼트는 성산업과 인신매매 퇴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단 여성주의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인권이 침해된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구조, 치료, 법적·의료적 지원, 사회복지 지원 등을 통해 시작되었다.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증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폭력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직업 훈련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의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게 하는 것이다. 여성들 간 계급의 차를 없애고 여성들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아 그 과정을 마치고 이들이 다시 꿈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은 성매매를 원하지 않으며, 학교를 마치고, 무언가를 가르치고, 사회복지 혹은 다른 여성을 위한 상담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현재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한다는 허상을 부수고, 성산업에 대항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되고 있다.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 :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캐롤라인 노마(호주 멜버른공과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나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호주 정부가 이 범죄의 근본 원인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인권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글은 먼저 호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최근 사례와 이에 관한 입법적, 사법적 조치를 기술하겠다. 이후 호주 내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호주 정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저자는 호주 정부의 그러한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겠다.

호주 내로 인신매매되는 가장 일반적인 목적은 성매매에 이용되기 위한 것이다.¹⁾ 이는 국제적인 동향과 일치한다. 올해 4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인신매매의 80%가 성적 노예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고했다.²⁾ 호주는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자국 내로 유입되었는가를 두고 정부와 NGO 간에 논쟁이 있다. 2011년 시드니 주재 한국영사관은 호주내 성산업에 23,000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000명 가량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수치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과소 추정되었다.

1) http://www.parliament.vic.gov.au/images/stories/committees/dcpc/Trafficking_Final_full_report_with_cover.pdf

2)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un-says-24-million-people-are-victims-of-human-trafficking-and-most-are-sexually-exploited/2012/04/03/gIQAIV1gtS_story.html

첫째, 올해 4월에 발표된 한 보고서(2012)에 따르면, 시드니의 합법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57%가 비영어권 출신이며, 45%는 ‘그런대로 괜찮은’ 또는 ‘낮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이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아시아 여성들이 호주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처한 빈곤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비행기표를 사고, 비자를 얻고, 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먼 곳까지 왔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호주에서 ‘아시아 여성 전문’ 업소들이 출현하고⁴⁾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다.⁵⁾ 2011년 퀸즈랜드의 성매매 인가 사무국(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⁶⁾은 연례 보고서에서 이러한 유형의 업소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여성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는 주로 ‘회전식(rotation)’으로, 2009년 성매매여성들을 제공하는 업소들을 조사한 빅토리아 주정부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다. ‘회전’은 인신매매범들이 흔히 쓰는 수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09년 호주의 연구자들이 인터뷰한 어느 업소 매니저는 ‘회전’ 관행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부분의 여자들(즉, 성매매를 하는 아시아 여성들)은 여기에 취업 비자를 머물며, 3개월이면 다시 외국으로 나간다. 그들(업주)이 교체시키기 때문

3) The Sex Industry in NSW, p. 18 at [http://www.med.unsw.edu.au/ncheerweb.nsf/resources/SHPRreport/\\$file/NSWSexIndustryReportV4.pdf](http://www.med.unsw.edu.au/ncheerweb.nsf/resources/SHPRreport/$file/NSWSexIndustryReportV4.pdf)

4) <http://www.smh.com.au/national/health/the-threat-to-health-from-cheap-brothels-20110730-1i5an.html>

5) Queensland Prostitution Licensing Authority, ‘Annual Report 2010-2011,’ p. 18 at <http://www.pla.qld.gov.au/Resources/PLA/reportsPublications/annualReport/2011/documents/Annual%20Report%202010-2011.pdf>

6) 호주 퀸즈랜드주에서 합법 업소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

이다. 여성들을 계속 교체하는 게 그들의 정책이다. 다시 말해, 서너 개 업소가 여성을 서로 교환하므로 이 곳에서 일주일, 저 곳에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일하게 되고, 업주들은 새 여성을 들어왔다고 광고를 한다. 실은 새 여성을 들여온 게 아니라 3-4주 동안 다른 곳에 돌리다가 다시 데려온 거다.”⁷⁾

이렇게 ‘여성들을 교체’하고 ‘회전’시키려면 여성들을 인신매매해야 한다. 포주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여성들을 제공하려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려면) 그러한 여성들을 조달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와 통로가 있어야 한다. 호주인 성매매여성들을 함께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여성들이 포주의 불법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여성 전문’ 업소를 운영할 경우, 그러한 위험 없이 회전식으로 인신매매된 여성들을 팔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아시아 여성 전문’ 업소의 출현은 호주 포주들이 얼마나 외국에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조달 통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호주에는 아시아계 여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성매매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영어가 미숙하다는 사실은 포주들이 이 여성들을 호주 내에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포주들은 여성들을 국적에 따라 광고한다. 다음은 어느 성구매자가 한 업소의 웹사이트에 적어놓은 것이다.

“최근에 웹사이트와 사진들은 비슷하고 이름만 다른 여자들을 일본, 한국 등지에서 왔다고 광고하더라구요. 그 사진들이 다 한 여자의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정말 멜버른에 온 건가요?”⁸⁾

지난 10여 년간 특히 멜버른과 시드니의 성산업은 ‘아시아화(Asianised)’되었다. 다음은 어느 업소 웹사이트의 구매 소감란에서 발췌한 글이다.

7) <http://www.docstoc.com/docs/43328676/Working-in-Victorian-Brothels-An-independent-report-commissioned>

8) Mikemelb, 'Punter Planet', 2010년 9월 22일

“클럽8은 주인이 새로 바뀌고 호주 여자들을 중국과 한국 여자들로 다 교체했더라구요. 여긴 마치 중국에서 호텔 업소에 간 듯한 느낌을 주더군요. 널찍하고, 라운지/대기실, 카운터도 엄청 크고, 호텔식 방에……”⁹⁾

호주 성산업의 ‘아시아화’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나라의 업주와 성산업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 역시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호주 업주들이 해외 성산업 운영자들과 연계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조달하기 위해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호주 내 허가 및 무허가 업소에서 여성들을 ‘회전’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신매매가 호주 성산업의 한 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와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호주에서는 인신매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 연방 정부 반인신매매위원회(Australian Commonwealth Anti-People Trafficking Interdepartmental Committee)는 2011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호주 정부가 강력히 이민을 통제하고 있으며, 호주의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호주 내로 인신매매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¹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호주 내에서 인신매매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데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해부터 한국 정부는 여러 정부 관계자들을 호주로 보내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했다. 한국의 연구자들도 현재 멜버른에서 호주로 인신매매된 한국 여성들을 조사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11년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호주의 성산업으로 인신매매되는 여성들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업소들은 아시아계 조직범죄단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들은 아시아 여성들을 (때로는 학생비자로) 들여와 업소에서 일을 시킨다. 여성들과 소녀

9) ‘bareback spider,’ Punter Planet, 2011년 3월 4일

10) p. 3 <http://www.ag.gov.au/Peoplettrafficking/Documents/Trafficking+in+Persons.pdf>

들은 때로 갇힌 상태에서 물리적, 성적 폭력과 위협을 당하고, 불법 약물을 투여받고, 부당하게 부풀려진 빚을 인신매매범에게 갚도록 강요당한다.”¹¹⁾

그러나 호주 내 성적 인신매매를 부정하는 문화로 인해 인신매매 관련 사건의 기소율이 매우 낮으며(호주 역사를 통틀어 40건 이하), 유죄 확정 건수도 매우 낮다(10건 이하).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인신매매를 조직한 포주들(대부분 남자들이)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 여성들(이들도 이전에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다)에게 형이 내려지곤 한다. 올해 있었던 한 사건에서는 자신도 한때 성매매 피해자였던 태국 여성이 노예 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반면, 그 여성과 연계되어 피해자가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강간을 했던 남자는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¹²⁾ 이 여성이 피해자의 인신매매에 분명히 관여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호주로 인신매매되기 전에 이 여성 역시 성매매를 했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녀가 이 범죄를 처음부터 교사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호주의 법정은 기존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다시 모집책으로 이용하는 인신매매범들의 교묘한 술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반인신매매법은 전세계 인신매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책과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미약하다. 정부는 성적 인신매매를 체계적으로 연결된 조직범죄가 아닌 몇몇 개인에 의한 범죄로 보고 있다. 작년 호주 연방경찰은 호주로 다수의 여성들을 유입시킨 대만의 한 인신매매단과 관련한 사건에서 대만 검찰과 공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언론의 못매를 맞았다.¹³⁾ 호주 정부와 사법당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주와 인신매매범들에게 호주가 매력적인 사업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올해 들어서야 인신매매 수사팀

11)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1/164231.htm>

12) <http://www.canberratimes.com.au/actnews/how-this-sex-ledger-helped-convict-act-brothel-madam-of-slavery-20120411-1wshh.html>

13) <http://www.abc.net.au/4corners/stories/2011/10/06/3333668.htm>

을 만들었는데, (연방경찰을 제외하고는) 호주 내 대부분의 다른 주에는 이러한 수사팀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호주 내 주 경계 안에서도 상당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작년에 빅토리아 주에서 합법 업소 허가를 받고 '수십 명'의 여자들을 호주로 들여온 중국인 인신매매범이 멜버른 교외지역에서 다수의 불법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업소들 간에 여성들을 매매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¹⁴⁾

호주는 대부분의 성산업이 정부의 감독과 개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되기 때문에 포주들과 인신매매범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된다. 주 정부가 업소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성산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한다는 말은 아니다. 호주 수도인 캔버라의 경찰은 최근 의회 질의에서 ACT주 내에서 지난 5년간 허가 또는 무허가 업소에 대한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¹⁵⁾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성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다.¹⁶⁾ 시드니는 길거리 성매매도 합법이며, 40개 객실을 갖춘 업소들이 주택가 도로에서 버젓이 영업을 한다.¹⁷⁾ 이처럼 관대한 성산업 환경이 조성되어, 성산업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주가 매력적인 장소로 간주되고, 호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아시아 여성들이 호주로 인신매매되기도 쉽다. 나는 한국에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고 포주들이 이 법을 피해 다른 곳으로 사업을 옮기기 시작한 2004년 이후 한국의 포주들이 호주를 사업 이전지로 쉽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자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호주의 친성산업 정책으로 인해 저해되고 있다.

14) <http://www.theage.com.au/victoria/plea-to-stop-suspected-traffickers-running-brothels-20111122-1nswd.html#ixzz1ruj7JNY>

15) <http://www.legassembly.act.gov.au/downloads/reports/JACS09%20Prostitution%20Act.pdf> p. 156

16) [http://www.med.unsw.edu.au/nchechrweb.nsf/resources/SHPReport/\\$file/NSW SexIndustryReportV4.pdf](http://www.med.unsw.edu.au/nchechrweb.nsf/resources/SHPReport/$file/NSW%20SexIndustryReportV4.pdf)

17) <http://www.smh.com.au/nsw/three-storeys-of-sex-as-sydney-braces-for-biggest-brothel-title-20110516-1epzn.html>

호주 정부는 호주의 거대한 합법적 성산업과 여성 인신매매 간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인신매매의 원인이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들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은 2011년 6월 유엔 호주대표부가 한 발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유엔 호주대표부에 따르면, 인신매매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모두 외국에 기인한다. 첫째는 호주 외 다른 국가들의 ‘빈곤, 실업, 부패, 성불평등, 교육 기회의 부족, 차별적인 문화’이다. 둘째는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국가적 역량’ 부족인데, 이것도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들의 경우이다.¹⁸⁾ 호주 정부는 또 인신매매가 성산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연방정부 반인신매매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얼마나 인신매매를 성매매의 수요에 기인한 범죄가 아닌 다른 산업이나 노동 밀입국에 기인한 문제로 보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해에 호주 정부는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척결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내년에도 상업적 성산업 *밖에서의*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문제에 주력할 것이다.” (이텔릭은 저자가 추가함)¹⁹⁾

또 호주 성산업 내 외국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인신매매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노동’을 위해 ‘이주’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호주 정부는 ‘성노동을 위한 이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2009년에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라는 단체가 ‘이주 성노동자들’에게 ‘성노동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

18) Human Rights Council - 17th Session 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tatement by Australia 1 June 2011 <http://www.geneva.mission.gov.au/gene/Statement211.html>

19) <http://www.ag.gov.au/Peopletrafficking/Documents/Trafficking+in+Persons.pdf>

랍들의 책임과 법적 권리 및 이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신매매에 대한 이러한 수정주의적 사고를 실현하고 있다. 이주 프로젝트(Migration Project)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이주 성노동자들을 위한 사법적 정의와 서비스 및 호주 내 성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⁰⁾

호주 내의 여러 학자들은 인신매매를 '성노동을 위한 이주'라는 관행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하는데, 그 중 한 곳이 퀸즈랜드대학교 연구팀이다. 이 연구팀은 최근 호주 연방경찰로부터 기금을 받았다.²¹⁾ 이 연구팀 대표는 2006년 '호주의 성산업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하지만 그들의 고용주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외국) 여성들'이 있다고 주장했다.²²⁾ 이 주장은 연구자들은 인신매매가 포주와 알선업자들이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호주에 들여와 성매매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호주에 와서 운 나쁘게 악덕 고용주들을 만난 경우라고 상상하는 듯 하다.

'성노동을 위한 이주'라는 관점을 지지하는 국제학계에서는 아동의 인신매매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의 연구자들 포함)²³⁾이 있다. 이들은 페미니스트와 NGO들이 단순히 성노동을 위해 이주한 여성과 아동들을 잘못 분류함으로써 인신매매의 실상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명한 영국 학자인 줄리아 오코넬 데이빗슨(Julia O'Connell Davidson)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성노동을 위해 이주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은 인신매매범이 아니며 따라서 '성매매를 하는 아동이 꼭 취약하거나 비주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²⁴⁾ 데이빗

20) http://www.scarletalliance.org.au/projects/migration/News_Item,2010-12-09,4018

21) <http://www.afp.gov.au/policing/human-trafficking.aspx>

22) Schloenhardt, A., Beirne, G., & Corsbie, T. 2009.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servitude in Australia.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32(1): 27-49.

23) <http://www.londonmet.ac.uk/research-units/iset/projects/esrc-migrant-workers.cfm>

슨이 볼 때 인신매매는 성산업의 중심축이 아니다. 성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경을 넘는 가난한 여성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아동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소녀들의 인신매매는 분명히 국제적 성산업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아동들도 성교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서구 학자들 사이의 논의는 전세계 성산업의 이윤적 측면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십여 년간 호주에서는 ‘성노동을 위한 이주’라는 개념이 적극 수용되었고, 그 결과 우려스러운 정책안이 탄생했다. 이 안은 ‘성노동’을 위한 비자를 도입하는 것으로, 한국의 E6 비자나 일본의 ‘연예인’ 비자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안은 2008년 호주 ‘2020 전국대표자회의’(2020 Summit)에서 스칼렛 얼라이언스가 처음 제안했다. 이 회의는 당시 총리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마련한 전국 회의로 호주 안에서 널리 홍보되었다.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를 비롯한 여러 성매매 폐지론자 단체들은 이 회의에 초대받지 않았고 스칼렛 얼라이언스만 초대를 받았다. 그때 이후 자유주의 성향의 주요 여성단체인 WEL(Women’s Electoral Lobby)이 이 제안을 지지했으며 이 단체의 대표는 공개적으로 성매매 옹호 단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연구자들도 이 안을 지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두 명의 저자(한 명은 원로 학자)가 이 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²⁵⁾

인신매매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관점은 ‘성노동을 위한 이주’라는 입장과 정반대에 있다. 페미니스트 이론가로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쉘라

24) Julia O’Connell Davidson Moving children? Child trafficking, child migration, and child rights 2011 31: 454 *Critical Social Policy*

25) Dianne McInnes and Paul Wilson, *Sex trafficking: the dark side of the Australian sex industry?* New Holland Press, 2012.

제프리(Sheila Jeffreys)는 인신매매를 ‘성매매의 공급망’이라고 설명하며²⁶⁾ 영국의 페미니스트인 멜리사 팔리(Melissa Farley)는 ‘여성의 성착취를 확대하고 상품화하는’ 관행이라고 주장한다.²⁷⁾ 이 관점은 인신매매가 성산업 활동에서 대체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며 일부 불법적인 요소로써 별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2009년에 팔리(Farley)는 지구적 성산업의 관행인 인신매매를 묵과하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성매매와 인신매매 간의 이론적 구분은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신매매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수요는 성매매에 대한 수요와 구분될 수 없다. 어린 나이, 저렴한 가격, 외국인 또는 ‘이국적’,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 등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바라는 그 특징들은 또한 여성들을 인신매매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²⁸⁾

캐서린 맥किन(Catharine MacKinnon)은 ‘시장에서 소녀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을 때 인신매매범들은 소녀들을 붙잡아야 하는 인센티브를 얻는다’라고 말한다.²⁹⁾ 다시 말해 성구매자들이 여성과 아동에게서 원하는 것, 즉 개인적 취약성은 인신매매범들이 원하는 취약성과 같다. 따라서 이윤 동기에 따라 모집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인신매매가 전세계 성산업의 필수 요소가 된다. 이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성매매 수요로 유명한 호주에서 특히 그러하다. 호주에 있는 포주들이 돈을 벌려면 그들은 고객들

26) Sheila Jeffreys, 2009.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feminism: An update on the debat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2: 316-320.

27) <http://www.prostitutionresearch.com/trafficking/000279.html>

28) Melissa Farley, 2009. Theory versus reality: Commentary on four articles about trafficking for prostitutio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32(4): 311-315.

29) <http://litigationessentials.lexisnexis.com/webcd/app?action=DocumentDisplay&crawlid=1&doctype=cite&docid=46+Harv.+C.R.-C.L.+L.+Rev.+271&srctype=smi&srcid=3B15&key=4136d9dbadb1c8273eeb3b33e0adaad4>

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아시아 여성들을 데려와야 한다. 특히 고객들은 다양성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포주 및 알선업자들과 계약을 맺어서 여성들을 호주로 들여와야 할 이윤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포주들이 인신매매단과 거래를 해야 하는 이윤 동기는 최근 합법화된 성매매와 인신매매 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일단의 경제학자들에게 의해 잘 묘사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설명했다.³⁰⁾

“인신매매된 개인들은 특히 취약하며 고객들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업주들은 그들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짜낼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성매매여성들을 데리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 셋째, 고객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이국적인’ 성노동자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해당국에서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호주에서 성노동 비자를 도입하지는 않은 실질적으로 인신매매를 합법화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문제이다. 성산업이 이미 널리 합법화되어 있는 호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적 인신매매가 특히 아시아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이라는 이해는 고사하고, 성적 인신매매 현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호주의 국제반노예제기구(Anti-Slavery International)의 대표인 제니퍼 번(Jennifer Burn)조차도 이처럼 만연한 인신매매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8년에 있었던 라디오 인터뷰에서 번은 시드니의 한 업소에서 경찰이 채무로 붙들려 있는 10명의 한국인 여성들을 발견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주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³¹⁾ 뉴사우스

30) p. 7 <http://ideas.repec.org/p/got/goterc/096.html>

31) Kruger, P. 2008. Groups urge action to stop sex trafficking. *The World*

웨일즈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연구원인 크리스틴 하커트(Christine Harcourt)는 2011년 호주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아시아 여성들은 호주 성매매 시장에서 '매우 수요가 높는데' 그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일을 아주 잘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³²⁾ 하커트의 발언은 퀸즈랜드주의 합법 업소 중 20%가 아시아계 여성들만을 제공한다는 퀸즈랜드 범죄위원회(Queensland Crime and Misconduct Commission)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근거로 널리 보도되었다.

본 논문에서 나는 호주 성산업의 '아시아화'가 호주 내에 인신매매 범 죄가 만연해 있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주 정부는 성적 인신매매를 성산업에 기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호주 당국은 이 현상을 외적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거나 '성노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호주로 '이주'해오는 아시아 여성들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나는 인신매매를 '성노동'의 관점에서 보는 호주 정부의 수정주의적 접근법이 잘못되었으며, 그로 인해 호주로 유입된 아시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반인권적 범죄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호주 정부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일조하고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성노동' 비자의 도입과 같은 정책안이 나오도록 만들었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인신매매를 합법화할 것이다.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은 성매매와 포주들의 부당 이득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쓰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2004년에 발효된 한국 정부의 반성매매법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자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들을 성매매 폐지론적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의 정책과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호주는 효과적으로 인신매매

Today. Retrieved July 30, 2011, from <http://www.abc.net.au/worldtoday/content/2008/s2183209.htm>

32) Marriner, C. 2011, July 3. Low prices fuel exotic sex trade. *The Age*. Retrieved November 27, 2011, from <http://www.smh.com.au/national/low-prices-fuel-exotic-sex-trade-20110702-1gvy4.html>

를 차단하고 인신매매에 취약한 역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구매 수요에 대한 억제 방안

정재원(서울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성매매 문제는 '화폐에 의한 강간'으로 여성 문제의 가장 심각한, 그러나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이다. 또한 성매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예제의 현대적 형태'로 규정할 수 있다(양현아, 2006: 76).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 종사 여성은 인권 유린과 폭력,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기도 하다(이나영, 2005: 58~60).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매매 문제는 현재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 사회 속에서 각 가계(家計)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모든 계층의 여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전 사회적인 인권 유린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성매매는 100% 가까이 남성이 구매하고 여성이 구매 당하는 일방적 형태가 주를 이루며, 여성이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권 침해 행위이자 폭력이다. 또한 성매매는 그 특성상 특정 연령대를 넘어서는 성매매 종사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 제대로 된 노동과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인간 파괴 행위이다. 한때의 호기심, 일탈 혹은 가정 문제와 빈곤 등의 이유로

시작한 성매매는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시기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 기술 등을 익히지 못 함으로 인해 평생 주변화된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끔찍한 범죄 행위이다.¹⁾

성매매 피해 시설 입소자 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 성매매피해 여성의 정신 건강 및 지원요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70% 이상이 무기력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면제(55%), 신경안정제(59%) 등의 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을 넘는다. 흡연율은 일반 여성의 20배 이상이었으며, 마약류나 환각제, 각성제 등을 복용한 경우도 21.5%에 달했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매우 높아 이들 중 80%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다.²⁾ 일반적 아동 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 조사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성매매 문제가 가족 문제, 교육 문제, 청소년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으로 등록된 입소자가 11.5%에 이르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문제가 장애 문제의 방치와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유입은 자발적이나 다양한 이유로 이탈과 정상적인 삶으로의

-
- 1) 서울대 여성연구소의 ‘여성의 성매매 경험과 생활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뷰 대상자인 22명 중 20살 이전에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 경우가 무려 15명이었고, 이들 중 가출 경험이 있었던 경우는 80%였다. 10대에 성매매를 시작한 15명 중 10명이 이 시기에 가족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서울대 여성연구소, 2011, 381-466).
 - 2) 이들 중 아동 시절 학대를 당한 사람은 절반 정도에 달했으며, 학대 중 성적 학대는 10%에 달했는데, 이는 일반 아동 학대 경험자 비율(4.7%)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다. 또한 성매매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요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던 비율은 38%로 일반인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비율이었으며, 이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비율은 무려 62%에 달했다. 또한 10명 중 8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특히 종사 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중 100%가 성매매 종사 기간 중 폭력을 경험한 바 있었다.

복귀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상당수가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소위 '자발성의 함정'에 기반한 당사자주의는 현실을 외면한 매우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한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각종 채무 등에 의한 반강제적 성매매가 많은 여성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매매 문제는 여성뿐 아니라, 보편적 인류의 인권, 평등, 자유 등 어느 측면에서 보아도 축소와 근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회적 의제보다도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해결책이 전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러한 명약관화된 사회적 문제에 오히려 정면으로 반발하는 집단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성매매로부터 이익을 얻는 집단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이 장악한 헤게모니에 도덕과 논리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는 공급적 측면과 법적 제재 강화, 집행 기관의 의지 등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축소 등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진행되어야 축소와 근절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수요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론적 전제 조건

1) 범죄 집단으로서의 중간 알선 매개체, 그리고 립편화되는 남성의 문제

성매매는 노동시장과 빈곤 문제 등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총체적인 여성 차별적 사회 구조 타파와 같은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여성의 고용 노동이 극도로 제한된 한국의 상황 속에서 저임금, 불완전 고용된 여성 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직업으로서 성산업과 성매매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를 여성 문제만으로 접근할 경

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구매자로서의 남성에 대한 교육과 계몽,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매매 문제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던 측면, 즉 노동 시장에서의 저임금 하층 남성들의 문제로 접근할 때 문제의 해결 지점을 찾아 낼 수 있다. 열악한 노동 조건 탓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비공식, 반범죄적 부문, 그 중에서도 성매매 산업과 관련한 영역에서 여성을 관리하는 범죄 조직의 일부가 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범죄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해 왔을 뿐이었다.

수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여 성매매여성들을 매매하는 전 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얻거나 이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업소를 직간접적으로 운영 혹은 보호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조직 폭력 집단에서부터 서빙이나 소위 '빠끼'와 같은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주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전한 노동을 해야 할 남성 노동자들이 성산업의 이러저러한 구조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은 한 국가의 노동력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파악되는 범위 안으로 한정되어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산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수산업을 합친 비율보다 더 많은 5%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성산업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성산업과 연관된 불로소득자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성산업에 자신들의 토대를 두고 있는 조직 폭력 집단들은 노동자들의 파업 파괴나 노점상, 철거민 탄압에 동원되는 용역 깡패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거대한 규모로 주변화된 사회 집단들의 심각한 문제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이렇듯 성매매 문제는 지배 집단과 공생하는 어마어마한 사회의 주변화된 한계적 집단, 폭력 조직 문제이기도 한데, 파업과 강제 철거 과정에 동원되는 깡패들의 주요 서식처이자 자금 공급처가 바로 각종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은 성매매 산업이 왜 쉽게 줄지 못 하는지에 대한 논거

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화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남성 집단의 축소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수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범죄 집단과 연계되어 있는 과두지배세력: ‘성매매 카르텔’의 문제

영화와 코미디의 일상적인 주제인 만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면서도, 저들 ‘카르텔’만은 모르는 꼴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먼저 조직 폭력배와 같은 거대한 남성 룸펜 집단들의 문제이고 그들이 구조화한 착취 사슬의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집단들의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집단들과 연관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그 어떤 누구도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모르는 척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업과 공무원은 물론이고 바로 법을 어기는 이들을 처벌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물론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인 등등 거의 모든 남성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바탕으로 성접대와 성매매에 더 적극적이라는 충격적인, 그러나 너무나 일상화된 사실이다.³⁾

이렇듯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성산업과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임 여성들 중 1/10 이상에 달하는 여성들이 얽매어 있는 이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문제는 단 한 번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회의 (남성)기득권 세력들의 침묵의 카르텔이

3) 전국의 아주 일부 지역에서, 단 한 명의 사업가가 성접대를 제공한 인원만 해도 수 백 단위에 이르는 소위 ‘검찰 스폰서’ 사건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구려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알고 있다. 말이 스폰서지 본질은 범죄자며 조직 폭력배와의 부패 사슬 문제이다.

가장 강고한 영역이라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성매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의 한계적 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매우 편리한 처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들과 강고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지배 집단들은 이들 집단으로 하여금 여성들을 착취 고리의 가장 밑으로 몰아매어 이익을 창출하게 해 주고, 그 대신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 받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성매매 카르텔’의 방해공작으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차단하는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기 힘든 상태로 통과되었다. 즉 한국 성매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통한 성매매는 이 법으로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성매매 카르텔들은 ‘풍선효과’나 ‘강간 증가’ 등의 거짓 선동은 기본이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여성들의 착취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 창출 공간이자 쾌락 공간의 축소 움직임에 매우 강하게 저항한 바 있다. 성매매 카르텔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었던 장자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언론과 수사당국, 논객들 등등 그 어느 단위나 집단들도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침묵의 카르텔들과 성매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수사기관과 언론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치가들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죄를 묻고 처벌하는 이들도 포함된 ‘침묵의 카르텔’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은 성접대 없이는 거래가 성사가 잘 되지 않아 성매매 업소에서의 접대를 기정사실화한다. 수주를 위한 바이어와의 접대가 아니더라도 회식 등을 위해 법인카드로 성매매 업소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기업 뿐 아니라 언론인, 방송인, 각종 공무원, 교수, 정치인, 의사, 장교, 검찰 등등 직업을 막론하고 출세와 단순 유흥을 위해서

‘성매매 카르텔’은 서로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성매매 업소에서 서로 접대하고 접대 받거나 여성을 성적 도구화 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들 중 소위 ‘대한민국 1%들’로 상징되는 지배 엘리트의 우정과 유혹은 더욱 고급스럽고 은밀하며 노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카르텔에 대한 고민과 문제해결 없이는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고민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할 단위의 현실 인식에 대한 부분이다. 진보적, 여성주의 진영 일각에서 성매매 문제에 대해 중간 알선 집단의 문제를 빼놓고 마치 당사자끼리의 거래의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성을 팔아 이익을 남기는 행위는 여전히 조직 폭력 집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매우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성산업과 성매매로 이득을 보는 성매매 카르텔의 존재를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범죄집단과의 역관계 속에서 기능할 수가 없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성노동자들이 ‘범죄 집단’으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하여 그들과 ‘노동’ 관련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사실상 성폭력의 조건 일부만을 완화하지는 결론에 불과한 매우 반인권적이고, 사변적인 주장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성산업과 성매매를 옹호하는 성매매 카르텔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⁴⁾

3) 성매매 업소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제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접대에 나온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4) 성구매자에 대해서도 거래의 단순한 한 쪽 당사자로 취급하다 보니 그 어떤 비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성매매 과정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은 안중에도 없다. 성구매자에 대해서 여타 서비스업에서의 서비스 구매자와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반면, 성매매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국가와 법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소위 ‘성노동론’을 주장하는 일부 여성주의 진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조은주, 2008. 『여성하위주체에서 ‘성노동자’ 운동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 78호.

로는 고통의 나날을 피는물로 폭로한 글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자연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고 장자연 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아니 대부분 더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더 잔혹하게 노리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장자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장자연들이 종사하고 있는 공간 역시 단 한 번도 본격적인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이제 물리적인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지 몰라도, 그리고 성매매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선택한 남성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성적 노리개가 되는 수십만 명의 ‘장자연들’이 있다는 문제의 본질은 쉽게 잊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수십 만명의 ‘장자연들’이 성을 팔아야 하는 수많은 공간들의 존재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성역에 속해 있다.

성매매 문제는 타락한 일부 남성 구매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부패와 인권 침해와 여성 착취가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각종 성매매 업소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바로 이러한 성매매 업소들이 불황에도 팽창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매우 이중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기업들, 성매매 업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고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우리의 국가기구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업소라는 작은 공간에 여성들을 돈으로 가두어 놓으면서 그들을 성 시장에 공급하는 중간 알선 조직들을 포함,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 욕심을 채우는 남성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매매 카르텔들은 언론과 학자들로 하여금 철저히 문제의 본질을 감추도록 노력해 왔고 이러한 문제제기 방지 노력은 실제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관련 사건 보도에서 언론이 철저히 감추고 있는 것도 바로 성매매 산업, 성매매 업소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것이다. 가령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과의 버려진 혼혈 아동인 코

피노(Kopino) 문제는 보도할 수 있지만, 그 나라에서 불법으로 현지 여성들을 한국 기업들과 관광객들의 성적 쾌락을 위해 노리개화 하고 있는 백단위가 넘는 한국 성매매 업소에 대한 보도는 금기시된다.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보도는 있어도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인 한국인 운영/대상 성매매 업소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는다.

검사 스폰서 사건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들을 지적할 뿐, 이들의 부패 고리가 형성되었던 성매매 업소,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노리개로 사용되었던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도는 없다. 소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도, '검사 스폰서' 사건에서도 성매매 산업, 업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언제나 비판의 초점은 '성매매 업소의 존재 문제'나 '공무원, 기업들의 성접대 문화'가 아니었다. 스스로가 성을 사는 범죄자이자 여성을 노리개로 만드는 구조에 빠뜨려 버린 공범을 자처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 어떤 정치인, 법조인, 수사당국도 국민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공개적으로 말살하고 있는 성매매 산업에 대한 철저한 범집행을 주장하지 못하는 구조가 확고해져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3. 성매매 수요의 중요한 메커니즘과 그 차단 방안

1) 성접대 문화

서울대 여성연구소의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의 분류에 따르면, 사창가, 홍등가, 기지촌 등으로 불리는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전국에 45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45곳의 집결지에는 모두 4,900여 명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각 집결지마다 평균 109명 정도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고, 기지촌, 유리방, 방석집, 여

관 및 여인숙 등 다양한 형태의 집결지에서 성매매여성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집결지가 아니다. 성매매를 사실상 알선하고 있는 업소는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공식적인 통계치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의 수는 집결지 여성의 30배에 이른다. 이러한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들 중에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포함하는 일반 유흥주점 중에서는 56.5% 이상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외 무도 유흥주점, 마사지 업소 등에서도 유사한 비율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다방이나 노래방 등지에서조차 성매매는 20%~35%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서울대 여성연구소, 2011, 23~67). 성적 서비스 비용은 평균 15만 원 정도로 집결지 성매매보다 비용이 월등히 높은 현실을 보여 주는데,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매매 알선 업소들에서 성매매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성매매는 성교 중심의 성매매보다는 동아시아 기생 문화의 연장선상, 즉 여성을 철저하게 쾌락의 도구로 전략시켜서 전 과정적으로 다양한 성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의 성매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선호는 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성접대와 유흥 문화 속에서 성매매가 조직적이고, 대규모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매력 없는 남성, 배우자가 없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 집단보다 성매매를 더 자주 할 것이라는 가설과 정반대로 학력과 수입이 높은 남성의 성매매 빈도가 훨씬 더 높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성매매 빈도는 결단코 독신 남성보다 낮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의 성매매는 개인적 욕구보다 군대, 접대 등으로 이어지는 남성 집단 문화와 더 큰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⁵⁾

2010년 성매매 거래 액수는 7조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 중 성매매 알선업체들을 통한 성매매 액수가 가장 많아 5조 4,030억원으로 전체 성매매 형태 중 81.6%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포함한 일반유흥주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 액수가 3조 5,729억원에 달해 전체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 대가는 5,765억원(8.7%)에 불과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변종 성매매가 2,547억원(3.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1,718억원(2.6%) 등에 이르고 있었다.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지하경제 구조 중에서 성산업도 그 상당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⁶⁾

이러한 성산업과 성매매의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이며 일상적인 형태, 그리고 유흥업소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조직들의 성접대 문화이다. 전체 기업이 아닌 일부 상장 기업 몇 백 단위 기업의 공식 접대비만 해도 한 해 6조 5천억 원에 이르며, 그 중 유흥접대비가 절반을 차지한다(강준만, 2011; 6).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경제 위기, 기업의 위기라고 하면서 접대비 상한제가 철폐되기도 했다. 감사 스폰서 사건이 적나라하게 보여 주듯,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부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성접대, 성산업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접대 문화는 그 자체로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그 외에도 교묘

5) 이렇게 서로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현실을 폭로하는 것은 오히려 외국 언론이 되어버리는 해괴한 일도 있곤 한다. 한 예로 G20 당시 윤중현 장관에게 한 외국인 기자가 한국의 성접대 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다른 한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성접대 문화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황한 언론은 한국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며, 한국을 알잡아 보는 무례한 태도라며 문제의 본질을 덮기 위해 처절히 노력한 바 있었다(강준만, 20011, 239).

6) 현재 조세부담률 20.8%를 적용하면 연간 56조원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하 경제 자금 중에서 20%만 세금으로 전환해도 5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하경제 돈 중 탈세액이 제일 크고 선진국에 비해 지하경제 중 성산업 비중이 큰 한국에서 철저한 세금 집행은 여성 인권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게 연장근무, 과로에 시달리는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복지 대신 제공되는 것으로 기능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파괴하고 초과 노동 등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업 복지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제공되는 성접대와 성적 유희 문화의 타파야 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기업 등의 성접대 문화가 남성 노동자들을 비생산적 영역에 기생하는 룬펜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성매매 업소, 성산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자금줄이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물론 더욱 은밀하고 고차원적인 성매매는 고위 공직자와 기업 경영진, 언론사 간부, 정계 인사 등의 그것이지만,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형태는 여러 경제 단위들의 대중적 성접대 문화이며, 이러한 공식화된 접대 문화로부터 나오는 비용이 주변화된 계층의 자금줄 역할을 하며,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을 성매매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성매매는 아직까지는 개인화되기 보다는 조직과 집단 중심의 성매매가 주를 이루며, 성매매는 기업의 법인 카드로 지불되는 성접대에서 이어지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저임금 비정규 노동의 확산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성접대를 위해서는 불황 속에서도 그 비용이 축소되는 경우가 없다. 기업의 이윤은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와 야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복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성매매 업소로의 비용으로 적극 전환되면서 노동자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로 하여금 성착취 고리에서의 착취자가 되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 주범이 되고 있다.

2) 성매매 수요 차단 대안들

수요 차단에 앞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이나 불평등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

최고(36%), 사회 공공 부문 고용 최저(3.6%), 정규직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정규직 남성의 약 40%), 비정규직의 60%가 여성' 등과 같은 현실은 여/남 노동 대중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게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각종 유흥업으로 유입되어 비공식 영역에서 주변화된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 부문과 사회적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고용 확대와 더불어 국가 보호가 전무한 자영업 비율의 축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의 확립이 성매매 산업 축소와 양성 평등한 사회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 평등 지수 최고의 국가인 북구 복지 국가들에서 성매매여성들의 단위가 천을 넘지 않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데에 있는 것이다.)

첫째, 성매매 수요 차단을 곧바로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 언론인 등 여러 사회 조직들의 성접대 문화를 공식적으로 폐지 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성접대 비용의 지역 복지 기금으로의 공식적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즉, 성매매 자체에 대한 축소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자금줄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정, 관, 기업에서의 성접대 관행에 대한 공론화와 이러한 성접대비의 사회복지비로의 전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초로 법적인 강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얼핏 관련이 적을 것 같기도 한 사회전반적인 평등화, 복지 국가 혹은 복지 사회로의 혁명적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여성 빈곤의 극복 없이는 성매매 축소는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 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북구유럽 국가들에서 성산업 종사자가 몇 백에서 몇 천 단위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배 카르텔에게 그 어떤 혁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복지 국가 혁명이다. 물론 그 과정은 우리 현실에 적합하도록 바뀌어져야 한다. 복지 국가 혁명 과정에서도 여성 문제는 각국의 특수성에 맞추어 살펴보아야 하며, 직접 이론 수입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의 돈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며, 각종 기업에서의 성접대와 유흥의 일환으로 지출되는 소위 '2차' 비용은 전체 성매매 비용 중 단지 일부분만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용인되어지고 있는 대규모적인 현상으로서의 기업 성접대 유흥 문화의 증대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을 외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펼친다는 광고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식적이고 대규모적인 여성 인권 침해 행위, 범죄적 행위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접대를 금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순 서빙을 제외하고 여성이 접대부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상 성매매 업소이면서도 '성교 행위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그 순간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업형,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은 법적 제재에서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물론 여성 차별과 성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소위 접대부 고용 가능 업소의 범위와 규정을 크게 강화하여 여성이 성적 노리개로 역할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 제정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에서부터 사실상 성매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성매매 형태인 검업형 성매매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실상의 성매매 업소이자 조직폭력배들과 룸펜들의 서식지인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등 검업형 업소들의 폐쇄와 업종 전환을 입법화 하며, 성매매 업소와 러브 호텔들을 지방 자치체에서 지역 주민 복지 센터로 재건축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적 정책을 강제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각 단위 지자체에서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몰수한 자산을 지역의 복지, 레저 시설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여 이들 업소들, 그리고 이들 업소들과 연관되어 있는 숙박업소 등을 지역 사회 복지 시설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에 지역 관청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의 동시적 노력도 시급한데,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가능한 키스방 등 신종 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 역시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매매 알선’은 물론 ‘성매매 유발’ 혹은 ‘성매매 방조’, ‘성매매 묵인’ 등에 관한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직접적인 삽입 성교 행위(및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법망을 피해 왔던 각종 껌업형, 신변종 업소들의 난립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증지는 물론 알선자와 알선 공간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하는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렇게 압류된 재산으로 성매매여성들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에 대해 성폭력 수준으로 인식하게 하여 전자 팔찌 수준의 감시 장치를 장착하는 방안, 그리고 소위 ‘카파라치’와 유사한 각종 시민 고발 장려 제도도 고려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룸살롱 등의 업소와 여성 정보, 그리고 키스방, 터치방 등의 국내 신변종 업소들, 그리고 해외 성매매에 대한 정보 공유 카페들 역시 반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현실에서 보듯, 남성 위주의 법 집행 단위의 의지 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일부 진보 운동가들과 여성운동가들이 주도한 계급과 노동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의 사변적 의존, 국가와 법제도, 경찰력에 대한 과도한 적대적 해석, 그리고 중간 알선조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념적인 ‘당사자주의’와

‘자발성’ 논의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남성중심적 국가 기구들에서 범집행을 담당해야 할 관료들 자신이 성매매 문화의 가장 큰 수혜자인 탓에 결단코 성매매와 성산업의 근절이나 축소에 적극적일 수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가해지는 반성매매 진영에 대한 반박은 성매매와 성산업 축소에 관한 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성매매 반대를 무기력하게 하는 국가 관료 기구들 단위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간 알선 매개체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성산업과 성매매는 근절은커녕 축소도 어렵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문제를 직접적인 문제제기로 해결하기 보다는 여러 수요 측면에서의 차단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성산업과 성매매 접대 문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다층적 착취 구조에 얽매이게 될 것이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지 못 하는 수많은 북한의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화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성매매를 매개로 발생하는 수많은 부적절한 관계, 부패, 유착들이 맺어지는 성매매 업소의 폐쇄 없이는 어떠한 서민 정책, 양성 평등, 복지 논의도 다 허상이다. 성매매 업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성매매 카르텔’의 추악한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성매매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의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성매매 카르텔 구조의 힘은 거대하기 때문에 공급적 측면과 더불어 수요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성접대 문화의 일환, 산업형 성매매 업소 중심 성매매 등 한국식 성산업과 성매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시

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보편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노력으로 성매매 산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준만, 2011, 『톱살롱 공화국』 인물과 사상사.
- 고정갑희, 2005, “성매매 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이론』 통권 12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김성천, 2004,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 제 6집 제 4호, 중앙법학회.
-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다시함께센터, 2007, 『산업형 성매매 축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 다시함께센터, 2008,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법률포럼』.
- 다시함께센터, 2009, 『2009 다시함께센터 인터넷 감시단 포럼: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모색』.
- 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 여성연구소 기획, 김애령 엮음, 2007,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성매매 공간의 다면성과 삶의 권리』 그린비.
- 민가영,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 강의 2』 동녘.
- 민변, 2004,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막달레나의 집.
- 박종성, 1996, 『권력과 매춘 : 억압의 음모와 도피의 흥계』 인간사랑.
- 변희순, 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봄빛여성재단, 2008, 『2008년 봄빛 심포지엄: 미국, 일본, 호주의 한국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
- 서울대 여성연구소, 2010, 『2010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2006,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

- 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글쓰기 프로젝트』 삼인.
- 손승연, 김현미, 김영옥, 2004, 『탈성매매 및 재유입 방지 방안 연구』 국회 여성위원회.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2007, 『성·노·동=Sex worker』 도서출판 여이연.
-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2005, 『성매매 방지법상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나영, 2009, “여성주의 ‘성노동’ 논의에 대한 재고”, 경제와 사회, 통권 84호.
- 이성숙, 2002 “성노동, 성매매, 변혁적인 개념화와 엄밀한 이론화를 향해서”,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 이영자, 2006, “성매매의 문화적 토양과 경제적 착취구조”, 『성매매방지상담원 양성교육 교재』 여성인권중앙센터.
- 이은애, 김재광, 2006, 『유럽 10 개국 성매매 관련 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재인 엮음, 2006, 『성매매의 정치학 한올아카데미』 한올.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2007, 『성매매 방지현장의 실천과 쟁점』.
-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 조국 편, 2004,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응의 모색』 사람생각.
- 조은주, 2008, “여성하위주체에서 ‘성노동자’ 운동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 78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현장연구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현장의 목소리

-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특성 및 송출구조 / 남재우팀장 인터뷰
- 해외로 인신매매된 성매매여성의 삶과 법적 지원의 한계 / 최수연
-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목소리 :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 최선화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특성 및 송출구조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남재우팀장과의
인터뷰 -

진행 김지혜(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장)

정리 김자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각종 언론을 통해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 여성의 피해가 계속 회자되고 있다. 사실 한국 여성의 해외 원정 성매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성매매 수출국'으로 인식되는 것도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국내(한국)는 물론 해외(특히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등)까지 성매매 대상으로 팔려나간다고 지적했다. 이미 몇몇 사건을 통해 밝혀졌듯이, 해외 인신매매는 사채업자, 브로커, 현지 업주 등 관련자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 아니라 선불금이라는 불법사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연구는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에 초점을 두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각층의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대책 수립에 앞서, 해외 인신매매 사건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했다.

따사로운 햇벌이 내리쬐던 5월 16일, 명실공히 해외 성매매 관련 최고의 수사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다. 그곳에는 지난 15년간 한인 여성의 해외 성매매 수사를 담당해온 남재우팀장이 근무한다. 우리나라 첫 한인 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한 이후,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그에게 해외 인신매매 사건의 현황,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 송출구조, 수사의 특성, 향후 대책 등을 들어봤다.

해외 성매매 사건 수사는 2009년부터 시작, 최근 해외 성매매는 일본과 호주에서 두바이 쪽으로 이동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해외 성매매 검거로 유명한데, 언제 어떤 계기로 해외 성매매 사건을 처음 수사하게 되셨나요?

우리 팀에서 해외 성매매 사건을 처음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입니다. 호주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감금되어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바로 인터폴을 통해 호주 연방 경찰에 협조 의뢰를 하였고, 그날 저녁 호주연방경찰에서 한인 여성 3명을 구출하여 5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해외 성매매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여성들은 앞서 일본 해외 성매매업소에 갔다 온 전력도 있어 성매매여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이들 모두 유흥업소 접대부들로 유흥업소 생활하면서 벌린 고리사채,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채업자 및 유흥업소 멤버들로부터 “죽었다 생각하고 일본, 호주에 한 번 갔다 온다”, “가족들에게 유흥업소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며 회유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외 성매매업소에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자의적이기보다는 심리적 감금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여성들을 일본과 호주 성매매업소에 보낸 사채업자와 멤버들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혐의로 입건하여 그 중 사채업자를 구속하였던 것입니다.

■ 2009년부터 해외 성매매 수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2012년 현재까지 해외 성매매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있나요?

특별히 큰 변화는 없으나 최근 일본은 단속이 많이 되자 호주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괌, 홍콩, 마카오에서 일을 한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 더욱이 아직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두바이’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나면서 두바이 쪽으로 이미 상당수의 여성들이 진출하였다고 합니다.

■ 작년부터 한인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추정되며, 실제 입건한 사건은 얼마나 됩니까?

일본의 경우 현지 방송매체 등을 보면 대략 2만 명의 한인 여성이 성매매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호주연방경찰청 인신매매팀장에 의하면 대략 1만 여명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좀 과장된 듯합니다. 일본과 호주는 대부분 성매매 업소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현황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미국은 성매매여성이 활동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 미국 경찰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팀에서 작년 한해 해외 성매매 사건으로 입건한 사람은 사채업자, 멤버, 업주, 성매매여성들을 모두 합쳐 103명입니다. 다른 팀들까지 다 합하면 1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선불금, 고리 사채 등 빚을 변제 못해서 협박과 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간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로 인정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성매매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채 빚에 떠밀려

■ 흔히 해외 성매매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까지 수사 경험을 비추어 보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간 여성이 50%, 빚 변제 목적으로 간 여성이 50%가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성매매의 목적은 돈입니다. 자의로 갔던, 타의로 갔던 이 친구들이 집이 잘살아서 성매매를 하겠어요? 잘살면 안하겠죠. 빚 변제 목적으로 간 여성들이 어떻게 빚을 지게 되는 지에 대한 표준적인 사례를 보면, 아가씨들이 유흥업소에 종사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60만원에 임차를 합니다.

아가씨들이 대부분 20-22세에 집에서 나오는데 방 보증금 500만원 돈이 어디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빌리죠. 500만원에 대한 이자는 한 달에 35만원에서 50만원을 줍니다. 방 명의를 사채업자 명의입니다. 방 월세는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합니다. 그럼 이 돈만 100만원이죠. 관리비 20만원, 하루 식비 최소 2만원이면 한 달 60만원, 유흥업소에 출근하기위해 미용실 비용 하루 2만원씩 한 달 60만원, 의류비, 화장품비는 최소 한 달 50만원, 통신비, 교통비, 교제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적게 잡아도 1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390만원 거의 400만원입니다.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만해도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정한 금액은 이들이 근검절약했을 때의 이야기고 유흥비용, 명품구입비용, 여행경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실제 업소에서 벌 수 있는 돈을 알아보까요? 테이블 한 번 들어가면 봉사료가 10만원입니다. 멤버비 만원을 떼면 9만원을 받아요. 2차까지 가면 30만원입니다. 여기서 멤버비 10%를 떼면

27만원이겠죠. 이것은 봉사로 포함금액입니다. 매일 업소를 출근할 수 있었습니까? 일주일에 5일, 한 달 20일 정도 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1일 20만원씩 번다고 하면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400만원입니다. 기본 생활비용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들의 유흥비용, 명품구입비용, 여행경비 등을 감안하면 유흥업소에서는 아무리 일을 해도 빚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면 빚이 이천만원, 삼천만원 기본으로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돈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채업자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 그러면 삼천만원 갚기 위해서 일본이나 호주로 가는 거죠. 일본이나 호주가면 한 달에 2천~3천씩 법니다. 실제로 성매매만 해서 하루에 5~6번을 뛰어버리기 때문에. 성매매 한 번에 제일 싼 게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25만원 되어버리니까 하루 5~6회 가량 뛰면 그 돈을 엄청 벌지만 업주가 4, 아가씨가 6으로 분배를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 6만 가져도 선불금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갚다 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죠. 이게 구조예요. 갚다 오면 또 빚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두 번가고, 세 번가는 경우도 생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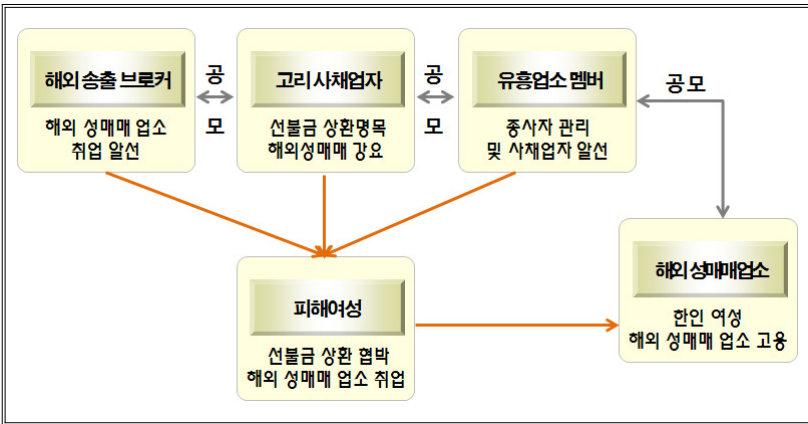
▣ 그럼 이전에 성매매를 하던 성인 여성이 선불금으로 쌓여진 빚 때문에 자발적으로 간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본은 선불금에서 시작됩니다. 사채업자와 (유흥업소)업주는 선불금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갚지 못할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게 합니다.

선불금 차용할 때, 여성들에게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게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시키고, 유흥업소 여성들 간 상호 연대보증을 통해 철저히 자신들의 관리 하에 둡니다. 선불금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사채업자는 각종

협박과 회유를 통해 해외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가족에게 알려줬다’, ‘집에 압류통고장을 보내줬다’, ‘너희들이 이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석 달만 죽었다 일하고 오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협박과 회유에 여성들은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미 공모한 해외 송출브로커를 통해 일본, 호주 등 해외 성매매 업소에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채업자는 해외 성매매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자신들의 빚을 변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과 호주가 똑같습니다. 반면, 미국은 직접 사건처리는 못했지만 주로 인터넷 또는 지인 등을 통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1〉 한인 여성의 해외 성매매 송출 구조

▣ 해외 성매매의 브로커나 업주는 한인인가요?

최근에 조사받은 성매매여성들에 의하면 조선족여성이 업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브로커와 업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 혹시 해외 성매매로 나가는 여성 중에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나요?

미성년자를 해외 성매매업소에 보낸 것이 확인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더욱이 외국에서도 미성년자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미성년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업주들에 의해 해외로 성매매를 가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 성매매는 거의 다 인지수사¹⁾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성인권단체에서 제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사를 해 본 경험에서 단서를 얻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채업자 사건을 처리했는데, 사채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파일에 유흥업소 여종업원 중 사채를 쓴 3,000명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수백 명이 일본과 호주에 갔다 온 기록과 사채업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 스무 명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뉴스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 대부분 인지수사로 시작된다면, 성매매 사건은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아서 사건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르네요?

성매매사건의 중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다를 것입니다.

1) 인지수사(認知搜查)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하는 것으로, 현행범, 준현행범, 불심검문, 다른 사건조사 중에 범죄를 발견하거나 마스크(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여성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성매매의 경우 선불금 및 고리사채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가게 된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해외 성매매업소에 보낸 알선브로커, 사채업자, 멤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사국에서는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표아래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성매매 사건의 수사에서 여성단체와의 연계가 중요.

수사기관은 사채업자, 업주, 브로커의 단속과 형사처벌, 여성단체는 피해자 동석과 사채, 선불금의 민사부분 담당

■ 해외 성매매 수사를 하면서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연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인권단체와 연계한 거예요. 제일 처음 호주 사건 났을 때, 여성들이 감금을 당해 성매매를 하고 있으니 구해달라고 말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탄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갔다', '내가 갔다' 등 정말 누가 들어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그 중에서 95% 정도는 다시 업계에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니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업계에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슨 단체가 있는지는 몰라도 여성인권단체가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114에 전화해서 '살림'이란 곳에 전화해서 동석을 요청했어요. 이후 상담원이 와서 여성들을 조사할 때마다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해주었고, 꾸준한 상담을 통한 끝에 사실관계를 다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업주, 사채업자, 멤버들 전부다 처벌을 할 수 있었죠. 그게 큰 성과였고 그걸 계기로 국내에 있는 필리핀 여성들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된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같이 공조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었습니다.

■ 해외 성매매 관련 수사에서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얻는 성과나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 조사할 때 동석을 원하면 바로 동석시켜 줍니다. 그리고 해외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빚이 수천만 원이에요. 최소한 수백에서 2천, 3천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법적 처리로 깔끔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여성단체에서 참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에서는 민사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형사 조사받을 때는 브로커나 사채업자들이 마치 없던 것처럼 탕감해 줄 것처럼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서류를 다른 데로 넘겨버려요. 실제 사례가 ‘살림’에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5~6년 전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사채를 쓰고 빚 변제를 다했지만 당시 작성한 차용증 서류를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식으로 허가난 ‘00정보신용금고’라는 업체에서 당시 빚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그 동안 이자까지 해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은 곧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연락이 갈까봐 일단 500만원을 보내주고는 저에게 상담을 하였는데 제가 민사적인 부분까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살림’을 연계시켜 주었고 ‘살림’에서 법률지원을 통해 바로 정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나 사채업자, 업주들 멤버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여성단체에서는 피해여성들의 상담과 민사적 부분을 해결해 주면 상승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지역에서는 소문이 많이 나니까 사채업자나 멤버들이 여성들에게 선불금 주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예전에는 하루 일하면 한 2만원 착취했다면 이게 1만원으로 줄어든다든지... 여성들에 대한 사채 금리도 예전에 500%였으면 이제는 190%, 120%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39%(현재 이자율)넘는 이자율로 빌려주는 게 태반입니다.

또한 살림이 우리와 관계가 좋다고 해도 피해여성 조사시 조금이라도 말실수하거나 하면 바로 제지합니다. 이런 감시, 견제기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 국제범죄수사대와 여성인권단체인 '살림'과의 상호 협력, 보완 관계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산지방경찰청은 작년 해외 성매매 수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성매매 수사의 전문가로서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성매매 분야에서 우리팀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과를 많이 이뤄낸 가장 큰 이유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였습니다.

현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보면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예전보다 많이 개정되어 있어 성매매여성들을 조사시 특히 '성매매목적의 선불금은 채권무효' 등 관련조항을 고지해주고, 여성인권단체 상담원을 동석시키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재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조사받은 여성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었고 친구 등 다른 피해여성들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 실적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매매여성들 중 알선브로커, 사채업자, 멤버들을 보호

하기 위해 자진해서 성매매업소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는 여성들이 있어 이들을 피의자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국민 보호, 각 국가의 법률 차이 등에 따른 국제 공조수사의 어려움

■ 해외 성매매 수사는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국제공조는 잘 이루어지나요?

2009년 4월 호주 멜버른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우리나라 여성 3명이 감금되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고로 호주연방경찰에서 구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성매매업소 업주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호주 연방경찰관이 2번이나 출장와서 피해자들에게 호주법정에서 피해 진술하도록 요청하였지만 여성들이 다시 호주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내 성사되진 못했지만 그 정도로 호주 연방경찰에서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작년 원정녀 동영상 사건 아시죠? 거기 보면, 일본 다카하시라는 일본 남성이 자기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우리 여성들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연예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수십 번 돌려 봐서 한 장면에서 일본 남성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걸 찾아내어 그 사진을 성매매여성들에게 보여주고 찾도록 의뢰한 결과 다음날 바로 '다카하시'라는 사람을 찾아냈고, 일본 경찰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어요. 작년 말에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한계지요. 이 남성이 일본에서 처벌받았다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겠습니다.

▣ 국제 수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성매매의 경우 각 국가마다 성문화가 다르고,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공조수사의 어려움이 많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 호주 포주(한국 여성)를 수배시켰는데, 그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한 강제소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호주 남성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강제소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가장 보람 느껴

▣ 해외 성매매 사건 수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첫 번째, 피해여성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고 또 다시 유흥업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고, 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 성매매업소를 알선한 브로커, 사채업자, 멤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성매매여성들이 빚을 진 이유는 고리사채, 선불금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빚을 담보로 헐박과 회유를 통해 해외 성매매업소로 보내 자신들의 빚을 변제받은 사채업자, 유흥업소 멤버 등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반대로 해외 성매매 사건 수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가장 큰 보람은 느끼는 것은 여성들이 업계로 돌아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사 받은 여성 중 5%의 여성들만 사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숫자가 계속 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정착금 지원해야

■ 수사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의 95%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성들이 사회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착금입니다. 가장 처음 시작되는 건 거주지입니다 사채업자들이 왜 머리가 좋냐면, 사채업자가 임대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돈 떼일 염려가 없잖아요. 제가 만약 NGO 단체에서 일하게 되면, 기금을 조성하거나 국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탈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저는 500만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되 명의를 여성인권단체로 하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자는 저리로 빌려주면, 여성들은 이 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마트에서 알바를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새 출발하기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립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처음 출발할 수 있는 기금이 있어야 해요. 그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자립해서 나가면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새 출발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대는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2001년 7월 15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최초 창설되었다. 당시 명칭은 외사범죄수사대였으며 2010년 10월 1일 국제범죄수사대로 변경,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주 업무는 국제범죄, 외국인의 국내 주요범죄, 해외 한인피해신고 처리, SOFA 사건(미군범죄) 등 다른 나라와의 연관된 범죄를 수사한다.

부산 국제범죄수사대는 2011년 해외 성매매사범 기획수사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선불금으로 해외로 송출된 성매매여성들은 피해자로 인정, 검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선브로커, 사채업자, 업주 등 주요범인의 높은 검거율로 이룬 쾌거이다.

* 홈페이지 www.bspolice.go.kr

* 남재우팀장 이메일 njw1231@yahoo.co.kr

해외로 인신매매된 성매매여성의 삶과 법적 지원의 한계

최수연((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센터장)

1. 들어가면서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국내 성산업(깍걸지)의 축소 및 지형 변화에 따라 한국여성의 해외 성매매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인신매매실태(TIP)보고서’는 한국의 인신매매 및 해외원정 성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은 걸은 모범생 같은 1등급 국가지만 속으론 문제투성이 낙제생의 모습을 면치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남성들에 대한) 강제 노역,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시발점인 동시에 경유지 및 최종 목적지이며, 한국 여성들은 국내(한국)는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성매매의 은폐성, 불법성으로 인하여 해외로 송출된 성매매여성에 관한 명확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몇몇 연구를 통해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2010년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성매매된 여성의 수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언론을 통하여 몇몇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한국여성의 해외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

서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 및 관련 법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알려지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이론적,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2010년~2011년 최근 2년간 부산 지역에서 일본, 호주 등 해외 성매매업소로 유입된 여성의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피해여성의 해외 유입경로, 해외 성매매업소의 경험, 지원과정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해외로 성매매 된 여성의 삶

1) 협박, 회유 등으로 선택하게 된 해외 성매매 업소

해외 성매매업소의 유입경로는 다양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선불금을 갚기 위해 해외 업소로 유입되기도 한다. 호주는 성매매 합법화 지역이므로 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이용하여 가는데, 외국어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등 왜곡된 정보에 의하여 가는 경우가 많다.

부산 지역 내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2008년~2010년 3년 사이 해외 성매매업소로 유입된 여성의 수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 경기가 좋지 않자 고액의 선불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하여 전주(사채업자)¹⁾, 멤버²⁾, 중간브로커 등이 중심이 되어 많은 여성들을 보냈다고 한다. 해외 성매매가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여성이 일본, 호주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 1) 성매매여성을 상대로 선불금을 대여하는 역할을 한다.
 - 2) 성매매업소는 저마다 다양한 착취구조가 존재한다. 부산 유흥주점의 경우 중간관리자 급의 멤버가 있는데, 멤버는 성매매여성의 수입 및 지출 관리, 선불금 마련, 전주(사채업자)와 연결시켜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명의 멤버 아래 최소 몇 명에서 최대 수십 여명의 성매매여성이 있으며, 멤버가 업소를 옮기면 여성들도 함께 옮기는 조직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2008년~2010년 당시 근무한 업소 내 우리 팀에서만 10명 정도 갔다. 우리는 멤버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기 때문에 빛이 많을 경우, 멤버가 일본에 한파스 갔다³⁾오라고 하면 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는 업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멤버와 전주에 따라 처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해외로 간 여성들이 한 업소에만 30~40명은 되었다. 솔직히 너무 괴롭히고 하니깐 나도 빨리 빛을 까고 싶고 해서...”

“00가 일본에 가서 돈 벌어서 빛을 다 줬다. 내가 한국에 있으면 이 빛을 못 깎다, 빛을 꺼려고 하면 일본에 가야 된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큰돈의 선불금을 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해외에 한 파스 갔다 와서 마음 편하게 돈을 벌어라.”

부산지역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성매매여성은 아르바이트 형식을 포함하여 100명~150명으로 추정되는데, 선불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몇 백명의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해외 성매매업소를 선택하였다.

“내가 선불금이 많으니까 멤버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 날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게 되거나, 진상을 거부할 경우 양귀비 뒷다리, 금테⁴⁾, 집에 알린다, 애인한테 알린다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한다. 그래서 도저히 빛을 빨리 갚지 않으면, 때때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리고 난 아니었지만 어떤 아가씨는 머리를 쥐어 박히거나 뺨을 맞기도 한다. 그래서 정말 무섭지만 해외라도 갔다 와서 빨리 빛을 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00이 빛이 많아서 00가 빛을 갚아야 하는데 똥똥하고 초이스(구매자의 선택)도 되지 않아 00가 빛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00와 나는 연대보증관계에 있었고, 00가 빛을 갚지 못하면 그 빛은 고스란히 나에게 오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업소에서 연대보증관계에 놓여 있고, 연대보증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 빛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멤버가 두 명이 먼저 일본으로 가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00가 혼자 가는 것보다 너도 함께 가서 돈

3) 성산업 구조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어떤 행동을 옮기는 것을 뜻한다.

4)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용어이다.

을 벌여오라고 했다. 그리고 00가 혼자는 죽어도 가기 싫다하고, 멤버는 일본에서 2~3개월 만에 1,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희생타였다.”

유흥주점의 경우 성매매피해여성은 전주(사채업자), 멤버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오빠, 언니, 이모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선불금을 회수할 때는 온갖 욕설과 협박, 회유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관계의 호칭을 사용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에 호소하며,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멤버와 전주가 해외로 한 파스 갔다 와서 너는 빚 갚고, 마음도 편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해외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등으로 회유하여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성매매업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또한 성매매업소에서 연대보증관계에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 채무자가 빚을 빨리 갚게끔 하기도 한다.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거나 잡수를 탈 경우 그 빚은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업소에서 함께 일한 여성의 연대보증 빚으로 인하여 해외 성매매업소로 가기도 한다.

2) 은폐되어 있는 해외 성매매 알선업자

성매매피해여성이 해외 성매매업소로 가기로 결정되면 전주(사채업자) 및 멤버, 중간 브로커 등을 통하여 업소를 알선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거나, 해외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언제든지 콜하면(연락하면) 도와주겠다’ 등 믿음과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절차를 처리한다.

“일본에서 마마5)가 한 번씩 들어왔다. 전주(사채업자)와 멤버가 마마들하고 연락한 후 애들 얼굴을 보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도 금액을

말을 하면, 마마도 아가씨가 필요하니까 마마가 인터뷰하러 온다. 면접이 끝나고 나면 마마와 취라이 본다.”⁶⁾

“오픈티켓⁷⁾을 끊어줘. 그런데 돈은 내가 낸다. 나중에 일을 하면서 돈을 까는 형태이다. 마마가 끊어주고, 3개월 관광비자로 보고, 기간을 설정하고, 일본에 가니까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

면접에 합격된 여성은 선불금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전주(사채업자) 및 멤버, 중간브로커를 통하여 여권을 만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⁸⁾를 작성하기도 한다. 공정증서상의 채권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선업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00마마, 00실장, 00오빠로 호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이 알선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알선업자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의 진술이나 제3자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국내의 준비가 마치면 “몇 월 몇 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그곳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준다” 때로는 해외로 나가는 과정에 중간브로커가 공항까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성매매피해여성이 직접 공항으로 가서 출발한다.

3) 감금, 감시, 경제적 착취에 얼룩진 해외 성매매 경험

해외로 송출된 수많은 성매매여성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설명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해외 성매매업소로 유입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빚을 갚기 위하여 하루하루 인신매매 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업소가 존재한다. 월급제 형태의 업소는 2차를

5) 일본 유흥주점의 업주를 의미한다.

6) 성매매여성의 선불금에 대한 협상을 의미한다.

7) 오픈티켓은 탑승편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티켓이다.

8) 공정증서는 알선업자에게 선불금을 빌린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서류이다.

형식적으로 강요하지 않지만 손님 유치 및 스폰서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액의 선불금을 받고 간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이자와 선불금을 갚기 위하여 스폰서와 손님을 유치해야하는 압박감을 받게 되고, 매출을 담보하지 못한 경우 중간 브로커에 의하여 타 업소로 가기도 한다.

콜업소의 경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지만 인신매매 상태에 놓여 있다. 업소에 도착을 하면 업소 선전용으로 반라에 가까운 사진을 찍는다. 물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을 하면서 갚는 형식이다. 때때로 사진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업소의 에이스라는 명목으로 잡지 선전용으로 성행위 장면 촬영을 강요당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일본 내에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 2011년 국내에서 ‘원정녀’라는 제목으로 유포되어 신상이 알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성행위한 사진 및 동영상을 한국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많은 여성이 언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줄 몰라 늘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사진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솔직히 사진, 동영상이 가장 지금 걱정되고 힘들다. 내가 갈 때는 플래카메라 등 배포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니 못해서. 마마의 공유기를 통해서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양이 좋지 않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성매매하는 장면이 촬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서 늘 불안했다. 주변에서도 사진과 동영상으로 고민하는 아가씨가 있다. 사진 수정을 한다고 했지만 수정하지 않았다. 실물하고 똑같다는 말을 들어서 진짜 불안하다. 큰 가게의 여성이 10명이 넘지 않는데 사진은 20~30여명 정도 된다. 언제까지 돌아다닐지 몰라서 늘 불안하다.”

회유와 협박으로 해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된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감금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을 압수당하는 등 감금과 감시속에서 생활을 한다. 24시간 상시 대기는 물론, 특히 일본의 경우 성구매자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콜(택시)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여성들은 성구매자에 대한 방어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런데 자유가 없었다. 진짜 심했다. 외출도 안 된다. 미용실외에는 외출이 되지 않았다. 일에 필요한 부분만 외출이 허용되었다. 나중에 00가 있는 건물에 이사를 갔는데도 2층에 있는 건물도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일본은 말도 안통하고, 손님한테 클레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손님한테 대드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3번 걸리면 일을 시키지 않았다. 또한 내가 있는 업소에서는 3~5천엔을 주면 콘돔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벤트로 선전했기 때문에, 손님한테 콘돔을 착용하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정말 콘돔을 착용하려고 하면 내가 알아서 요령껏 손님을 꼬셔야 하는데... 말도 안통하고, 더러운 사람도 많고, 어떤 손님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때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늘 불안하다.”

“일본에서 일할 당시 마미는 우리가 도망갈까봐 여권을 뺏고 감금하고 어떤 아가씨는 마마가 던진 재떨이에 맞기도 하였다. 그곳에 있을 때 아가씨가 피곤하다고 하면 마마가 돈을 받고 주사를 주었는데, 아무도 주사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마마가 정하는 벌금을 내기도 하는데, 마마의 기분에 따라 벌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될 때도 있었다. 내가 돈을 받고 왔기 때문에 마마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 낯선 곳에서 갈 때도 없고, 콘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24시간 항상 대기를 했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기는하지만 일이 많으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늘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돈을 주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렌터카를 불러서 갔다. 그리고 외출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생필품 등 심부름을 해주곤 하였다.”

“호주도 일본 업소처럼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의 자유가 있었다. 호주는 업소 내 아가씨들이 앉아 있으면, 손

님이 여성을 보고 선택한 후, 그 건물 내에서 성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호주는 총기가 소지되고, 외국인 범죄가 많은 곳이니가 함부로 외출을 하지 못했다. 조금 덜 구속적이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감시 아닌 감시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무서우니까 늘 집에 있었다. 호주에 간 것도 일본에 간 것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거의 수막 걸핍기로 알고 있다. 들어가 보지 않았기에 하나도 모른다. 실제로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정답이 없다. 아이들이 모른다.”

해외 성매매업소의 경험은 성매매피해여성이 선불금 있고, 없음을 떠나서 생활 자체가 인신매매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문제, 여권 압수, 업주의 횡포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 성구매자에 맡겨진 신체 결정권 등 성매매 피해여성의 경우 생명이 위험해도 아무 곳에서도 도움을 청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서로 간 ‘누구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욱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해외로 송출된 성매매여성의 경우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차라리 국내의 열악한 업소가 더 낫다고 표현을 한다. 국내는 최소한 말도 통하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3. 해외 성매매 피해자 법률지원의 한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의 성산업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업주가 주는 선불금에서 제2금융권, 사채업자(전주), 일수업자가 선불금을 해주는 형태로 변화하기도 하고, 선불금이란 용어는 전도금, 마이킹 등 여러 가지로 명명되고 있다. 선불금에 대한 이자도 10부, 5부라는 명기를 하였지만 들어도 알 수 없는 이자율로 계상되기도 한다. 멤버, 사채업자를 통하여 선불금을 갚기도 하지만, 계를 만들어서 선불금을 갚기도 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은폐되어지는 착취 구조를 파악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전담팀이 필요하다.

“이자율, 가게 시스템, 멤버와 전주가 하는 역할을 잘 모르더라. 계보를 적는 것이 힘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설명하고, 경찰을 이해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자율이 어디 있는가를 되물어 본다.”

“물론 공평하게 해야겠지만 업소아가씨라고 무시하고 차별한 느낌을 받았다. 불합리하다는 점, 여권 뺏고, 해외에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처음부터 인신매매라는 것을 안 것도 아니고, 조사 받으면서 이것이 인신매매이구나 하고 느꼈다.”

“나는 다른 아가씨에 비해 담당경찰관이 좋았고,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심리적으로 지지도 받고, 힘을 낼 수 있어서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검찰에 의견서도 쓸 수 있었다.”

성산업구조에서 알선업자가 오빠, 언니, 이모, 실장 등으로 명명되어지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여성이 알선업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 기록을 해 두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증언, 성매매피해여성의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사건을 하면서 상담소 있는 것도 알지만, 여성단체에 가면 해코지 당할까봐, 찾아와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경찰은 사건을 해결할 뿐이고, 그 뒤에 잊혀진 사람이다. 이후에 아무도 책임을 저주지 않는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때론 도움을 준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니까...”

또한 형사사건을 진행할 때 같은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끝임 없는 알선업자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여 상호간에 상처를 입히거나, 알선업자들의 선처를 구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모습을 볼 때 알선업자와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점으로 남는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선불금 유무를 떠나서, 회유, 협박 등으로 여권을 받

급 받고, 공정증서 작성, 항공료 부담, 공항도 스스로 가는 등 보이는 행위 자체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성착취 구조속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 왜 그런 선택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 성매매된 여성의 경우 선불금으로 인하여 자의와 관계없이 해외로 유입되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음란행위의 촬영을 강요당하거나, 여권 압수 등 감시, 감금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선업자의 경우 해외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불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또는 알선 수수료를 받고자 성매매피해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알선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착취의 고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것 같다. 힘든 일이 있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막말로 당기지 않으며, 당장 살기도 힘들고, 갈 곳이 없다. 집도 문제고 생활도 문제다, 애원동물도... 그래서 결국 배운 것이 그것뿐이기에... 돈이 없어 하루살이 같다. 못 쓰고 못 먹고 하는 것이 두렵다.”

끝으로 형사사건이 종결이 되면, “언젠가는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또한 당장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또 다시 성매매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수사기관, 상담소와 연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선불금 및 기타 채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 다시 성매매 늪으로 빠지기도 한다.

4. 나오면서

해외로 성매매된 여성의 경험을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어느 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는다’, ‘선불금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빚을 청산하자’ 등 해외로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해외 성매매업소에서 협박, 감금, 경제적 착취 등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인신매매”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각국에서 인신매매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해외 성매매 실태조사와 함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조항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알선의 고리를 차단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성적착취를 위한 국제인신매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예비연구.
- 여성부. 2007. 성매매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전국 성매매실태조사.
- 봄빛재단·국제이주기구서울사무소. 2006. 한국여성의 해외 인신매매실태조사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목소리 :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최선화(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책·사업팀)

1. 들어가며

일본 2만 명, 호주 1만 명. 그동안 각종 보도를 통해 드러난 해외 성매매 한인 여성의 수다. 1만, 2만 명 등 해외로 나가 성매매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불금이나 빚에 의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미 수년전부터 언론에서는 해외에서 성매매하는 한인 여성들의 존재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이 해외유입에 대한 원인이나 경로, 그곳에서의 생활, 피해실태 등은 간과해왔으며, 이들이 실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사실 또한 삭제된 채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5일 개최된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은 호주, 미국, 일본 등 해외 각국의 한인여성 피해 및 지원 사례를 통해 그 실상을 알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본 글은 지난 6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2 성매매 방지 국제심포지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한인여성 피해실태와 대응전략 모색 (Victimization of South Korean Women and Strategies against Sex Trafficking)」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의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한다. 본 심포지움의 자료집 전문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www.stop.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한인여성 피해실태와 대응전략 모색’을 주제로 했던 2012 성매매 방지 국제심포지움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번 심포지움이 내포하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2. 2012 성매매 방지 국제심포지움의 주요 논의 내용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호주, 미국, 일본 등 한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에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인 피해여성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기관(NGO)을 중심으로 피해실태와 지원 사례 및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를 요청하였다. 피해실태 등의 이해를 위해 사례발표 이전 관련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을 통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과연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초연설을 듣는 것으로 본 심포지움은 시작하였다.

1) 기초연설: 성매매와 인신매매, 여성인권의 상관관계

기초연설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그리고 여성인권’을 주제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을 역사적, 국제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쉐라 제프리 교수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그리고 성 불평등의 관계”를 주제로 한 기초발표를 통해 “여성의 불평등은 성매매 산업과 성적 인신매매가 번성하는 기반이며, 인종차별주의에 의한 불평등도 성매매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성매매 산업은 불평등을 악용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여성의 지위에 해를 가함으로써 불평등을 조장하기도 한다”며 성매매는 인종차별 강화와 빈국여성 및 하층계급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를 촉발시키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적 인신매매 어떻게 볼 것인가? 과정과 쟁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이나영교수는 인신매매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대와 심화되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 속에서 지역 수준(국가nation-state, 지역region)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결합된 결과이며, 젠더, 계급, 인종, 민족에 관한 이데올로기가 매개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신매매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 인신매매의 과정 등을 살펴보면, 인신매매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권적 차원의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현재 인신매매가 거대 산업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지구적 성산업의 확산과 남성중심적 성적 인식 등을 총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성착취 목적의 한인여성 인신매매 실태와 피해자 지원현황

기조연설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성착취 목적의 한인여성 인신매매 실태와 피해자 지원현황’을 주제로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성착취 목적의 한인여성 인신매매 실태와 함께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해외로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피해를 입은 한인여성의 귀국 후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연계 방안과 피해자의 귀국 후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인 ‘폴라리스프로젝트(Polaris Project)’의 캐슬린 데이비스(Kathleen Davis) 팀장은 “한인 여성의 미국 내 성매매는 한국과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이 이루어지며, 피해자 대부분은 미국 성산업 실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며, “한국 내 모집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와 조직 해체, 인신매매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범 집행자 대상의 교육”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3명의 한인여성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52명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한편, 폴라리스 프로젝트에서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핫라인을 통한 전화상담 내용을 보면, 총 51,458건의 통화 중 48%가 성착

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국적 중 한국은 7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미국 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그중 한인여성의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인신매매, 성매매, 성착취로부터 여성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기관인 호주 ‘프로젝트 리스펙트(Project Respect)’의 켈리 힌튼(Kelly Hinton) 대표는 발표를 통해 호주 성산업의 합법화는 호주의 여성인신매매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임을 지적하며, 한국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된 여성의 대다수가 합법적이거나 허가를 받은 업소로 인신매매되었다고 하였다.

켈리 힌튼은 호주 내 한인여성 인신매매 피해의 실태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연간 1,000명의 여성이 빗(채무) 때문에 인신매매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 피해여성 대부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비자로 호주 허가업소로 유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 임에도 자의로 들어온 자로 간주되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의 한인여성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이 지원한 한인피해여성들은 업주로부터 ‘경찰 혹은 지원시설을 믿지 말라’거나 ‘영어 못해요’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업주에 의해 잘못된 정보를 주입받게 되어 귀국 후 처벌받는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빚과 폭력, 강간, 마약, 가족에 대한 위협 등 성매매여성의 피해 실태에 추방에 대한 두려움, 정보부재, 귀국후 처벌 등의 두려움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일본지부(Polaris Project Japan)’의 후지와라 시호코(Shihoko Fujiwara) 대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일본 정책과 피해자 지원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빚과 허위광고로 한국에서 모집되어 일본 성산업으로 유입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일본 내 어학원 등에서도 여성을 모집하는 경우

가 있다”며 “일단 일본 내 성산업으로 유입되면 헤어지기 어려운 구조여서, 제일 한국대사관의 사전개입, 한-일 경찰 간의 협력,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해외 성매매 피해여성의 귀국 후 피해자 지원을 해온 ‘다시 함께센터’의 유복임 전 소장은 성착취 목적의 해외송출 인신매매 피해자 연계 및 지원 사례를 통해 피해자 연계 및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공관과 관련 기관, 수사기관의 협조와 함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매매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보는 점, 성매매에 대해 각국의 상이한 법과 제도, 각국 수사기관 공조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일본, 호주, 미국 등으로 해외송출 되었던 피해 한인여성의 지원 사례를 통해 각 국가의 영사관과 국제범죄수사대의 협조가 안진한 귀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가 귀국 후에 상담, 의료, 법률 등 체계적인 귀국 후 지원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모색

마지막 세션에서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전략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발표를 한 캐롤라인 노마 교수는 “한국여성들이 해외 성산업으로 유입하는 것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때문이 아니라 성산업을 합법화하는 국가 때문”이라며, “호주의 성매매 합법화는 자국여성이 아닌 가난한 국가의 여성, 하층계급의 여성을 성산업으로 유입시키는 매개로 작동하고, 한국 업주들이 호주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촉발한다”고 강조하였다.

캐롤라인 교수는 “한국이 처한 문제, 즉 세계화된 성산업과 비협조적인 외국 정부 사이에서 성매매방지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한국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통합적 성매매·인신매매 방지 지역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2012 성매매 방지 국제심포지움의 의의

1) 성매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유발의 원인임을 재확인하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의 의미는 무엇보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산업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성매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일본의 성산업 규모는 연간 3천억 엔으로 인신매매범들은 자국 여성과 이동에 대해 강제적으로 포르노 산업과 성산업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멜버른 업소 여성들의 약 50%가 중국과 한국에서 인신매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라 제프리는 이번 기조연설문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이든지 목인하는 국가이든지 성매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신매매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국가들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대당할 준비가 된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캐롤라인 노마도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매매합법화와 인신매매 증가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호주여성들이 더 이상 성산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이것이 호주 성산업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지난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호주 성매매 산업에서는 아시아 여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아시아 여성들이 매우 매력적이고, 자신의 일을 잘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캐나다,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성산업 역시, 업주들이 국내에서 여성들을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가와 상관없이, 여성을 자국 내로 인신매매하도록 만들었다”며 호주 내 성매매 합법화 이후 확장된 성산업과 인신매매의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

을 봤을 때,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성매매를 유지·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이 절실하다.

2) ‘자발’이라는 명제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한편 각 국가에서 발표한 한인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언론보도나 일반인의 인식에 자리해 있는 해외 성매매여성에게 드리워진 ‘자발’이라는 명제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다. 겉으로 볼 때 해외 성매매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본인이 여행비자나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간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례발표 등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은 빚(사채, 선불금)에 의해 자신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캐슬린 데이비스는 “한인 여성의 모집은 한국과 미국에 있는 한인 내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곳에 온 여성들 중 몇몇은 이러한 모집이 성산업과 관련되는 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 실태와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 등 성산업에 있는 한인여성이 맞이하는 실제 상황은 한국인 택시운전사에 의해 미국 전 지역으로 이동하며 성매매를 하고, 신체적·성적으로 학대당하며 약물중독과 격리, 폭력의 위협, 서류물수 등입에도 이러한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트라우마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자발’이 아닌 ‘인신매매’의 요소는 미국 뿐 아니라 호주와 일본 등

1) 캐슬린 데이비스, 2012, “한인여성 성매매 피해실태와 지원현황”(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자료집)을 보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신체 건강상의 합병증으로 성병, 머리외상, 영양실조, 치아질환, 골절, 사지불구, 만성 두통, 면역 및 호흡기 질환, 부인과 질환, 타박상, 체중감소, 피부과 질환, 이, 빈대 등이 있으며, 정신건강 질환으로는 우울증, 자기격리, 움츠림, 약물남용, 기억력상실, 집중력 상실, 악몽, 몸떨림,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 초조, 만성스트레스, 편집증, 의심, 조울증, 식습관장애, 공포증 등이다. 또한 공포와 폭력, 권리와 정보에 대한 무지, 외상성 애착, 부끄러움, 자기비판, 감금, 격리, 신

대부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즉 국가와 상관없이 성산업에 들어가게 되는 한인여성들이 겪게 되는 실상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각국에서의 피해사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피해자 지원 사례에서 이들이 ‘자발’이 아닌 ‘인신매매 당한’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각 국가의 피해자 지원 기관 및 경찰, 정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실제 귀국 후 피해자 지원 사례를 발표한 유복임의 발표문을 보면, 피해자의 귀국은 3개 기관 즉 NGO, 경찰, 영사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성매매에 대한 각기 다른 정책기조, 국제적 협력 필요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접근(시각)과 상이한 정책기조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만의 논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많은 여성들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하면서 성매매 합법화 국가의 허가된 업소로 유입, 일하게 된다. 캐롤라인 노마의 발표²⁾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지난 5년 간 ‘아시아여성만 있는’ 업소가 크게 늘어났으며, 성산업에 종사하는 아시아계 여성 수도 급격히 증가해왔다고 한다. 또한 시드니 허가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의 57%가 비영어권 출신이며, 45%가 서투른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는 멜버른과 시드니의 성산업이 아시아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호주 성산업의 아시아화는 호주의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 정책, 비범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특히 업주에게 있어서는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다른 정책기조는 한국

분중 부재, 경찰불신, 빚, 의무감, 언어·문화적 장벽, 절망, 거짓 약속 등이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탈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2) 캐롤라인 노마, 2012,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전략”,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정책을 회피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대안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존재하는 곳, 즉 호주, 미국, 일본 등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와 알선업자는 거의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드러난다. 해외 국가의 아시아여성에 대한 높은 수요(수요를 만드는 광고), 성산업의 합법화,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등은 더욱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가 사회와 사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식별 등에 대한 국제적으로 공통된 근거,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향후 과제

이번 심포지움에서 마지막 세션의 종합토론을 통해 나온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1)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2) 한인여성 피해지역에서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3) 성매매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국제 네트워크 구축

국제심포지움 발표자 및 참여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태지역의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연대체가 필요하고 연대체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단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적으로 이번 심포지움에 참여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심으로 연대체를 구성하고, 추후 구성국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연대체의 주요 활동 내용은 각국의 정책이 다름에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통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피해자 식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공조

책 마련), 인신매매의 개념 확장, 그 확장된 개념에 대한 각 국가 및 일반인의 인식변화를 위한 홍보활동, 각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소개 및 피해자 지원체계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대체, 공조 논의활동은 연대체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각국의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정책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소개하고, 기관위치, 연락처, 기관 활동 등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와 법률, 의료, 상담, 정신건강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와 피해자 지원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인여성 피해지역에서의 피해자 지원 활동

한인여성의 해외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를 줄이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활동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발표 등을 통해서 업주들이 한인여성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거짓 등을 유포하고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해외 정착취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국 한인사회에 피해자 지원 및 협조 방법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귀국지원과 귀국 후의 기관연계를 통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물품은 각국 영사관과 한인협회, 식료품점 등 한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배포하고, 교포신문 등에 광고를 통해 피해자 지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한국인 피해여성을 위해 한국어 지원, 한국인 상담원 등의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지난 『여성과 인권』 통권6호에서 캐롤라인 노마와의 인터뷰 내용³⁾을 살펴보면, 해외에서의 한국어 상담 및 한국어지

3) 지난 몇 년간 한국 여성의 인신매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로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 ...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6개월 동안 학생으로 한국에서 온 활동가가 있었고, 아웃리치 일을 했다. ...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한

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의 여성 폭력 핫라인(Hot-line)인 1366 등의 시스템이 가능한지를 점검하여, 국외에서의 한인여성 성매매피해에 대해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가 교환프로그램⁴⁾처럼 한인여성의 피해실태 파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가 교환프로그램을 각국 및 각주로 확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국내외 연계,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해외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외로 긴급 구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매매여성을 위한 긴급지원금도 활용 범위의 확장이 고려해야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3)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전개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E-6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성산업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이나 해외에 나가 성산업에 유입된 한인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더라도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 피해자 식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떤 이는 피해자로, 어떤 이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인신매매법 역시 관련법의 부재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신매매법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관련법 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주재

국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쯤,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Legislative Assembly for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2011:89). 최선화, 2011, 「호주 한인 성매매 문제의 현실과 본질」, 『여성과 인권』 통권6호.

4) 2012년 공동협력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 여성인권 증진 분야에서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 진행 중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체계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호주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재판부, 경찰 등 관련 분야 담당자는 인신매매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 식별과 접근 등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2012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의 4개국의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연구자와 NGO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여,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외 한인여성의 피해 실태를 점검하여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성매매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기제임을, 해외에 나간 한인 성매매여성에게 드리워진 ‘자발’이라는 명제가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국의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날 논의된 다양한 향후 과제들은 이번 심포지움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씩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논문

• 성구매 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 / 맥스 월트먼(Max Waltman)

성구매 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

맥스 월트먼**

서론

2011년 2월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적 반인신매매법

* 본 논문은 2011년 2월 5일 미시건대학교 법과대학이 주최한 “국제적 인신매매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스웨덴어에 대한 번역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자가 직접 한 것이다. 필자가 쓴 또 하나의 유사한 논문이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저널 제34권에 실릴 예정이다. 스웨덴 법과 관련한 논쟁과 의견 중 일부분은 스웨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공동 저자들과 함께 논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참조할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적 서비스의 구매 금지에 대한 의견서: 1999-2008년도에 대한 평가(Petitioners et al., A Response to Prohibition Against Purchase of Sexual Service: An Evaluation 1999-2008 (SOU 2010:49)”이다. (스웨덴 정부는 2011년 2월 2일에 공식적으로 이 의견서를 접수했다.) 이 문서는 이하 “Petitioners et al., A Response”라고 칭하며, http://www.statsvet.su.se/homepages/max_waltman.htm에서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서는 “정부의 성매매법 검토와 관련한 제안서 (Petitioners et al.,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s Review of the Sex Purchase Act (스웨덴) (2010))”이다. (해당 위원회는 2010년 3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이 문서를 접수하였다.) 이 문서는 이하 “Petitioners et al., Suggestions”라고 칭하며, http://www.statsvet.su.se/homepages/max_waltman.htm에서 볼 수 있다. 조나스 탈버그와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으며, 캐서린 A. 맥키논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 맥스 월트먼은 스톡홀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캐나다, 스웨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국가에서 평등과 기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의 음란물과 성매매의 법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논문으로는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3, no. 1 (2010): 218-237에 발표한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 캐나다와 미국에서의 음란물과 성적 불평등에 대한 법적 문제(Rethinking Democracy: Legal Challenges to Pornography and Sex Inequality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가 있다.

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필자는 성구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성적 인신매매와 관련한 법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인신매매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나는 “자국에서 납치되어 해외로 팔려간다: 국제사회의 성적 인신매매”라는 내 패널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인신매매를 정의하는 가장 최근의 국제적 합의인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도 ‘납치(kidnapping)’라는 용어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¹⁾ 이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협박, 유괴, 사기, 속임수,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전달, 은신 또는 접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²⁾ 그리고 인신매매된 사람의 동의 여부는 책임성과 무관하다.³⁾

인신매매에 대한 이 정의를 납치와 비교해보자. 미국법에 따르면 납치는 연방정부의 관할구역 하에서 “특정인을 불법적으로 붙잡거나, 감금하거나, 속이거나, 유인하거나, 납치하거나, 유괴하거나, 데려가서 몸값 또는 기타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 붙잡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⁴⁾ 대체로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는 납치와 달리 인신매매는 성착취 목적으로 일방이 상대방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할 때 일어날 수 있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선⁵⁾을 현실에

1)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pened for signature* Dec. 12, 2000, T.I.A.S. No. 13127, 2237 U.N.T.S. 319 (2003년 12월 25일 발효)[이하 팔레르모 의정서].

2) *Id.* art. 3(a).

3) *Id.* art. 3(b).

4) 18 U.S.C. § 1201(a) (2010).

5) Palermo Protocol, *supra* note 1, art. 3(a)를 참조한다. 또, Harvey Schwartz, Jody Williams & Melissa Farley, *Pimp Subjugation of Women by Mind Control, i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Making the Connections 49, 49-84 (Melissa Farley ed., 2007)를 참조한다. 이 논문은 공공연한 무력 사용과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사회계급에 따른 불평등한 지위와

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2004-2008)은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대부분 인신매매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성매매로 유입된 경로나 성매매 내 경험에 권력 남용이나 취약성의 악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기서 권력과 취약성은 젠더, 인종, 민족, 빈곤에 따른 권력의 불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성매매 유입경로와 “그 생활” 안에서의 삶은 역량 강화나 선택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⁶⁾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사람들 중 일부는 납치되기도 하지만 다음 I부에서 설명할 것처럼 인신매매는 납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성적 불평등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성매매와 더 관련되어 있다. 이 논문은 또 1999년 1월에 제정된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이 성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그와 비슷한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할 것이다. 이 법은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성관계를 취득하는…… 자는 그러한 성적 서비스의 구매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⁷⁾고 규정함으로써 성구매자만 처벌하고 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1999년 1월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선고된 최고 형량은 징역 6월이었다.⁸⁾ 이 법이 통과되기

평등한 선택권의 부재가 공존하는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박을 통해 납자들이 여자들을 성매매로 알선하는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성매매의 알선을 설명하고 있다.

- 6)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Aspects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Integr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a Gender Perspective*, ¶ 42, Comm'n on Human Rights, U.N. Doc. E/CN.4/2006/62 (Feb. 20, 2006) (by Sigma Huda) [이하 *U.N. 2006 Trafficking Report*].
- 7) Brottsbalken [BrB] [형법] 6:11 (Swed.).
- 8) 최대 형량을 1년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의회제정법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Lag om ändring i brottsbalken [An Act Amending the Criminal Code] (Svensk författningssamling [SFS] 2011:517) (passed 282 to 1, 66 absent)를 참조한다. 형량을 높이는 근거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Justitiekottets

전에는 성인에게서 성을 구매한 쪽이나 판매한 쪽 모두 처벌되지 않았으며 성매매를 알선⁹⁾한 경우만 처벌되었다. 또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betankande [Bet.] 2010/2011:JuU22 Skarpt straff for kop av sexuell tjänst [Raised Punishment for Purchase of Sexual Service] [parliamentary committee report] (Swed.) (May 12, 2011) [이하 Bet. 2010/2011:JuU22 Skarpt straff] (몇 가지 추가적인 의회 발언을 하고, 의회가 행정부안인 Proposition [Prop.] 2010/2011:77 Skarpt straff for kop av sexuell tjänst [government bill] (Swed.) [이하 Prop. 2010/2011:77 Skarpt straff]를 통과시킬 것을 제안함)를 참조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SOU] 2010:49 Forbud mot kop av sexuell tjänst: En utvärdering 1999-2008 [Prohibition Against Purchase of Sexual Service: An Evaluation 1999-2008] [government report series] (Swed.) [이하 SOU 2010:49 Forbud mot kop]을 참조한다.

- 9) 알선에 관한 법은 포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알선과 포주행위는 동의어는 아니다. 알선(procurer)은 법적으로 반드시 착취적인 것이 아닌 반면, 포주행위(pimping)는 보통 착취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례로, 일반적인 알선은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사람 또는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부적절하게 착취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BrB 6:12(1) (Swed.). 현재의 판례법에 따르면, 알선이 성매매의 일반적인 “조장”만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도 상처받지 않으며 공공질서만 저해된 것으로 간주된다. Christian Diesen, Malsagande? [Injured Party?], in Festskrift till Lars Heuman 119, 140 (Jan Kleineman, Peter Westberg & Stephan Carlsson eds., 2008)를 참조한다. 일반적인 알선 외에도, 중대한 알선(gross procurer)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8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알선이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범죄 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는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유발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행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BrB 6:12(3) (Swed.). 아래에 논의된 바와 같이, 재판부는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라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도 일반적인 알선으로 보는 등, 이 규정을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infra notes 44-45와 관련 내용을 참조한다.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는 BrB 4:1a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은 여러 차례 모든 유형의 알선을 인신매매로 간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들은 알선이 구태한 법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Motion till riksdagen 2008/2009:Ju379 Bekämpa den grova kriminaliteten och brottns orsaker [parliamentary motion] at 36 (Oct. 1, 2008) (Swed.) (Mona Sahlin et al.; Social Democrats) (“알선을 성적인 목적의 인신매매로 대체함으로써 알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알선죄의 근거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자발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자발성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누군가의 신체를 구매하는 모든 행위는 취약성에 대한 착취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를 참조한다. Motion till riksdagen 2010/2011:Ju293

물 상영금지법과 전염병, 외국인, 또는 미성년자나 중독자의 강제 돌봄에 관한 규정과 같이 연관성이 크지 않은 법들도 성매매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었다.¹⁰⁾

본 논문은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성구매금지법의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른 국가의 합리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점들을 제안할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논의에서 대립하는 주장들과 오해를 정리하고 이 법의 영향과 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I 부는 성매매로 유입되는 선결조건과 유입된 후의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Trygghet mot brott [parliamentary motion] at 6 (Oct. 25, 2010) (Swed.) (Morgan Johansson et al.; Social Democrats) (알선죄를 인신매매에 대한 죄로 대체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제안)과 cf. Motion 2008/2009:Ju4 med anledning av skr. 2007/2008:167 Handlingsplan mot prostitution och människohandel för sexuella ändamal [parliamentary motion] at 3 (Sept. 23, 2008) (Swed.) (Thomas Bodstrom et al.; Social Democrats)도 참조한다.

10) SOU 1995:15 Konshandeln: Betankande av 1993 ars Prostitutionsutredning [The Sex Trade: Final Report of the 1993 Prostitution Inquiry] [government report series] at 55-70 (Swed.) [이하 SOU 1995:15 Konshandeln]를 참조한다. 일례로, “중독으로 인해 약물 남용자가 미래에 인간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인 경우” 그 사람의 의지에 상관없이 성인 성매매 피해자에게 강제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ag om v rd av missbrukare i vissa fall [중독자 보호법] (Svensk forfattningssamling [SFS] 1988:870) (Swed.)을 이용할 수 있었다.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at 67 (입법과정 인용). 마찬가지로, 당시의 외국 인법인 Utll nningslag (Svensk forfattningssamling [SFS] 1989:529) (Swed.)은 국가가 (법률 용어로) “부정직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조항의 입법과정을 보면, 여기에는 “알선”과 “성매매”(즉, 성매매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었다.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at 67-68 (입법과정 인용). 이 1995년도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외국인에 관한 법은 성매매를 취약한 사람에 대한 착취나 불평등 행위가 아닌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직한 생활”이란 사실상 성매매되는 외국인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래에 논의한 것처럼 그러한 입장은 성적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는 공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성매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구매금지법 시행 전과 후에 스웨덴과 기타 국가들이 성매매에 대해 갖고 있던 시각을 바탕으로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의 입법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II부는 스웨덴의 주변국들 및 기타 유관 지역들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성구매금지법 시행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III부는 국제적인 논의에서 흔히 접하는 스웨덴의 법과 관련한 몇 가지 오해를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부는 법의 해석 및 적용을 중심으로 성구매금지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짚어볼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경험으로 볼 때 성적 인신매매를 효과적으로 척결하려면 성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국가는 인신,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고 인신매매를 유발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조치 또는 다른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한 팔레르모 의정서를 통해 이미 국제법 안에 내포되어 있다.¹¹⁾

I. 성매매와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 입법과정 및 비교 분석

성구매를 금지하는 법이 도입되기 전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기 위한 몇몇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¹²⁾ 이러한 시도 중 일부

11) Palermo Protocol, *supra* note 1, art. 9(5)을 참조한다. 또 U.N. High Comm'r for Human Rights,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4, U.N. Doc. E/2002/68/Add.1 (May 20, 2002) (“인신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들은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인 수요를 근절해야 한다”)와 U.N. 2006 Trafficking Report, *supra* note 6, ¶¶ 29-30, 50-78 (수요 차단의 중요성과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논의)를 참조한다.

12) e.g., Yvonne Svanstrom, *Criminalising the John: A Swedish Gender Model?*, in *The Politics of Prostitution* 225, 233 (Joyce Outshoorn ed., 2004) (1983년부터 1993년까지 의회 소수당이 당 또는 의원 차원에서 50여 개의 법안을 제

는 성평등 논리와 함께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착취라고 주장하였다.¹³⁾ 일례로 1981년 정부 보고서에 제출된 의견서들은 “수요가 없다면 (성매매가) 사라질 것”이며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양성간의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를 예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주장은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1990년 ‘스웨덴 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의 쉼터 연합(Swedish Organization for Women’s and Girls’ Shelters)’의 초대로 스웨덴을 방문한 미국 변호사 캐서린 A. 맥키논(Catharine A. MacKinnon)과 작가 안드레아 드워킨(Andrea Dworkin)의 연설 이후 발전적으로 개선되었다. 이 두 사람은 경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성의 균형을 가정한 상태에서는 성불평등과 성적 종속에 효과적으로 대항해 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¹⁵⁾ 맥키논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의 제정’과 ‘성매매 피해자(성적인 목적으로 구매되는 사람들, 주로 여성; the people, mainly women, being bought for sexual use)를 처벌하는 법을 철폐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종식시키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법에 의한 성평등의 실현이라 주장했다.¹⁶⁾ 쉼터 연합은 스웨덴 의원들과 연례 모임을 가져왔는데 1992년, 1994년, 1995년에는 성구매자의 처벌이 의제로 포함되었다.¹⁷⁾

출했으나 어느 것도 통과되지 않았다. 이 중 30여 개는 구매자 또는 구매자와 성매매한 사람 모두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를 참조한다.

13) *Id.* at 229-33.

14) Prop. 1981/1982:187 om vissa atgarder mot prostitutionen [government bill] at 44-45 (Swed.) (관련자들이 1981년 정부 보고서에 제출한 의견서들을 요약하고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구매자만을 처벌할 것을 주장한다).

15) 1990년에 있었던 맥키논의 연설문(번역본)을 보려면 Catharine A. MacKinnon, *Pornografi och jamstalldhet [Pornography and Gender Equality]*, in *Pornografi: Verklighet eller Fantasi?* 58, 69 (Amanda Golert & Pia Laskar trans., 1991)를 참조한다.

16) Catharine A. MacKinnon, *On Sex and Violence, in Are Women Human? And Other International Dialogues* 91, 101 (2006)와 MacKinnon, *Pornografi och jamstalldhet*, supra note 15, at 69을 참조한다.

17) Svanstrom, supra note 12, at 236.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수년 동안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8년 스웨덴 의회가 -세계적으로 흔히 그러한 것처럼 윤리와 품위,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가 아니라 성적 불평등의 맥락에서 성매매를 고려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¹⁸⁾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성매매와 여성폭력이 “상호 연관된…… 문제들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성평등 사회를 향한 열망에 반하는 것이다…… 양성 평등한 사회는 금전적 지불을 대가로 남성이 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¹⁹⁾

더 나아가 성매매 피해자들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고 방치되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박탈당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아동성학대와 성매매 간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²⁰⁾

여러 국가들에서 나온 설득력 있는 증거들은 상당수의 성매매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 성학대를 받았다는 스웨덴 입법부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²¹⁾ 그로 인해 다수가 기출을 하거나 노숙자가 되고²²⁾, 노숙 생활을

18) Bet. 1997/1998:JuU13 Kvinnofrid [parliamentary committee report] (Swed.) (통과됨) (의회가 Prop. 1997/1998:55 Kvinnofrid [Women's Sanctuary] [government bill], *infra* note 19를 통과시킬 것을 제안함).

19) Prop. 1997/1998:55 Kvinnofrid [Women's Sanctuary] [government bill] 22 (Swed.).

20) *Id.* at 102-03.

21) *e.g.*, Melissa Farley et al.,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ine Countries: An Update on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33, 43 (Melissa Farley ed., 2003) [이하 Farley et al., *Nine Countries*]. 이 자료는 <http://www.prostitutionresearch.com/pdf/Prostitutionin9Countries.pdf>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성매매 피해자 중 448명(59%)이 “어렸을 때 양육 제공자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명이 들 때까지 맞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Id.* 또, 응답자 중 508명(63%)이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받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하여 *Id.* Mimi H. Silbert & Ayala M. Pines, *Entrance into Prostitution*, 13 *Youth & Soc'y* 471, 479 (1982) (성매매 피해자 200명 중 60%가 3-16세 사이에 아동성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도 참조한다. 성매매 생존자들에게 대한 심층 연구에서는 학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e.g.*, Evelina Giobbe, *Confronting the Liberal Lies About Prostitution*, in *Living with Contradictions* 120, 123 (Alison M. Jaggar ed., 1994) (WISPER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진행한 생존

하면서 구매자들의 착취 대상이 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성매매를 시작하는 일도 흔하다. 9개국 연구에서 조사된 751명의 성매매 피해자들 중 47%가 18세 이전에 성매매에 유입되었다.²³⁾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성매매를 한 200명의 청소년 및 성인 여성 중 62%가 16세 이전에 그리고 “다수”가 “9세, 10세, 11세, 12세 이전에” 성매매를 시작했다.²⁴⁾ 이 연령은 개인이 자율성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힘을 갖고 있지 않은 나이이다. 또 어린 시절의 학대와 방임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성매매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취약성을 악용 당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사실은 샌프란시스

자 인터뷰에 따르면, 90%가 3-14세에 폭력을 경험했고, 74%는 성학대를 경험했다)와 Susan Kay Hunter, *Prostitution Is Cruelty and Abuse to Women and Children*, 1 Mich. J. Gender & L. 91, 98-99 (1993) (123명의 생존자 중 85%가 아동 근친성폭력, 90%가 신체적 학대, 98%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를 참조한다. 마찬가지로 1985년 캘리포니아주 레세다에서 진행된 메리 막달레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성매매여성의 80%가 어렸을 때 성적으로 학대받았다고 보고했으며, 시카고의 지네시스 하우스의 조사 결과에서는 그 비율이 94%에 이른다. Giobbe, *supra*, at 126 n.10 (The First National Workshop for Those Working with Female Prostitutes, Wayzata, Minnesota, Oct. 16-18, 1985 인용). Ines Vanwesenbeeck, *Prostitutes' Well-being and Risk* 21-24 (1994) (학대와 성매매에 관한 연구 문헌 요약)와 Chris Bagley & Loretta Young, *Juvenile Prostitution and Child Sexual Abuse: A Controlled Study*, 6 Canadian J. Community Mental Health 5 (1987) (연구에 참여한 성매매여성의 73%가 아동성학대 피해를 입었다)와 Jennifer James & Jane Meyerding, *Early Sexual Experience as a Factor in Prostitution*, 7 Archives Sexual Behavior 31, 35-37 (1977)를 참조한다.

22) Farley et al., *Nine Countries*, *supra* note 21, at 43 (9개국 761명의 성매매 피해자 중 75%가 현재 또는 과거에 노숙자 생활을 했다)과 Silbert & Pines, *supra* note 21, at 485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또는 과거에 성매매를 한 200명의 청소년 및 성인 여성 중 50% 이상이 성매매에 유입될 당시 가솔 상태였다. 현재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의 2/3 이상이 가솔을 했으며 성매매 청소년의 96%가 가솔을 했다.)를 참조한다.

23) Farley et al., *Nine Countries*, *supra* note 21, at 40. 연구에 포함된 국가와 관련 정보를 보려면 *infra* note 35를 참조한다.

24) Mimi H. Silbert & Ayala M. Pines, *Sexual Child Abuse as an Antecedent to Prostitution*, 5 Child Abuse & Neglect 407, 410 (1981). 인터뷰 당시 응답자의 70%가 21세 미만이었다. *Id.* at 408.

코의 청소년과 성인 여성 200명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 아동성학대를 경험한 응답자의 70%가 성학대 경험이 성매매 유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했으며, 개방형 응답에서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다.²⁶⁾ 성구매금지법의 입법과정 중 발간된 1995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는 고텐부르크 지역 보건전문가 및 피해자 지원단체 직원들의 의견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²⁷⁾

2004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성적으로 착취되는 아동의 수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²⁸⁾ 고텐부르크 지역 성매매 청소년들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서 성매매와 아동(성)학대, 방임, 노숙과의 강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²⁹⁾ 이러한 사실은 성매매 유입 지수로써 사회경

25) 아동 학대나 방임과 같은 가정 내 문제들과 더불어, 실버트와 파인스가 조사한 200명의 청소년 및 성인성매매 피해자들은 성매매에 유입될 당시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거의 전무했으며…… 자아 개념이 극도로 부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우울한 상태였다”. *Id.* at 486. 성매매의 “일반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환경에 처한 가출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나이가 어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포주로부터 착취를 당한다. *Id.* at 489. 이러한 상황은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들이 매우 흔하게 겪는 것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성매매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요인이다. *infra* notes 54-61와 관련 문서도 참조한다.

26) Silbert & Pines, *supra* note 24, at 410과 Ronald L. Simons & Les B. Whitbeck, *Sexual Abuse as Precursor to Prostitution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 and Adult Homeless Women*, 12 J. Fam. Issues 361, 361 (1991) (아이오와주 데모인에서 40명의 가출 청소년과 95명의 성인 여성 노숙자들을 조사한 결과, “아동성학대는…… [다른] 요소들의 유무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를 참조한다.

27)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note 10, 104 (Mimi H. Silbert & Ayala M. Pines, *Early Sexual Exploitation as an Influence in Prostitution*, 28 Social Work 285, 286 (1983) 인용)를 참조한다.

28) SOU 2004:71, Sexuell exploatering av barn i Sverige, del.1 [government report series] 15-16 (Swed.).

29) Jonna Abelsson & Anna Hulusj , I sexualitetens gr nstrakter: en studie av ungdomar i G teborg med omnejd som s ljer och byter sexuella tj nster [Around the Borders of Sexuality: A Study of Youth in Gothenburg and Surroundings Who Sell or Barter Sexual Services] 97-99 (2008).

제적 요소와 국적을 포함시킨 전국 청소년 설문조사 (성소수자 집단 포함)에서도 확인되었다.³⁰⁾ 스웨덴 범죄예방국(BRA)의 최근 조사에서 스웨덴과 핀란드, 에스토니아로 유입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우 빈곤과 차별이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³¹⁾ 많은 청소년 및 성인 여성이 동유럽의 집시 출신이거나 발틱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에 속하며 “대다수가 최하위계층 출신이다”.³²⁾ 상당수는 “미혼모”이고 무직이었다.³³⁾ 그러

30) Gisela Priebe & Carl-Goran Svedin, *Unga, sex och internet*, in *Se mig: Unga om sex och internet* [See Me: Youth on Sex and Internet] 74-75, 110, 112, 135 (Ungdomsstyrelsen [Nat'l Bd. for Youth Affairs] ed., 2009); Ungdomsstyrelsen, *Erfarenheter av sexuell exponering och sex mot ersättning* [Experience of Sexual Exposure and Sex for Remuneration], in *Se mig: Unga om sex och internet*, *supra*, at 156, 158, 161-69.

31) Brottsf rebyggande Rådet [BRA] [Swedish Nat'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The Organisation of Human Trafficking: A Study of Criminal Involvement in Sexual Exploitation in Sweden, Finland and Estonia* 36-43 (2008). 이 자료는 <http://www.bra.se/>에서 구할 수 있다.

32) *Id.* at 8. 이 연구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온 교육받은 여성들의 몇몇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기는 하지만 성매매를 시작한 이유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e.g. 학비를 벌기 위해서). *Id.* at 39. 이들이 아동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는지 등에 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 *Id.* at 36-43. 캐나다와 미국의 성매매 피해자 중 유색인 여성과 청소년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과 관련하여 2 Special Comm. 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in Canada 347 (1985) (“(미국의) 대평원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가 어린 선주민계 여성들이다……”)와 Melissa Farley, Jacqueline Lynne & Ann J. Cotton, *Prostitution in Vancouver: Violence and the Colonization of First Nations Women*, 42 *Transcultural Psychiatry* 242, 242 (2005) (100명의 성매매여성 중 52%가 밴쿠버 인구의 1.7-7%를 구성하는 선주민계 출신이다)와 Vednita Nelson, *Prostitution: Where Racism and Sexism Intersect*, 1 *Mich. J. Gender & L.* 81, 83 (1993) (“인종차별주의는 흑인 청소년과 성인 여성들을 성착취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고 그들을 성산업 안에 묶어둔다”)를 참조한다. 또, Aboriginal Women's Action Network, AWAN Address to the People's Tribunal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Mar. 18-20, 2011), <http://www.facebook.com/notes/aboriginal-womens-action-network/aboriginalwomens-action-network-address-to-the-peoples-tribunal-on-commercialsexual-exploitation/10150161363946691> (2011년 9월 21일 최종 방문) (밴쿠버 지역의 성매매 피해자 중 선주민 여성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를 참조한다.

33) BRÅ, *supra* note 31, at 56.

한 요소들은 (납치가 아니며)³⁴⁾ 그들이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동성학대, 노숙생활, 성차별, 경제적 차별, 인종 차별과 같은 폭력적인 환경이 사람들을 성매매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라우마 측면을 보자면 멜리사 팔리(Melissa Farley) 등이 9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840명의 성매매 피해자 중 68%가 베트남 전 참전 군인이나 쉼터를 찾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국가에 의한 고문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이 겪는 것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 수치는 성매매가 살내, 업소, 길거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했다.³⁵⁾ 스웨덴에서 성매매여성의 트라우마와 회복을 돕는 전문가들은 그들이 만난 모든 여성들에게서 “심각한 수면과 집중 장애, 반복적인 불안과 공포감, 심각한 우울증, 심각한 거식증적 반응, 심각한 해리와 결합된 자기파괴적인 행동, 충동 억제 어려움, 자살충동(잠재적인 상태 포함)과 같이 심각한 정신 장애의 형태로 발현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³⁶⁾ 더 나아가 실내에서 성매매를 한 46명의 여성들과 대조 집단을

34) 스웨덴 범죄예방국에 따르면 코소보와 알바니아로부터 납치 “신고”가 있었기는 하지만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스웨덴의 인신매매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만이 납치되었다고 응답했다. Id. at 50. 범죄예방국은 또 그러한 여성들은 탈출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범들이 납치에 의한 알선은 회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Id.

35) Farley et al., *Nine Countries*, supra note 21, at 44-48. 연구자들은 (1) 캐나다의 길거리에서 (2) 멕시코의 업소, 스트립클럽 길거리, 또는 마사지업소에서 (3) 터키의 성병 클리닉에서 (“도움/치료를 원치 않는” 응답자들) (4) 독일에서 신문광고, 약물 중독 여성을 위한 쉼터, 동료에 의한 연계를 통해 (5)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의 네 구역에서 무작위로 (6) 태국의 미용실 한 곳과 태국 북부 지역의 직업훈련/피해자 지원소 한 곳에서 (7)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의 업소, 길거리, 성매매여성 쉼터에서 (8)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주 평균 6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 한 곳에서 (9) 콜롬비아 보고타의 지원단체들에서 성매매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의 표본에서는 남성과 트랜스젠더 피해자도 포함되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d. at 37-39를 참조한다.

대상으로 2009년에 한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³⁷⁾에 따르면 아동학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매매는 PTSD와 강한 상관성이 있다. 이는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베드포드(Bedford) 사건 재판에서 나온 PTSD가 “성매매와 무관한 사건에 의해 유발되었을 수 있다”³⁸⁾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이다.

포주와 구매자들이 위협과 폭력을 일삼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성매매여성 200명 중 70%가 구매자로부터 평균 31.3회 강간을 당하거나 “성매매 계약(에서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강간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³⁹⁾,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참가한 55명의 성매매 피해여성 중 84%가 연 평균 103회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고, 78%는 연 평균 49회 강간을 당했으며, 53%는 주 1회 이상 성적으로 고문을 당했고, 그 상황이 음란물용으로 사진이 찍히거나 동영상으로 촬영되었

36) Luis Ramos-Ruggiero & Brita Hannestrand, Utlatande: Angående unga kvinnors psykiska tillstånd och reaktioner orsakad av prostitution och trafficking [Statement: Regarding Young Women's Mental Condition and Reactions Caused by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Kris- och Traumacentrum Sverige AB [Traumacenter Sweden], 2010) (2010년 10월 12일에 갱신).

37) Hyunjung Choi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DESNOS) Symptoms Following Prostitution and Childhood Abuse*, 15 *Violence Against Women* 933, 942 (2009).

38) *Bedford v. Canada*, 2010 ONSC 4264, [2010] O.J. No. 4057 ¶ 353 (Can. Ont. Super. Ct.) (QL).

39) Mimi H. Silbert & Ayala M. Pines, *Occupational Hazards of Street Prostitutes*, 8 *Crim. Just. & BEHAV.* 395, 397 (1981). 성매매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대부분 구매자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다. e.g., 2 *Special Comm. On Pornography and Prostitution*, *supra* note 32, at 388 (구매자들이 “주된 성폭력 가해자들”이었다)와 Jody Raphael & Deborah L. Shapiro, *Violence in Indoor and Outdoor Prostitution Venues*, 10 *Violence Against Women* 126, 135 (2004) (일리노이주 시카고 지역의 여성 222명들에 대한 조사에서 구매자들은 “모든 유형의 성매매에서 폭력의 가해자로 가장 빈번하게 지목”되었다)를 참조한다.

다.⁴⁰⁾ 실제로 9개국 연구에서 749명의 응답자 중 49%가 음란물에 이용되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은 음란물에 이용되었다고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PTSD 증상들”을 보였다.⁴¹⁾ 이러한 결과는 음란물에 이용되는 성매매가 특히 더 폭력적임을 암시한다. 스웨덴의 알선 및 인신매매 사건에서 목격자들은 일상적인 구타, 집단 강간, 고문이 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들이 학대받는 실상을 재확인시켜 주었다.⁴²⁾ 설령 그러한 폭력을 가하지 않는 구매자나 포주라 할지라도 (일차적으로 아동기에 학대를 당한 경우를 포함하여) 것처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기여한다. PTSD 진단은 재판과 초기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피해를 설명하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영국에서 있었던 일련의 인신매매 관련 재판처럼 원고의 변호인들은 성매매 피해자의 PTSD 진단서를 제출하고 그들의 고통과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피해를 진단해야 한다.⁴³⁾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면 구매자와 포주의 가해 사실을 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

불행히도 스웨덴에서는 포주를 상대로 한 다수의 재판이 실제 처벌로

40) Hunter, *supra* note 21, at 93-94.

41) Melissa Farley, *Renting an Organ for Ten Minutes, in Pornography: Driving the Demand in International Sex Trafficking* 144, 146, 422 n.298 (David E. Guinn & Julie DiCaro eds., 2007) (Pearson r=126, p=.001, n=749). 9개국 연구와 관련해서는 Farley et al., *Nine Countries*, *supra* note 21를 참조한다.

42) e.g., Helsingborgs tingsrätt (TR) [Helsingborg Dist. Ct.] 2005-09-25, B 1230-05 *passim* (Swed.), *sentences modified by Hovrätten over Skane och Blekinge* [Scania & Blekinge Ct. App.] 2006-01-11, B 2429-05 (Swed.)를 참조한다. 또 Stockholms tingsrätt (TR) [Stockholm Dist. Ct.] 2003-03-21, B 4205-02, at 13 et seq. (Swed.)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강간, 고문에 대한 나드야, 줄리아, 레나타, 올레시아의 증언), *sentence modified by Svea hovrätt* [Svea Ct. App.] 2003-06-23, B 2831-03, at 15 et seq. (Swed.) (증언들을 참조한다.

43) e.g., AT v. Dulghieru, [2009] EWHC (QB) 225, [et passim] (Eng.) (단판결 전문가인 모니카 톱슨 박사에 의한 보고서 인용)을 참조한다.

이러하거나 (사실상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 매매⁴⁴⁾, 강간, 폭행 또는 자유법 침해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이러한 범죄들은 그보다 형량이 낮은 ‘알선’ 조항에 따라 다루어지는데 이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⁵⁾ 반면 1995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폭력과 학대, 위협이 성매매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흔히 신체적 학대나 강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다. 일부 구매자들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대 여성을 다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대 여성의 인간적이고 위엄 있게 대우받을 권리마저도 자신이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한다.⁴⁶⁾

상업적 성착취로 인한 피해 및 트라우마에 관한 최근 연구들도 많은 구매자들이 일단 돈을 지불하면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⁴⁷⁾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

44) Fanny Holm, Brottsoffermyndigheten [Swedish Crime Victim Compensation and Support Authority], Utbetalning av brottsskadeersättning till offer från narkotikahandel [Payments of Criminal Damage Reimbursements to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14 (2010)을 참조한다. 이 자료는 <http://www.brottsoffermyndigheten.se/default.asp?id=3850>에서 구할 수 있다. 2002년 7월 이후의 모든 인신매매 사건들과, “기술된 범죄 행위의 내용이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를 구성하는 행위와 매우 유사하거나 완전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알선 또는 중대한 알선 행위”로 간주된 1999년 3월 이후에 나온 “70여 건의 판결”을 검토한다. 홀름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는 목격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 소송 과정에서 기소를 지원하고, 피해보상 청구를 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Id.* at 15.

45) 사례와 분석에 대해서는 Petitioners et al., Suggestions, *supra* note † at 22-29를 참조한다.

46)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note 10, at 142.

47) 런던에서 인터뷰한 103명의 남성 구매자 중 27%는 일단 돈을 지불하면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행위든 할 권한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47%는 “성매매에서 여성들이 항상 어떤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Melissa Farley, Julie Bindel, & Jacqueline M. Golding, Men

로 성매매되는 사람과 구매자 간 엄청난 힘의 불균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성매매로 유입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95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하나의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음란물을 판매하는 한 “클럽”이 지하실에서 자체적으로 비디오를 제작했는데 남자 손님들은 10달러 정도만 내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⁴⁸⁾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24세의 한 여성이 두 번의 “훈련” 세션에 투입되었는데 매번 상대 남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 여성은 그 대가로 100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을 받기로 했다. 처음 두 세션을 찍은 후에 이 여성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10여 명의 남자들과 질성교 및 구강성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⁴⁹⁾ 1995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이와 유사한 여러 건의 신고와 증언을 조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여성은 “그때의 일로 심하게 아팠고” 결국 약속 받은 돈도 모두 받지 못했다고 한다.⁵⁰⁾

마찬가지로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되는 여성과 구매한 남성 간 힘의 불균형과 특히 구매자가 위협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Who Buy Sex 4, 13 (2009), [이하 Farley et al., Men Who Buy Sex]. 이 자료는 http://www.eaves4women.co.uk/Documents/Recent_Reports/MenWhoBuySex.pdf에서 구할 수 있다. 또 Rachel Durchslag & Samir Goswami, Deconstructing the Demand for Prostitution 7, 18 (2008)를 참조한다. 이 자료는 <http://www.caase.org/pdf/resources/17-deconstructing-the-demand-for-prostitution.pdf> (시카고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참여한 113명의 성구매자 중 43%가 돈을 받으면 상대 여성은 “내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에서 구할 수 있다. Melissa Farley et al., *Attitudes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Men Who Buy Sex in Scotland*, Psychol. Trauma: Theory Res. Prac. & Pol’y 3, 7(2011년 3월 28일 온라인 출판)은 <http://www.prostitutionresearch.com/pdfs/Farley>에서 구할 수 있다. Macleod et al 2011 Men Who Buy Sex In Scotland.pdf (110명의 스코틀랜드 성구매자 중 22%가 돈을 지불한 고객은 “상대 여성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와 Farley, supra note 41, at 149-51 (인터뷰 인용)를 참조한다.

48)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note 10, at 96.

49) *Id.* at 96-97.

50) *Id.* at 97.

없다.⁵¹⁾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성매매의 합법화로 인해 경쟁이 가열되면서 여성들에게 위협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례와 성매매여성이 원치 않는 구매자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²⁾ (여러 카운티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3년간 인터뷰를 진행한 멜리사 팔리는 합법 업소들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들을 해고했으며 그러한 업소들은 여성들의 목숨이나 건강에는 신경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다.⁵³⁾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성매매는 여성이나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불평등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법률과 일부 학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재판부는 이러한 불평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는다. 그동안 알선과 인신매매를 처벌하는데 사용되었던 알선 조항을 무효화시킨 캐나다 베드포드 사건의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⁵⁴⁾ 결과적으로 제3자의 개입 즉 포주의 알선과 인신매매 행위는 착취가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⁵⁵⁾

포주에게 착취당하지 않는 성매매여성들도 경제적인 곤경때문에 스스로를 착취 상태로 내모는 경우가 흔하다. 1995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의 인터뷰에 참여한 한 여성은 자신이 25년간 성매매를 해왔고 신중하게 고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매매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51) *e.g.*, Mary Lucille Sullivan, *Making Sex Work* 106, 264-65 (2007)를 참조한다.

52) Mary Lucille Sullivan,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An Update on Legalisation of Prostitution in Australia* 7 (2005)를 참조한다. 이 자료는 http://action.web.ca/home/catw/attach/Sullivan_proof_01.pdf에서 구할 수 있다.

53) Melissa Farley, *Legal Brothel Prostitution in Nevada*, i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supra* note 5, at 18, 21, 39-45를 참조한다.

54) *Bedford v. Canada*, 2010 ONSC 4264, [2010] O.J. No. 4057 ¶¶ 259-72, 379 (Can. Ont. Super. Ct.) (QL).

55) *See, e.g., id.* ¶¶ 429-31.

문제는 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체류 허가증도 없고 그동안 해온 일을 설명할 수도 없다. 미래가 불안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 일에 영영 붙잡힐 것이 두렵다. 50~60살이 되어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제는 길 거리를 다니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이 든다. 여기 서 있는 것도 쉽지 않다.⁵⁶⁾

그래서 구매자는 성행위 대상을 살 수 있고 포주는 그들을 팔 수 있는데 (9개국 78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9%가 보고한 것처럼⁵⁷⁾) 그들이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1926년 노예제협약이 규정한 “소유권과 관련된 제반 권력의…… 행사를 받는 지위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⁸⁾ 성매매되는 모든 여성들은 팔레르모 의정서에 대한 해석문에서 “폭력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로 정의되는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⁵⁹⁾ 성매매여성들을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해 1998년 스웨덴 입법부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착취 당하는 약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린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상황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⁰⁾ 성매매의 현실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의 요소들을 충족시킨다”

56)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note 10, at 75.

57) Farley et al., *Nine Countries*, *supra* note 21, at 51, 56.

58) Convention to Suppress the Slave Trade and Slavery, art. 1(1), Sept. 25, 1926, 46 Stat. 2183, 60 L.N.T.S. 253 (1927년 3월 9일 발효).

59) Rep. of the Ad Hoc Comm. on the Elaboration of a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n the Work of Its First to Eleventh Sessions, Addendum, Interpretative Notes for the Official Records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Negoti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s Thereto, ¶ 63, U.N. Doc. A/55/383/Add.1 (Nov. 3, 2000) [이하 *Travaux Préparatoires* to the Palermo Protocol].

60) Prop. 1997/1998:55 Kvinnofrid [government bill] 104 (Swed.)와 Bet. 1997/1998:JuU13 Kvinnofrid [parliamentary committee report] (Swed.) (양측을 모두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 제안서 기각)를 참조한다.

리는⁶¹⁾ 성매매와 인신매매 간 명료한 연계고리를 인식한다면 인신매매가 종식되기 위해 성매매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II. 성구매금지법의 영향

1995년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내 약 2,500-3,000명의 성매매여성들이 있으며 그 중 650명은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추정하였다.⁶²⁾ 이와 대조적으로 2008년 발표된 한 연구는 약 300명의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며 300명의 여성과 50명의 남성이 인터넷 상에서 광고되는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⁶³⁾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덴마크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정법을 통해 그 수를 추정하였는데, 덴마크의 전체 인구가 560만 명⁶⁴⁾이고 스웨덴이 940만 명⁶⁵⁾인 것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의 성매매 종사 인구는 덴마크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추정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최소 5,567명이 공식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415명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⁶⁶⁾ 덴마크의 한 비정부

61) U.N. 2006 Trafficking Report, *supra* note 6, ¶ 42.

62) SOU 1995:15 Konshandeln, *supra* note 10, at 10, 99.

63) Charlotta Holmstrom, *Prostitution och människohandel for sexuella andamal i Sverige: Omfattning, forekomst och kunskapsproductio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in Sweden: Extent, Occurrence, and Knowledge Production]*, in *Prostitution i Norden: Forskningsrapport [Prostitution in the Nordic: Research Report]* 303, 314 (Charlotta Holmstrom & May-Len Skilbrei eds., 2008).

64) Statistics Denmark, Quarterly Population, 2011Q2 (Feb. 9, 2011), http://www.dst.dk/HomeUK/Statistics/Key_indicators/Population/pop_quarterly.aspx.

65) Press Release, Statistiska Centralbyran [SCB] [Statistics Sweden], Trend Break for Increased Births (Aug. 15, 2011), http://www.scb.se/Pages/PressRelease___318978.aspx.

66) Charlotta Holmstrom & May-Len Skilbrei, *Nordiska prostitutionsmarknader*

기구는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의 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길거리 성매매를 제외하더라도 스웨덴과 덴마크 간 성매매 종사자의 수는 엄청나다.⁶⁷⁾ 비슷한 방법으로 추정된 노르웨이(인구 490만 명⁶⁸⁾ 성매매 종사자의 수는 2,654명이며 성구매가 합법이었던 2007년 당시 1,157명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⁶⁹⁾ 이는 스웨덴보다 국민 1인당 8배를 훨씬 넘는 숫자이다. 이러한 숫자들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가 결코 적지 않다.

스톡홀름, 고텐베르그, 말모의 비정부기구와 정부기관들에 따르면 성구매금지법 이행 직후 “실질적으로 길거리 성매매가 사라졌고” 이후 다시 출현했지만 “그 수가 줄었다”.⁷⁰⁾ 스톡홀름에서는 경찰 통계에 따른 구매자 수가 2001년 80% 가까이 감소했다.⁷¹⁾ 2007년 보고에 따르면 성구매금지

i forandring [Nordic Markets for Prostitution Under Change], in Prostitution i Norden, supra note 63, at 9, 14.

67) 덴마크의 한 성노동자단체는 코펜하겐의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의 수가 1000명 가량 과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잘못을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레넨이라는 비정부기구의 탓으로 돌렸다.

Pressemeddelelse [Press Release], Sexarbejdernes Interesse Organisation (SIO), Svensk rapport bygger pa forkerte tal for Danmark; Nu ma Reden sigte sandheden (July 4, 2010), <http://s-io.dk/wordpress/?p=58>를 참조한다. 그러나 실내 성매매, 특히 그 자체만으로 3,27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 “마사지 업소 성매매”에 대한 연구자들의 추정치(Holmstrom & Skilbrei, supra note 66, at 14 참조)는 주로 광고에 기반한 것이며, 레넨 측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Jeanett Bjønness, *Holdninger til prostitution i Danmark*, in *Prostitution i Norden*, supra note 63, at 101, 107를 참조한다.

68) *Focus on Population*, Statistics Norway, http://www.ssb.no/english/subjects/02/befolkning_en/ (2011년 9월 21일 최종 방문).

69) Marianne Tveit & May-Len Skilbrei, *Kunnskap om prostitusjon og menneskehandel i Norge [Knowledge of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in Norway]*, in *Prostitution i Norden*, supra note 63, at 213, 220-21 (노르웨이의 길거리 성매매를 제외한 성매매 종사자의 경우 그 수는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나 인터넷 또는 신문에서 광고된 경우를 바탕으로 했다)와 Holmstrom & Skilbrei, supra note 66, at 13를 참조한다.

70) Socialstyrelsen [SoS] [Nat'l Bd. of Health and Welfare], *Prostitution in Sweden 2007*, at 33 (2008). 이 자료는 http://www.socialstyrelsen.se/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8806/2008-126-65_200812665.pdf에서 구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스톡홀름의 사회복지사들은 하룻밤에 최대 60명의 성매매여성들을 만났으나 법이 시행된 이후 그 수가 15-20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⁷²⁾ 말모의 사회복지사들은 법 시행 이전 연간 20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났으나 법 시행 1년 후에는 그 수가 130명으로 줄었고 2006년에는 66명에 불과했다.⁷³⁾ 고텐베르그에서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길거리 성매매 종사자 수가 연간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⁷⁴⁾

(아래에 더 논의되겠지만) 성구매금지법 시행 이후 길거리 성매매가 인터넷이나 실내로 “숨어 들어갔다”는 - 때로는 단순 소문에 불과한 -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으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보나 증거, 연구 결과는 전혀 없다.⁷⁵⁾ 스웨덴 범죄조사국은 전화도청 결과 국제적인 인신매매범들과 포주들이 스웨덴의 성매매 시장에 실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⁷⁶⁾ 결과적으로 스웨덴에서 불법으로 숨어서 운영되는 업소들은 아주 소규모이며 경찰 단속시 한 번에 발견되는 성매매여성들은 서너 명에 불과하다.⁷⁷⁾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 수가 보통 20-60명에 이른다.⁷⁸⁾ 국제적인 인신매매범들과 포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하지 않는다.⁷⁹⁾ 그들이 “여러 장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전화도청과 성매매

71) Caspar Opitz, *Gatans sexhandel minskar [The Street's Sex Trade Decreases]*, *Dagens Nyheter* [Daily News], June 29, 2001, at 7.

72) SoS, *supra* note 70, at 33.

73) *Id.*

74) *Id.* at 34.

75)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118, 152.

76) Rikspolisstyrelsen [Nat'l Criminal Investigation Dep't, Swed.] [NCID], *L sgesrapport 10: M nniskohandel f r sexuella och andra ndam l 2007-2008* [Situation Report no. 10: Trafficking for Sexual and Other Purposes 2007-2008] 10 (2009); *cf.* NCID, *Trafficking in Women: Situation Report no. 5*, at 34 (2003) [이하 NCID Report no. 5] (1999년 이후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함).

77) *Id.*

78)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122.

여성들의 증언, 말트헤 연안 국가들의 경찰 보고서 그리고 거의 모든 알선 또는 인신매매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확인되었다.⁸⁰⁾

스웨덴은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를 바꿔놓은 것으로 보인다. 1996년에는 스웨덴 여성의 44%와 남성의 20%만이 성구매자의 처벌을 지지했다.⁸¹⁾ 그러나 1999년에는 그 수치가 각각 81%와 70%로 증가했고 2002년에는 83%와 69%, 2008년에는 79%와 60%에 달했다.⁸²⁾ 또 전국 조사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남성 수가 (법 시행 이전인) 1996년 12.7%⁽⁸³⁾에서 2008년 7.6%⁽⁸⁴⁾로 감소했다. 익명으로 실시되는 자기보고식 범죄 통계 조사에 사용되는 방법은 다수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⁸⁵⁾ 2008년 성구매와 관련하여 이 법이 끼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성구매 횟수를 높이지 않았

79) NCID, Report no. 5, *supra* note 76, at 34.

80) *Id.* 여러 장소를 이동하는 관행은 스웨덴 법원의 개별 사건 의견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81) Sven-Axel Mansson, *Commercial Sexuality, in Sex in Sweden: On the Swedish Sexual Life 1996*, at 235, 249 (Nat'l Inst. of Pub. Health & Bo Lewin eds., 2000).

82) Jari Kuosmanen, *Tio ar med lagen [Ten Years with the Law]*, in *Prostitution i Norden*, *supra* note 63, at 357, 361-62. 총 2,500명에게 발송된 2008년도 설문조사는 남성의 43%, 여성의 57%만이 응답할 정도로 응답률이 낮았지만($n = 1134$) 조사 결과는 1999년과 2002년에 실시된 다른 설문조사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인 1996년에 실시된 조사와 일관성이 있었다. *Id.* at 359-60.

83) Mansson, *supra* note 81, at 238.

84) Kuosmanen, *supra* note 82, at 368.

85) e.g., David Huizinga & Delbert S. Elliot, *Reassess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Report Delinquency Measures*, 2 J. Quantitative Criminology 293, 294, 324 (1986) (“이러한 척도들은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수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는다” *id.* at 294 (중복 인용 제외). 또 “자기보고식 척도는 범죄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 중 가장 신뢰할만한 것으로 서술적 연구와 인과관계 연구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이다”, *id.* at 324)와 Josine Junger-Tas & Ineke Haen Marshall, *The Self-Report Methodology in Crime Research*, 25 Crime & Just. 291, 354 (1999)와 Terence P. Thornberry & Marvin D. Krohn, *The Self-Report Method for Measuring Delinquency and Crime*, 4 Measurement & Analysis Crime & Just. 33, 72 (2000)를 참조한다.

고 스웨덴 밖에서의 성구매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의 성구매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⁸⁶⁾

기소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법 시행 이후 스웨덴의 변화된 상황은 특히 인접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준다. 기소 건수는 1999년 10건에서 2000년 29건, 2001년 38건, 2002년 37건, 2003년 72건, 2004년 48건, 2005년 105건, 2005년 114건, 2007년 85건, 2008년 69건, 2009년 107건, 2010년 326건이었다.⁸⁷⁾ 2010년에는 경찰, 세관당국, 검찰에 신고된 범죄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총 1,251건의 성구매 건이 신고되었다. 이전까지 신고된 최대 건수는 2005년 460건이었다.⁸⁸⁾ 2010년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신고가 231건이었다.⁸⁹⁾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이다. 2010년에 이처럼 신고 건수가 상승한 이유는 정부 행동

86) Kuosmanen, *supra* note 82, at 372-73.

87) BRA [Swedish Nat'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Statistics, National Criminal Statistics Database, Sweden, [이하 National Criminal Statistics Database]. 이 자료는 <http://www.bra.se/Statistik>에서 “Personer lagforda (domda m m) for brott”로 간 다음, “Samtliga lagforingsbeslut, Arsvi: Lagforingsbeslut efter huvudbrott och huvudpafoljd”에서 2004년 이전과 “Samtliga lagforda brott”에서 2004년 이후를 선택한다)에서 구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재판부의 선고와 지방법원의 선고를 포함하지만 항소와 더 높은 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동시 기소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i.e., “primary crime” (huvudbrott)). SCB [Statistics Sweden], Beskrivning av statistiken [Description of the Statistics], [http://www.scb.se/Pages/ProductDocumentations ___19175.aspx](http://www.scb.se/Pages/ProductDocumentations___19175.aspx) (연도를 선택한 다음, “B. Kvalitetsdeklaration” 이하 참조)를 참조한다. 또, 2005년 4월 1일 전에는 성구매금지법이 형법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으로 존재했다는 점을 참조한다. Lag om förbud mot köp av sexuella tjänster (Svensk författningssamling [SFS] 1998:408) (Swed.). 이 자료는 <http://62.95.69.3/SFSdoc/98/980408.PDF>, *superseded by statute*, BrB 6:11에서 구할 수 있다. 둘 사이에는 일부 표현 상의 차이가 있다.

88) National Criminal Statistics Database, *supra* note 87. 신고가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89) BrB 6:9. For number statistics, see the National Criminal Statistics Database, *supra* note 87를 참조한다.

계획(Government's Action Plan)이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할당한 특별 기금과 스웨덴 북부의 잠트란드에서 붙잡힌 대규모의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업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⁹⁰⁾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이 갖는 영향은 주목할만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대상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⁹¹⁾ 실제로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와 성적 폭력을 정상화하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²⁾ 성매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국적 인신매매가 증가하기도 한다.⁹³⁾ 그러나 2008년 스웨덴은 노르웨이,

90) Anna Helmerson, *Anmalda sexkop har fordubblats [Reported Sex Purchases Doubled]*, Dagens Nyheter [Daily News], July 27, 2010, <http://www.dn.se/nyheter/sverige/anmalda-sexkop-har-fordubblats>를 참조한다.

91) Sullivan, *supra* note 51; Sullivan, *supra* note 52; Farley, *supra* note 53를 참조한다.

92) e.g., Melissa Farley, Mary Stewart & Kyle Smith,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and Sexually Coercive Behaviors of Young Men at the University of Nevada at Reno*, i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supra* note 5, at 173-80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오레곤, 텍사스주의 남자 대학생들(n=783)과 네바다주의 남자 대학생들(n=131)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네바다주의 남자 대학생들이 성착취, 성매매, 강간 신화와 같은 성폭력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를 참조한다. Cf. Melissa Farley, *Adverse Effects of a Prostitution Culture on Nonprostituting Women*, i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supra* note 5, at 181-86.

93) 호주 빅토리아주와 미국 네바다주에 대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일례로 돈세탁, 수요의 변화, 사법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의 이유로 포주들이 성매매 청소년과 성인 여성들을 정기적으로 합법 지역과 불법 지역 사이에서 이동시킨다. Sullivan, *supra* note 51, at 202-03, 206, 225-26, 243와 Melissa Farley, *Trafficking for Legal and Illegal Prostitution in Nevada*, i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Nevada*, *supra* note 5, at 103-05, 118-21와 Janice G. Raymond, *Ten Reasons for Not Legalizing Prostitution and a Legal Response to the Demand for Prostitution*, in *Prostitution, Trafficking, and Traumatic Stress*, *supra* note 21, at 315, 320를 참조한다. 주 경계를 이동하는 인신매매의 경우 네바다주의 합법 업소에서 일하는 45명의 여성들 중 32명이 다른 주에서 그곳으로 이동해왔고, 58%는 다른 주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었다. Farley, *supra*, at 104. 1994년에 네바다주 성매매업주연합 대표는 스토리, 나이, 리온 카운티의 합법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의 90%가 네바다 거주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다. Lenore

덴마크, 핀란드처럼 대규모의 외국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성매매 하는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다.⁹⁴⁾ 이는 네덜란드와 비교했을 때도 괄목할만한 사실로 1999년 네덜란드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다.⁹⁵⁾ 1994년과 1995년에 암스테르담 경찰은 “홍등가인 디 발렌 지역 유리창 뒤에 있는 전체 성매매여성의 75%가 외국인이며 전체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80%가 불법체류자”라고 추정하였다.⁹⁶⁾ 2008년 뉴욕타임즈는 2000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도했다.⁹⁷⁾ 이와 반대로 노르웨이⁹⁸⁾, 아이슬란드⁹⁹⁾, 한국¹⁰⁰⁾, 영국¹⁰¹⁾ 등 다른 국가들은 스웨덴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Kuo, Prostitution Policy 80 (2005)를 참조한다.

94) Holmstrom & Skilbrei, *supra* note 66, at 16-17.

95)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163.

96) Gerben J.N. Bruinsma & Guus Meershoek, *Organized Crime and Trafficking in Women from Eastern Europe in the Netherlands*, in *Illegal Immigration and Commercial Sex: The New Slave Trade* 105, 107 (Phil Williams ed., 1999).

97) Marlise Simons, *Amsterdam Tries Upscale Fix for Red-Light District Crime*, N.Y. Times, Feb. 24, 2008, at A10 (암스테르담에서 일하는 8,000-11,000명에 이르는 성매매여성들 중 75% 이상이 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왔다는 보고서와 합법화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보호나 성매매업의 투명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는 암스테르담 시장의 발언을 인용한다)를 참조한다.

98) Almindelig borgerlig Straffelov (Straffeloven) [Criminal Code] Ch. 19, § 202a (Nor.). 이 자료는 <http://www.lovdato.no/cgi-wift/ldles?doc=/all/nl-19020522-010.html>에서 구할 수 있다.

99) Comm.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the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State Party on 8 July 2008* (Iceland), U.N. Doc. CEDAW/C/ICE/CO/6/Add.1 (May 27, 2011)를 참조한다.

100) Statutes of S. Korea, Act No. 7196: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Mar. 22, 2004); Statutes of S. Korea, Act No. 7212: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Mar. 22, 2004).

101) Policing and Crime Act (2009) Chap. 26 (U.K.), *available a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9/26>.

상정했다.¹⁰²⁾

III. 성구매금지법에 대한 오해

국제적으로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회자되었는데 놀랍게도 성매매에 관한 글을 써온 페트라 오스터그렌(Petra Ostergren)이 오래 전에 쓴 미발행 영어 논문이 그 소문의 발상지로 지목된다.¹⁰³⁾ 일례로 2009년 SWEAT(Sex Worker Education and Advocacy Taskforce)는 오스터그렌의 주장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법개혁위원회(SALRC)에 전달하면서 스웨덴에서 발간된 다른 연구는 어떠한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¹⁰⁴⁾ 오스터그렌은 “모든 당국이 전체적으로 성매매가 낮아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면서 “아마도 숨은 성매매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⁵⁾ 그러나 오스터그렌이 인용한 보고서들은 모두 법 시행 후 2년도 되기 전에 나온 것이다. 법 시행 전과 후의 데이터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데이터를 보면 오스터그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극명히 드러난다.¹⁰⁶⁾ 더불어 오스터그렌은 법 시행 이후 길거리 성매매여성들이 구매자들의 위험한 섹스에 대한 요구와 증가된 폭력성으로 인해

102) *Anti-Prostitution Laws in for Drastic Revamp*, Times of India, Oct. 1, 2005를 참조한다. 이 자료는 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05-10-01/delhi/27864103_1_prostitution-laws-immoral-trafficking-prevention-act에서 구할 수 있다.

103) Petra Ostergren, *Sexworkers Critique of Swedish Prostitution Policy*, petraostergren.com, http://www.petraostergren.com/pages.aspx?r_id=40716 (last visited Sept. 21, 2011).

104) Eric Harper, Dianne Massawe & Vivienne Mentor-Lalu, Sex Worker Education and Advocacy Taskforce [SWEAT], Submission to the South African Law Reform Commission: Project 107 Sexual Offences Adult Prostitution 41-42 (2009)를 참조한다.

105) Ostergren, *supra* note 103.

106) *supra* notes 62-97 and accompanying text 를 참조한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⁰⁷⁾ 그러나 오스터그렌이 인용한 스웨덴 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2000년도 보고서에 대해 이 위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보고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¹⁰⁸⁾ 이 위원회는 이미 2003년에 그러한 주장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폭력이 증가했다는 의견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경찰은 폭력이 증가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여러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은 시행되는 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매매와 폭력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¹⁰⁹⁾

2007년도 보고서에서 이 위원회는 성매매여성들 간 의견이 다양하며 어떤 여성들은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인터넷보다는 여전히 길거리를 선호한다고 기술했다. 한 여성은 “온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고 다른 여성은 원치 않는 구매자를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¹¹⁰⁾ 구매자를 처벌하면 구매자들이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스터그렌의 주장이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¹¹¹⁾ 고텐베르그 경찰은 “고객들로부터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익명의 제보들”을 받았다고 보고한다.¹¹²⁾

스웨덴 밖에서는 오스터그렌이 인터뷰한 것으로 자주 인용하는 20명의

107) Ostergren, *supra* note 103.

108) SoS [Nat'l Bd. of Health and Welfare], *Kännedom om prostitution 1998-1999* (2000), <http://www.socialstyrelsen.se/publikationer2000/2000-3-5>.

109) SoS [Nat'l Bd. of Health and Welfare], *Prostitution in Sweden 2003*, at 34 (2004) (emphasis added). 이 자료는 http://www.socialstyrelsen.se/Lists/Artikelkatalog/Attachments/10488/2004-131-28_200413128.pdf에서 구할 수 있다.

110) SoS, *supra* note 70, at 28.

111) Ostergren, *supra* note 103.

112) SoS, *supra* note 70, at 48.

성매매여성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그 선정방법에 대한 단서는 2006년 그녀가 스웨덴어로 출판한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오스터그렌은 “성매매의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섹스의 판매자들”과 연락하거나 인터뷰를 시도하지 않았으며¹¹³⁾, 스웨덴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만이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의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여성들을 찾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¹¹⁴⁾ 마찬가지로 그녀의 2003년도 석사 논문에서도 “대부분……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섹스를 판매하는” 15명의 여성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한다.¹¹⁵⁾ 따라서 그녀가 영어로 쓴 글에서 “1996년 이후 약 20명의 성 노동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나눈 이야기들¹¹⁶⁾”을 언급할 때는 성매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오스터그렌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제외시켰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제인 스쿨라(Jane Scoular)와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선택 편향에 주목하지 않은 채 1998년 법 시행 이후 “여성들과 인터뷰를 통해 길거리 성매매의 위험성과 스트레스가 급증했다”고 주장한 오스터그렌의 연구를 인용했다.¹¹⁷⁾ 2009년에 로날드 와이저(Ronald Weitzer)는 스웨덴 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쿨라의 논문을 인용했다.¹¹⁸⁾ 자

113) Petra Ostergren, *Porn, horor och feminister* [Porn, Whores, and Feminists] 168 (2006).

114) *Id.* at 169.

115) Petra Ostergren, *Synden Ideologiserad* 17 (Spring 2003) (스톡홀름대학교 미발간 석사논문). 이 논문은 <http://www.petraostergren.com/upl/files/8914.pdf>에서 구할 수 있다.

116) Ostergren, *supra* note 103.

117) Jane Scoular, *What's Law Got to Do with It? How and Why Law Matters in the Regulation of Sex Work*, 37 *J.L. & Soc'y* 12, 20 (2010)와 Jane Scoular, *Criminalizing 'Punters': Evaluating the Swedish Position on Prostitution*, 26 *J. Soc. Welfare & Fam. L.* 195, 200 (2004) [이하 Scoular, *Evaluating the Swedish Position*] (1998년 스웨덴 법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스터그렌의 인터뷰 인용)를 참조한다.

넷 할리(Janet Halley) 등도 마찬가지로 이 법으로 인해 성매매가 음지로 숨어들었으며 여성들이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스티그렌의 미발간 논문을 인용했다.¹¹⁹⁾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최신 조사 보고서는 위 주장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²⁰⁾

물론 이 법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IV. 효과적인 법 집행의 장애물

동의 여부는 무관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팔레르모 의정서와 달리¹²¹⁾ 2001년 스웨덴 대법원은 겨우 네 문장으로 된 피상적인 의견서를 통해 성구매금지법 하에서 성매매된 사람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해석한 하급법원의 판결들을 수용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가 일차적으로 피해여성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공공질서에 반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드러냈다.¹²²⁾ 지방법원은 공공질서에 반한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범죄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였다.¹²³⁾ 이

118) Ronald Weitzer, *Legalizing Prostitution: Morality Politics in Western Australia*, 49 *Brit. J. Criminology* 88, 100 (2009) (citing Scoular, *Evaluating the Swedish Position*, *supra* note 117).

119) Janet Halley, Prabha Kotiswaran, Hila Shamir & Chantal Thomas, *From the International to the Local in Feminist Legal Responses to Rape, Prostitution/Sex Work, Sex Trafficking*, 29 *Harv. J.L. & Gender* 335, 396 nn.206-07 (2006).

120)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127-30.

121) Palermo Protocol, *supra* note 1, art. 3(b).

122) Nytt Juridiskt Arkiv [NJA] [Scania & Blekinge Ct. App.] 2001-07-09 pp. 527, 532, *aff 'd id.* p. 533 [Supreme Court] (Swed.).

123) NJA [Malmo Dist. Ct.] 2001-07-09 p. 529 (Swed.).

경우 항소법원에서 벌금이 약간 더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겨우 벌금형만을 받았을 뿐이다.¹²⁴⁾ 여러 경찰과 검사들은 법 집행 순위에서 성구매금지법이 하위에 놓이는데 자원 배당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형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왔다.¹²⁵⁾ 2007년 12월부터 일부 재판부가 그간의 방향을 바꾸어 성구매 당시의 상황이 위협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자에 대해 조건부 형량과 같이 더 높은 수위의 형벌을 내렸으나 여전히 성매매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¹²⁶⁾

그러나 입법과정과 당대 연구에서 밝혀진 성매매 상황 중 어느 것도 - 재판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한 - “동의”에 필요한 자유의 조건에 대해 기술하지 않고 있다. 성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을 성매매로 유입시킨 열악한 조건이나 폭력으로 착취하는 상황 하에서 성매매되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다.¹²⁷⁾ 위에서 기술한 입법과정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볼 때

124) NJA [Scania & Blekinge Ct. App.] 2001-07-09 p. 532, *aff'd id.* p. 533 [Supreme Court] (Swed.).

125) *e.g.*,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217 (경찰은 이 법이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놓인다면 “몇 배나 더 많은”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검사들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로 업무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와 Ann Johansson & Per Nygren, *Polisen tar tuffare tag mot sexkoparna runt Rosenlund* [Police Being Tougher Against Sex Purchasers Around Rosenlund], Göteborgs-Posten [Gothenburg Post], Apr. 11, 2010, sec. 1, at 9 (일반적으로 경찰은 총 수형기간과 기소 건수로 성공율을 규정한다)를 참조한다.

126) *e.g.*, Hovrätten för västra Sverige [Ct. App. for Western Sweden] 2007-12-18, B 3065-07, at 9-10, Rattsfall från hovrätterna [RH] [Ct. of App. Case Reporter] 2008:59 (Swed.) (성행위 후 한 피고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시켰는데 성매매된 여성은 “두 남자와의 관계에서 매우 종속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남자의 성행위 요청을 거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 여성에게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음이 틀림없으며 피고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착취”했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해 조건부 형량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은 제외되었다.)를 참조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성매매여성의 진정한 동의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성매매에서 흔한 일이다.

성구매는 일차적으로 구매된 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 범죄로 “사회실증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다.¹²⁸⁾

성매매의 상대가 성행위를 즐기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폭력과 심각한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고, 인신매매되거나 포주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껄껄치 않고 성을 구매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¹²⁹⁾ 1998년 스웨덴 의회가 통

127) 성매매에서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성매매로 유입되는 선결조건으로 입증된 것과 같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이 착취에 기여한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supra* notes 19-38, 56-60와 관련 문서를 참조한다. 이는 그릇된 근거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며 성매매여성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법(Tort Liability Act)에 따른 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성매매여성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가 감소한다. Skadeståndslag [SkL] [Tort Liability Act] 6:1(1) (Swed.) (“피해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피해에 기여를 한 경우 개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조정될 수 있다.”).

128) *Petitioners et al., A Response, supra* note f, at 3를 참조한다.

129) *e.g.*, Durchslag & Goswami, *supra* note 47, at 20, 22 (인터뷰에 응한 113명의 남성 중 66%가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가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7%는 성매매여성의 대다수가 “노숙자”라고 답했으며, 57%는 성매매 여성의 대다수가 “아동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2%는 대부분 성매매를 시작하는 나이가 18세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42%는 “성매매가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를 모두 유발한다”고 답했다)와 Farley et al., *Men Who Buy Sex, supra* note 47, at 14 (“런던에 거주하는 103명의 남성 중 34%는 전체 성매매여성의 30-40%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35%는 그 비율이 50-90%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와 *id.*, at 16 (“인터뷰 남성 중 55%는 성매매여성의 대다수가 사기를 당했거나 인신매매되어 성매매에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와 Jan Macleod et al., *Challenging Men’s Demand for Prostitution in Scotland: A Research Report Based on Interviews with 110 Men Who Bought Women in Prostitution 20-21* (2008), <http://www.prostitutionresearch.com/ChallengingDemandScotland.pdf> (인터뷰 남성 110명 중 85%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를 통한 성행위를 즐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73%는 여성들이 단지 “경제적 필요”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고 답했다)와 Andrea Di Nicola & Paolo Ruspini, *Learning from Clients, in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cus on Clients 231-32* (Andrea Di Nicola et al. eds., 2009) (“놀라운 것은 구매자들이 착취 및 그것과 관련된 중화 기법(neutralization technique)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와 Martin A. Monto, *Female Prostitution, Customers, and Violence*, 10 *Violence Against Women* 160, 177 (2004) (“많은 구매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의해 성매매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를 참조한다.

과시kin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은 “혼인 또는 동거 중인 배우자가 있는 (이러한) 일반 남성들은…… 성적 서비스를 구매할 때…… 그것이 상대 여성에게 파괴적인 행동임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기술하고 있다.¹³⁰⁾ 다시 말하자면 구매자는 성매매된 사람의 열악한 상황 또는 학대받는 상황을 악용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면 성매매된 사람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가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성매매된 사람에게는 성구매자에 대해 증언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없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정부의 최근 조사에 의해 명료하게 정리되었다. 이 논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부 조사 보고서는 “성적 서비스의 구매는…… 공공질서에 반한 범죄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범죄인 측면이 더 크며 설령 그 배경에 이 두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라고 결론지었다.¹³¹⁾ “성적 서비스 구매자에 의해 착취당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또한 이 범죄는 피해 당사자가 없는 경미한 성격의 범죄가 아니다”고 명시하였다.¹³²⁾ 이 조사 보고서는 어떤 범죄의 보호된 이해가 “일차적으로” 성평등을 증진하고 착취를 척결하는 것과 같은 공익과 관계되었더라도 전적으로 공익적인 이해만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한다.¹³³⁾ 실제로 어느 재판부도 그러한 이해가 성매매된 사람에 대한 범죄로 동시에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하지 않았다. 의회는 기존의 정부 보고서와 제안서들을 고려하여 성매매된 사람들이 소

130) Prop. 1997/1998:55 *Kvinnofrid* [government bill] 22 (Swed.).

131)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81.

132) *Id.* at 250 (인용 제외됨).

133) *Id.* at 250-51.

송절차법 내 “피해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피해 당사자”로 간주될 경우 구매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권한이 인정된다. 그러나 의회는 성매매된 사람이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는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¹³⁴⁾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2011년 5월 이 수정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이미 기존 법률이 형식상 피해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는 목격자와 기타 개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의회 법사위원회가 서면을 통해 별도로 언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¹³⁵⁾ 이는 사법기관이 성매매 피해자의 피해보상 청구권을 해석하는 방식에 다수 의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차적인 손해배상 청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검사와 피해자의 국선 변호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 당사자의 청구만을 대리할 책임이 있다.¹³⁶⁾ 성구매 금지법의 발효 이후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성매매 피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민사적 절

134) Bet. 2010/2011:JuU22 Skarpt straff, *supra* note 8, at 11-12와 Prop. 2010/2011:77 Skarpt straff, *supra* note 8, at 14-15와 R tteg ngsbalken [RB] [Code of Judicial Procedure] 20:8(4) (Swed.), unofficial translation available at <http://www.regeringen.se/content/1/c4/15/40/472970fc.pdf> (as amended 1999) (“피해 당사자는 범죄 행위의 대상이 되거나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은 자이다”)와 SOU 2010:49 Forbud mot kop, *supra* note 8, at 250 (RB 20:8(4)에 근거하여 해당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를 참조한다.

135) Bet. 2010/2011:JuU22 Skarpt straff, *supra* note 8, at 11-12.

136) 검사의 의무와 관련한 이 규정에 대해서는 RB [Code of Judicial Procedure] 22:2 (Swed.)를 참조한다. 검사 외에도 형법 제6장 성폭력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련 장들에 의해 정의되는 범죄 행위의 경우 피해 당사자를 대변할 국선 변호인이 지명된다. 1 § Lag om m ls gandebitr de (Svensk Forfattningssamling [SFS] 1988:609) (Swed.), 형식상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권한을 갖는 경우와 관련된 절차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보려면 Diesen, *supra* note 9, at 122-24를 참조한다. 원고가 법적 피해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정할 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id.* at 123 n.13 (Skadest ndslag [SkL] [Tort Liability Act] 2:3 (Swed.)를 인용하면서 특히 “개인, 자유, 평화 또는 명예”에 반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tort)는 피해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를 참조한다.

차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¹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이처럼 숨어 있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이용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자들이 더 많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팔레르모 의정서의 준비문서가 구체적으로 구매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팔레르모 의정서를 적용하여 제3자의 알선을 통해 당사자를 소개받은 구매자에게 인신매매죄를 적용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¹³⁸⁾ 포주들이 성매매된 사람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것처럼 구매자들도 제3자로부터 그들을 구매할 때 그 사람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경우 구매자는 팔레르모 의정서가 규정한 “공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¹³⁹⁾ 더 나아가 소비재의 구매자와 달리 성구매자는 “인신매매된 사람을 접수”함으로써 인신매매의 사슬에 참여한다.¹⁴⁰⁾

결론

현재 내포하고 있는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성구매금지법은 특

137) Carina Hagg et al., *Stark prostituerade personers möjlighet att krava skadestånd [Strengthen Prostituted Persons' Possibilities to Demand Damages]*, Göteborgs-Posten [Gothenburg Post], May 10, 2011 (온라인본), <http://www.gp.se/nyheter/debatt/1,622968>; see also Motion 2010/2011:Ju10 med anledning av prop. 2010/2011:77 Skarpt straff för kop av sexuell tjänst [parliamentary motion] (Mar. 22, 2011) (Swed.) (Social Democrats) (성매매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와 Motion 2010/2011:Ju11 med anledning av prop. 2010/2011:77 Skarpt straff för kop av sexuell tjänst [parliamentary motion] (Swed., Mar. 22, 2011) (Left Party) (Motion 2010/2011:Ju10, *supra*와 함께 추가 조사를 제안한다)를 참조한다.

138) *Travaux Préparatoires to the Palermo Protocol*, *supra* note 59, ¶¶ 62-86를 참조한다.

139) Palermo Protocol, *supra* note 1, art. 5(2)(b).

140) *U.N. 2006 Trafficking Report*, *supra* note 6, ¶ 63.

히 스웨덴의 인접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성공적으로 인신매매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근거들과 더불어 성매매가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의 요소들을 충족시킨다”는 사실,¹⁴¹⁾ 그리고 제3자의 부당이득 취득과 성구매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인신매매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네바다주,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같이 제3자와 성구매자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법관할구역들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2006년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이렇게 말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은…… [자국들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신매매를 영속화시키지 않도록……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듯이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국가들은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¹⁴²⁾ 인신매매 척결 공약을 바탕으로 전세계 국가들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무부와 같은 정책결정자들은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국가들과 구매자를 처벌하고 성매매된 사람들을 범죄화하지 않음으로써 인신매매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국가들을 같은 “1등급”에 놓지 않아야 한다.¹⁴³⁾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국민들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간 명백한 연계고리를 끊기 위해 자국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스웨덴이 구매자를 범죄화하기 위해 시행한 법은 스웨덴 내 인신매매를 크게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¹⁴⁴⁾

141) *Id.* ¶ 42.

142) *Id.* ¶ 43.

143) e.g., Office to Monitor & Combat Trafficking in Pers., U.S. Dep'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47-48 (10th ed. 2010)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들과 불법화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동일한 상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전자가 미국의 인신매매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를 참조한다.

144) 본 논문을 제출한 직후, 본 논문이 발표된 패널의 의장은 인신매매 감시 및 척결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의 루이스 시드바가 미국 특사를 초청하여 본 논문의 말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물었다. 시드바가 특사는 인터뷰가 있어서 자리를 떠야 한다고 말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이슈&피플

- [해외전문가 인터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그 단면을 보다, 세계 최초의 오페라 “Anyal7” / 작가 벤 카이에(Ben Kaye) 인터뷰
- [여인이 만난 여인] ‘제주 공무원 성매매 사건’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송영심소장 인터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그 단면을 보다, 세계 최초의 오페라 “Anyal7”

- 작가 벤 카이예(Ben Kaye)와의 인터뷰 -



‘Anyal7’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다룬 세계 최초의 오페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밀매되어 성노예로 팔리는 4명의 어린 소녀(주인공 아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적 인신매매에 관한 대중의 인식 개선 및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오페라는 2012년 3월 영국 리버풀에서 초연되었다.

‘Anyal7’의 작가 벤 카이예(Ben Kaye)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페라를 기획하게 된 배경, 청중의 반응, 인신매매 척결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페라의 한국 공연 개최를 기대하며 인터뷰를 실는다.

■ [기획의도 및 제작 배경] ‘Anyal7’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다룬 세계 최초의 오페라라고 들었습니다. sex trafficking, sex slave, prostitution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공연으로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작곡가들과 대중 음악가들을 위한 곡을 써오다가 오페라를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화나 로맨스에 관한 이야기를 써서 이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죠. 대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사람

들의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명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 [현황] 실제로 UN이나 IOM 등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최근 인신매매에 의한 성착취가 국내 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동유럽 등 주변 유럽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성산업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영국 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은 어떠한가요?

인신매매는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기 어렵지만, EU 국가들에서만 그 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해 마약 거래에 버금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70만 명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인신매매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EU 안으로 인신매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소녀들도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약 20여 개의 반인신매매 단체들이 있는데, 제가 그 단체들을 대변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최근 영국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때 지금 필요한 건 입법이 아니라 대중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군요. 영국에서는 최근에 몇몇 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끌면서 이 문제가 재조명되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준비]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인 만큼 제작자와 배우들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특별한 활동이나 준비가 있었나요?

전 수개월 동안 이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11개의 국내외 반인신

매매 단체들과 친해졌습니다. 배우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맡은 배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쉽터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성매매(피해)여성들과 배우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래서 “이제 야 자기들이 맡은 배역을 연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되었구나. 이젠 정말 배역에 몰입해서 이 여성들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과 절망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관객들에게 전달되었고 오페라가 끝나자 몇 분간 극장 안에 슬픈 적막감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효과가 있었던 거죠.

■ [내용] 사실 많은 분들이 ‘Anya17’에서 숫자 17을 아냐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아냐의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실제 숫자 17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와 더불어 본 오페라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한국의 많은 분들께 오페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시겠어요?

17은 ‘메뉴판’에서 아냐의 번호입니다. 아냐가 아니라 17번 여자아이인 거죠. 오페라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냐는 피임을 당해 성적 인신매매를 당하는 4명의 소녀들 중 한 명입니다. 도착하자마자 폭행과 집단강간을 당하는 이 소녀들의 이야기는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되는 수천 명의 소녀들이 겪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아냐는 14살인데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남자의 꼬임에 빠지죠. 이렇게 인신매매가 된 후, 매일 30회 이상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냐는 마침내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과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지만 결국 절망과 광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 **[영향]** Any17를 통해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주제를 다루셨는데요. 이 오페라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여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근절되도록 힘을 보태게 하는 겁니다. 또 관객들이 인신매매의 징후들을 인지해서 신고하고, 이를 방지하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비인간적인 범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나가 구출된 후, 단순히 17번이었던 것에서 다시 아나가 되기 위한, 즉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어둠뿐이잖아요.

■ **[관객 반응]** 지난 3월, 리버풀(3/7)과 맨체스터(3/9)에서의 첫 번째 공연이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관객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관객과 언론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습니까?

언론과 관객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페라를 작곡하는 과정이 BBC 방송과 신문사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취재되었고, 오페라는 공연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상 후보작에 지명되었죠.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www.any17.co.uk에서 BBC TV 방송과 오페라 발췌본을 볼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공연은 완전히 매진되었는데, 그날 저녁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선데이 타임즈를 비

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에서도 훌륭한 리뷰를 실어줬죠.

■ [추가공연계획] 영국 내 혹은 외국에서의 추가공연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2013년에 네덜란드와 독일, 루마니아에서 공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10월 영국 반노예제의 날에 맞춰 런던 공연이 성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연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예술을 통한 사회운동의 전망]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예술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술을 통한 사회운동의 적절한 역할과 비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저는 밥 딜런이나 밥 말리와 같은 정치적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고, 쉘린저와 헤밍웨이의 책을 읽고,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와 벤자민 제파니아를 비롯한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예술이 갖는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당겨 그들의 박동하는 심장을 주무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생각만큼 더 좋은 무기가 있을까요?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벤 카이예(Ben Kaye)**

벤 카이예는 도세트 문화(Dorset, 북미 북극 지역의 중부 및 동부 지방에서 2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 번영했던 에스키모 문화)에 기반을 둔 시인이자, 오페라 대본작가, 작사가이며 영국 최고의 작곡가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강렬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서정성 짙은 시는 영국 내 비평가들의 극찬은 물론 BBC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는 자연의 광폭함에 대한 인류의 투쟁, 납치와 감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죽음 등 다양하고도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어 왔다.

벤은 JAM과 작곡가 폴 밀러(Paul Meador)와 함께 차기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폴 밀러의 작품 ‘Ubi Caritas’는 왕실 결혼식(윌리엄-케이트 왕세손 부부의 결혼식)에서 연주된 바 있다.

* 홈페이지 www.librettist.co.uk

‘제주 공무원 성매매 사건’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송영심소장과의 인터뷰 -

2012년 2월 제주지방경찰청(담당 서부경찰서)은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지난 2년간 성구매한 남성 700명 중 2~3회 이상 성매매를 하거나 동종범 죄경력이 있는 1차 소환 대상자 45명을 발표하였다. 그 중 21명이 제주도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2012. 6월 기준) 휴게텔 업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구매자 중 42명이 입건, 29명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송치된 29명 중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는 전국 여성·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성매매 사건 해결 및 공직자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송영심소장과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발생원인, 현장의 대응상황, 사건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올해 초 제주도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의 성매매 사건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성매매 사건이 발생한 2010년 1월 ~ 2011년 11월, 그 중 2010년 한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활동을 위한 지역명예감시단 활동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은 경찰, 지자체공무원, 지역 청년회 등과 함께 일일이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 실태를 확인, 점검, 단속

예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그런 동료들의 수고스러움을 비웃듯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에, 성매매가 공직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제주도 공무원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제주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2010년 포항 유흥업소 여성의 연이은 자살에 경찰과 업주들이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 2010년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과 스폰서’ 사건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를 조장해온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과 그 맥락을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도는 대표적 관광특구이자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곳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외화벌이 수단으로 기생 관광을 장려하고, 1980년대 제주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호텔, 위락시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에 제주지역은 3차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성매매가능 업소들이 늘어나는 환경적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주생활 무대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탈행위를 가능케 하는 심리적 거리감을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공무원 성매매 사건 중 타 지역 공무원들이 연수차 제주를 방문하여 성구매 행위를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제주도민, 공무원, 여성단체 등 제주도 내 시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중순 서귀포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인터넷 채팅을 통해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구매한 사건)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행정, 교직, 소방직, 군인 등 다수의 공무원들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공직자에 대한 불신의 불을 지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성구매 혐의로 입건된 42명 중 일반인 24명 모두는 범죄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된 반면 공무원은 단지 5명만이 검찰에 송치되어 '제 식구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더불어 사안의 중대함에 맞게 중간 브리핑과 같은 조사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도지사는 언론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여성단체와의 면담을 도청현관에서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갖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올해 2월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변종성매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혔는데, 진행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된 단속 성과를 5월 18일 발표하였습니다.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한 단속으로 성매매 업소 3곳(제주시 1곳, 서귀포시 2곳) 적발과 업주 3명, 종업원 3명, 성구매자 1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에서 2010년 조사한 제주지역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제주(연동)지역 자유업종 업소현황은 142개소이며, 그 중 성매매하는 업소로 조사 확인된 업소는 53개 업소(총 업소수대비 성매매비율 38%)이며, 서귀포시 경우 자유업종 52개소 중 성매매업소로 조사 확인된 업소가 17개 업소(총 업소수대비 성매매비율 3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후속조치는 우리가 조사한 결과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조사결과와 신뢰와 단속의지에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제주 공무원 성매매 사건 척결을 위해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문 발표, 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진행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월 9일 밤, 언론을 통해 처음 공무원 성매매 사건을 접한 후, 그 다음날 2월 10일 <제주도지사는 연이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성매매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써 공직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당장 실천하라!!!>라는 내용으로 6개 여성단체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2월 1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 교육감,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언론에 입장표명을 했다”,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다”, “해외출장이다”라는 이유로 면담이 거부되어 2월 15일 <“제주도는 성매매공무원을 강력징계하고 성매매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라”>라는 내용으로 2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바로 도청을 찾아 도지사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현관입구에서 비서실담당

자에게 기자회견 자료와 우리의 요구를 구두로 전달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2월 22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성매매근절 차원에서 모두 조사, 성매매 혐의자로 기소하기 위해 성구매 남성 모두를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 경찰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법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으로 강력 징계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성매매방지법 초기 쇠창살 감금으로 성매매여성들이 피해자로 보호가 되었다면, 지금은 업소를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큰 빛의 감금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보호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여성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제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찾아 계장과 면담을 통해 성매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함을 인식시키고, 조사과정 중 여성들에게 지원단체에 대한 적극적 정보전달, 여성단체 연계와 더불어 여성들에 대한 조사 시 여성단체와의 사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들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아직까지 저희 단체에 연계된 여성은 없습니다.

▣ 지금까지 활동을 진행해오시면서 느꼈던 성과(평가), 보람, 한계점(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건 초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무원 성매매 사건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였다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경찰서와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통해 여성들의 조사 전 사전상담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주지역으로 봤을 때 지역현안인 강정해군기지 문제로 적극적인 대응과 힘을 집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지자체에서는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해결책이나 입장을 미루

는 모습을 보여 이후 수사종결에 따른 해당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 등이 엄중히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 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재 수사 과정을 보면 휴게텔 업주는 집행유예, 검찰로 송치된 29인 중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성매매 사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되는데, 사건 척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무엇인가요?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제주지역이 성매매가능업소로 만연하게 된 지금의 현실을 방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반성과 더불어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반성이 전제될 때 범죄행위를 은폐하거나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 공무원의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중 구체적인 기준이 없던 성매매에 대해 그 비위(非違)정도에 따라 과면, 해임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땅에 떨어진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지방경찰청 면담 시 답변했던 700여건 350여명의 성구매 사실여부를 모두 조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재수없게 걸렸다”는 등의 억지주장을 펼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주지역 마사지(휴게텔) 공무원 성매매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자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관심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무관심을 물리쳐 성매매알선자의 강력한 처벌, 성구매자의 수요차단, 여성들의 보편적 인권 확보를 위해 함께 동참합시다!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해냄’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내다”는 뜻으로 2004년 8월 설립되었다.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 복귀, 인권신장을 위해 상담, 법률, 의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쉼터, 자활지원센터 및 전국 관련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

현장이웃리치사업, 성매매예방교육사업, 성매매방지 캠페인 사업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장을 포함 5명의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다.

* 블로그 www.jwr.or.kr

주제서평

•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 김주희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김주희(서울시립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한국 사회문화사를 기록하는데 열정적인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의 새 책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가 최근 출판되었다. 강준만 교수는 이전 시대 신문, 잡지, 영화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한국 사회의 일면을 바로 이 방대한 '자료로써' 증명하는 성실함으로 모범이 되는 학자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 한국(인)의 생김새를 그려내고자 한다. 그런데 강준만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러한 '오늘'을 만들어낸 다양한 축들 중에 '성매매'라는 주제를 매우 주요한 축으로 상징하며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는 《룸살롱 공화국: 부패와 향락, 패거리의 요새 밀실집대 65년의 기록(2011)》과 같이 '룸살롱'이라는 특수한 성산업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적 접대 문화, 발전주의적 추동력, 정치학이 발전하고 전개된 것을 연구한 전작(前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커피와 다방의 사회사(2005)》,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말죽거리

* 강준만, 2012,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 인물과사상사.

** 서평의 제목은 책의 부제에서 따왔다.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는 저자가 신문, 잡지, 영화 등의 자료에서 인용한 문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시키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책인 만큼 본 글에서는 일일이 책에 인용표시된 출처들을 다시 명시하기보다 이 책의 페이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용표기를 대신하고자 한다.

에서 타워팰리스까지(2006)》등과 같은 얼핏 성매매와 긴밀한 관련을 상정하기 어려운 주제의 연구에도 성매매를 둘러싼 인물, 현상, 구조는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저자의 연구 성과를 통해 성매매와 관련해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사회의 역사적 기원이나 특수한 사건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신간의 제목이 다소간 선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저자가 성매매라는 주제어를 연구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무게를 부여해온 것을 아는 만큼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가 출판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 또는 신축성” 혹은 “양지에선 근엄, 음지에선 계걸(p.188)”이란 표현으로 한국인의 성 관련 위선을 드러낸다. 이중적 성의식이 남아있는 한 성매매특별법은 도덕적 명분만 앞세운 실패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중적 성의식은 제한적 범주로서의 성매매 현상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성이 이야기되고 거래되는 광범위한 회로 속에서 포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매춘’ 대신 성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한 ‘매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힌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 등 폭넓은 성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책 말미 부록에 〈간통의 역사: 한국은 어떻게 ‘간통의 천국’이 되었는가?〉라는 짧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적 성의식의 연장선에서 매매춘과 간통의 차이는 모호해진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 매매춘, 내부 공모의 산물

저자는 한국 사회 매매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6개의 시대 구분을 한다. 각각의 시대에는 “계집애 고운 것은 갈보로 간다(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사창굴의 전성시대(해방에서 1950년대까지)”, “수출·국방 정책

으로서의 매매춘(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향락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GNP의 5퍼센트 이상(1980년대)”. “영계촌·인터걸·원조교제의 시대(1990년대)”, “성매매 유티키퍼스의 시대(2000년대)”라는 시대를 특징화하는 부제가 붙어 있다.

위와 같은 시대 구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개화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의 매매춘 제도화엔 17세기 이래 공창 제도를 채택해온 일본의 영향이 크다는 저자의 분석이다. 즉, 제도로써 매매춘의 확산기점은 개항(1876년) 시기이며, 이후 일본인 거류지에서 시작해 조선 전역으로 매매춘이 확산(p.17)된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매매춘을 개인 여성과 개인 남성 간의 성적 거래로 읽어내기보다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양식이 변화하면서 외연을 달리하는 제도적 산물로 보고 있다. 특정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혹은 담당할 것을 강요받는 것으로서 매매춘 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책을 통해 다루어지는 136년의 긴 시간 동안 성매매는 변치 않고 사회 ‘문제’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매 시대마다 “이전보다 더욱 많은 수의 여성들이 성을 팔고 있는 현실, 점점 문란해지는 성 문제가 걱정”이라는 우리의 목소리가 기고문 등을 통해 등장한다.

서울 기생이 급증한 데에는 1909년 관기 제도 폐지가 미친 영향이 컸다. 먹고살 길이 없어진 지방 기생들은 앞다투어 서울로 상경하였고 적극적으로 영업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철도 덕분에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기생의 범도가 무너진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p.25).

리영희는 《여성동아》 1973년 7월호에 쓴 〈외화와 일본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나라가 해마다 수십, 수백만 명의 외국인을 끌어들이려는 목표로 관광 한국을 자랑하는 동안, 말하기는 다소 쑥스러운 일이지만 일본인에 의한 밤의 수요가 느는 바람에 농촌 소녀는 서울 외곽으로 몰려들고 외곽의 여성은 중심가로, 중앙 지대의 여성은 호텔로 모인다는 호텔 사람들의 설명이다(p.91).”

70여 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이 있는 인용문이지만 당대에 부상하는 문제를 진단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공급자가 몰려들고 있다는 시각이다. 1957년 신문 기사엔 “이 잡듯이 잡아도 줄지 않는 것이 매음부들”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p.63). 책에 등장하는 ‘기생’, ‘카페 여급’, ‘전쟁미망인’, ‘콜걸’, ‘텐프로’는 시대를 달리해 다른 이름을 부여받은 여성 들일 뿐인데 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적 여성으로 읽히고 있다. 때로 이들은 ‘유학생 혹은 국제결혼 여성1)’, ‘식모2)’, ‘연예인3)’, ‘현지처4)’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대가 여성들을 읽어내는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럼에도 이들을 변함없이 문제적인 존재로 읽어내는 방식이 시대의 문제, 구조의 문제를 읽어내는 방식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각 시대의 편견이 고스란히 담긴, 당대의 ‘보편적’ 독해법에 의존한 자료들을 인용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이 책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저자가 ‘매매춘’이라는 용어로 성매매의 거래적 속성을 표현하겠다고 밝힌 것이 무색하게 이 책에는 성을 사는 남성에 대한 자료는 확연하게 적다. 기록된 자료들은 시대의 편견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929년 〈개벽〉은 “과거의 기생은 귀족적이더니 현재의 기생은 평민적이다. 과거에는 비록 천한 직업이었지만 염치와 예의를 쳤는데, 이제는

-
- 1) 1959년 9월 12일 치안국은 급기야 “유학차 도미하는 여학생과 국제결혼을 하여 도미한다는 여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해외 여권 발급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이들의 상당수가 매매춘을 위한 위장 유학생이라는 게 치안국의 주장이었다(p.63).
 - 2) 1965년 동두천 지역에서 성매매여성 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는 전직이 식모인 여성이 26퍼센트인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p.64).
 - 3) 1990년 2월 초순 인기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 등 모두 아홉 명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중략) “그동안 시중에 소문으로만 떠돌다 확인된 매춘 구조는 ‘부유층 또는 일본인과 마담뚜, 유명 연예인’의 먹이사슬 구조. ‘돈과 미모의 야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들의 관계는 부유층은 향락, 연예인들은 돈이 필요하기에 맺어진 것이다(p.127)”
 - 4) ‘현지처 문화’도 새로운 문화 양상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그건 아예 일본에 진출해버리는 것이었다(p.99).

금전만을 숭배한다”라고 기록한다(p.27). 이러한 평가는 과거 기생이 원래 요릿집에서 숙박할 수 없었는데 이후 요릿집에 고용되어 성을 팔 수 있도록 한 일제의 공작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한 것이겠지만, 식민지 조선 남성 사회 내부의 매매춘에 대한 태도는 문제 삼지 않는다. 사실 1909년 관기 제도 폐지 이후 과거엔 양반만 상대할 수 있었던 기생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의 신분제를 뛰어넘는 한풀이 수단으로 기생 수요가 폭증했는데(p.25) 이에 대한 반응은 빠져 있다. 매매춘업이 일본에서 본격 수입되면서 “전통적으로 호색적인 일본의 풍습, 자유방임적, 데카당적 사조가 유입되는 등 성 해방, 성생활의 자유화가 급속히 만연되었다(p.29).”는 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성병이 증가하고⁵⁾ 성 윤리가 무너지는 등 사회는 개탄할 만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태도는 문제의 핵심을 손쉽게 외부로 돌리는 방식 중 하나이다. 이런 설명 방식 속에서 일본이라는 외부는 해방 이후 자연스레 미국으로 대체된다.

미군이 있는 곳에 여자와 고아들이 들끓었다. 여자들은 미군이 지나가면, ‘헬로우, 아이 러브 유’ 하며 자기 몸을 사달라고 소리 지르며 애원을 하였다. 미군 병사들은 열린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고는 손을 흔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즐거워하는데, 《타임》을 읽으며 내 옆에 앉아 있던 중위가 나를 보며 지껄었다. ‘한국 사람들은 달려라면 제 에미나 딸도 기꺼이 팔아먹을 것 같군.’ 혼자 지껄이는 소리지만 내가 들으라고 한 말이었다. 나는 심한 모욕감 때문에 몸이 떨렸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던 간에 한 대 후려치고 싶었다.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 중위를 쏘아봤다. ‘그건 전쟁 때문이고, 당신네 나라가 너무 부자기 때문이오(p.51).’

5) 1906년대부터 약 광고가 범람한 가운데 1910년 이후에는 성병 치료제 광고가 제일 흔했다고 한다(p.19). 1920년대 성병은 ‘국민병’이 되기에 이른다. 과장된 것이겠지만, 한 의사는 “30세 내외의 남자로서 성병 없는 사람이 5할가량밖에 아니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였다. 또 어느 병원은 “병자 100명에 12명 정도가 매독 환자”라고 밝힐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p.29).

현길언의 소설 《헬로우, 아이 러브 유》에서 외부에 의해 강제된 성 매매는 남성 사회 내부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문제로 재현된다. 한국 전쟁 당시 전쟁미망인들의 성 판매 문제도 이런 관점 일변도의 맥락에서 문제시된다.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당장 아사를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외국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것밖에 없다. **창부도 아닌 여인들이 몸을 판다는 건** 바로 삶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물적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선 그 길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이 전쟁이 강요한 또 하나의 처절한 비극이었다. 그들은 추위와 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미제 담요 한 장으로 외국 군인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정조를 헐값으로 팔아야만 했다 (p.48-49, 굵은 글씨는 서평자 강조).

위의 글을 쓴 사람은 한국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창부도 아닌 여인들이 몸을 파는”, 일어나기 힘든 일을 목도하면서 개탄한다. 글쓴이에게 ‘창부’는 아이가 없고 아사를 경험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존재이다. 그들에게 ‘에레나’와 ‘순희’는 결코 동일인일 수 없다.⁶⁾ 민족의 비극으로 인한 예외 상황을 만들어 내면서 내부의 문제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지는 매매춘 문제를 매 시대의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내부 공모로 유지되고 심지어 권장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유지한다.

1900년대 중반부터 매춘여성은 격리되었고, 등록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세금을 내고 위생검사를 받았다(p.18). 한참 후인 1961년 5·16쿠데타 직후 정부는 매매춘 문제에 대해 청교도적 접근을 했으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으나, 달러를 벌기 위해 그 해 9월 미군 위락 시설인 위커힐을 짓기 위해 광장동 부지 18만 평을 수용했다(p.75). 이미 유신 직후 한국 정부는 관광 진흥 정책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6) 에레나는 1959년에 노래의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했다. 손로원 작사, 한복남 작곡, 안다성 노래의 〈에레나가 된 순희〉가 바로 그것이다(p.65).

두었던 국제관광협회에 ‘요정과’를 설치하고 관광 기생들과 관광 요정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실무에 착수(p.88)한 전력이 있다. 1962년 여름 군사정권은 ‘매매춘 특정구역 설정’으로 후퇴하는데(p.76) 이것은 사실상 공창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주한 미군과 박정희 정권은 합동으로 ‘군 기지 정화 운동’을 실시하면서 ‘안보’와 ‘안락한 섹스’를 교환했다(p.100). 1973년은 외화벌이를 위해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였다. 박 정권은 1973년부터 매춘부들에게 허가증을 주어 호텔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통행 금지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 정권은 여행자들을 통해 ‘기생 관광’을 해외에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문교부 장관은 1973년 6월 매매춘을 여성들의 애국적 행위로 장려하는 발언을 하였다(p.86). 1980년대 후반 다시 기생 관광이 부활했는데 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전두환 정권이 적자재정 고민에 빠져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p.115). 정부는 물론이고 올림픽조직위원회까지 기생 관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생 관광을 위한 홍보도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었다(p.116). 전두환 정권은 1986년 1월 기생 관광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11개 대형 요정 업체에 총 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특별용자 형식으로 지원해주었고, 국제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외래 관광객용 지도에도 기생 관광 장소인 요정의 위치를 각국어로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밝혀놓기도 했다(p.117). 바로 이 올림픽을 앞두고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에 ‘환경개선작업’의 명목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일어났으며 ‘유리방’이 본격 등장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의명분을 위한 매매춘의 국책 사업화 과정 속에서 성매매여성들은 도구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전혀 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애국적 동원의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했기에 자신의 피해나 권리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정부가 수많은 미군 범죄에 침묵하고 과소 대응한 역사는 잘 알려져 있다. 대

표적인 사건이 1960년 1월 2일 동두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는 두 여인이 전부터 알고 지낸 미군을 만나기 위해 철조망 구멍으로 7사단 탱크 대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두 여자의 머리를 뺨뺨 밀고 희롱한 사건이다. “부대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삭발로 벌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통”이라며 미군은 오만한 태도를 취했고 한국 정부는 무기력한 대응을 했다(p.69). 또한 정부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매매춘 여성들을 애국자라고 치켜세웠지만 정부는 이 여성들에 대한 화대 착취 구조를 묵인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총수입의 80퍼센트를 중간 착취당했다고 한다(p.90).

안보의 구축, 경제 성장, 경제 활성화라는 과업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되는 역사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여전히 성 접대는 상대를 배려하여 호의를 베푸는 가장 극진한 접대로 여겨진다.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여성 직원들은 이윤 증대의 과업 속에서 배제되고, 침묵할 것을 강요받는다. 또 정부에서는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을 고려해서 이런 접대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유신 정권 하에서는 정부의 관광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유신 과업 수행을 가로막은 반정부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정도의 차이일 것이다. 1974년 2월26일 이우정은 여성 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생 관광 반대 강연회에서 정부의 관광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 이후 당국의 감시와 협박에 시달렸으며 연행당하기도 했다(p.96).

당시 감독 중앙정보부는 반대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려고 이우정과 몇몇 대표자들을 잡아들인 적도 있으나 이우정은 “난 절대 못쓴다. 가난해도 좋다. 세탁기 안 쓰고 손으로 빨아도 좋다. 우리나라 딸들을 팔아서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끝내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강압책 말고 회유책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문공부 총무국장이 여성계 회장, 초교과 교회여성연합회 회장 등을 음

식점에 초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우정은 “아주 사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외화가 필요하다. 외화가 있어야 비료도 사 오고 물건 만들어 수출도 할 수 있다. 기생 관광도 일종의 애국이다’라며 설득을 하는 거야. 더 심한 말도 했어. (중략)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선생이 생각하기에 그게 그렇게 애국적인 일이면 선생 딸부터 관광 기생 만드시오. 그럼 우리도 반대 안 할 테니’ 그랬다니까. 그 국장 얼굴이 벌게지더구먼(p.97).”이라고 설명한다.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에서는 이 같은 여성운동의 힘 있는 역사의 장면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1920년대의 최초의 공창폐지운동(p.30)부터 미군정 시기인 1946년 공창폐지연맹이 조직(p.43)된 역사도 살펴볼 수 있다. 김말봉, 박현숙 등 여성 단체 지도자들은 10여 명은 공창폐지연맹을 조직하여 미 군정이 발표한 법령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 계약의 금지’ 제70호는 단지 인신매매 금지령일 뿐이므로 시급히 공·사창을 폐지하게 하는 법령을 제정해 달라고 입법의원에게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입법 의원은 1947년 10월 28일 전격적으로 공창폐지법을 통과시키고 즉시 미 군정 장관의 추인을 요청하여 이듬해 2월 14일 공창제 폐지를 시행하는 법령을 공고하였다(p.40-43). 이후 90년대부터 미성년자 매매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매춘 지역 무허가 건물 화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성운동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저자인 강준만 교수는 이러한 여성운동계의 입장에는 꾸준히 주목하지만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을 ‘실패’(p.189)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일반화와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 ‘고자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미군 정 하에서의 공창폐지 운동이 그러했고, 끊임

없이 법을 제정하며 법 의존적인 운동을 한 것이 그러하다.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구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 보인다. 아마 저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양지에선 근엄, 음지에선 게걸(p.188)”이라는 한국 사회의 성 이중 의식에 대한 내부적 성찰이 우선되거나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한 것이리라.

3. 나가며

《매매춘, 한국을 벗기다》에는 성을 판매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저항 운동 역시 기록되어 있다. 1931년 함경북도 청전에서 동맹파업을 일으킨 창기 열한 명은 단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우리를 절대 해방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대항하겠다”라고 맞서기도 했다(p.32). 1971년 송탄에서 미군들이 화대와 기지촌 물가가 비싸다며 신발과 쇼트타임(short time) 화대를 5불로, 롱 타임(long time) 화대를 10불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자 여성들은 미군들의 화대 때먹기와 화대 인하 요구에 대항하였다. 천 명이 넘는 동료 매춘 여성들을 조직하여 ‘우리는 신발이 아니라 인간이다(We are not shoes! We are human beings)’를 외치며 미군 부대 앞에서 데모를 벌였다(p.104). 2004년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 12개 집창촌에서 모인 성매매여성 3천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단속 중지를 촉구하기도 했다(p.165).

성매매여성들이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하다. 저자 역시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아가 저자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부의 전시효과와 맞물린 도덕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나는 성매매를 둘러싼 이중적 의식, 문화적 반성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저자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성매매 방지법이 책정하고 있는 예산의 효과로 성매매

를 그만 둘 수 있었던 여성들을 목도한 이상 방지법의 의미와 효과까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게다가 알선자와 구매자가 처벌된다는 것을 널리 알린 홍보 효과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이전보다 사회의 감수성을 진보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되새길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 국가와 권력은 어떻게 성을 거래해왔는가라는 부제에 대해 사유하면서 잊지 않고 생각해보아야 하는 지점일 것이다. 매매춘 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태도나 의식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으며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부를 끈질기게 응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섹스란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와 그 외중에 형성된 처절한 생존경쟁 문화가 낳은 업보는 아닐까? 그 어떤 강박의 포로가 됨으로써 불안과 공포를 치유하려는 적나라한 의식은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한국 남성을 ‘섹스 애니멀’로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근본주의적 처방보다는 ‘양지에선 근엄, 음지에선 게걸’이라는 이중성부터 완화해나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해법은 아닐까?(p.192)

정보마당

- 성매매 관련 통계
-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1년 발간)
- 성매매 관련 법령(2012년 개정)

성매매 관련 통계

1. 성매매 위반범죄 관련 통계(2010년)

1) 발생 및 검거정보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단위: 건, %, 명

발생건수	발생비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남	여
9,048	18	9,026	99.8	17,048	14,499	2,549

※ 발생비: 인구 100,000명에 대한 범죄 발생건수

※ 검거율: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백분율(%)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110~111.

- 수사기관별 발생건수

단위: 건

계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특별사법경찰
9,048	31	8,607	406	4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110~209.

* 이번호부터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연구자료, 개정 법령 등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성매매 관련 통계 정보는 성매매 위반범죄 통계, 청소년 성매매 범죄 통계, 존스쿨 현황이 포함되며, 2011년 1년간 발간된 연구자료 및 2012년 개정된 법률 내용을 담았다. 핵심 내용위주로 요약·발췌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출처를 참고하기 바란다.

• 경찰청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단위: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남	여
전체	8,607	8,576	99.6	16,570	14,029	2,541
서울지방경찰청	4,090	4,094	100.1	8,321	7,242	1,079
부산지방경찰청	446	444	99.6	899	675	224
대구지방경찰청	364	365	100.3	907	746	161
인천지방경찰청	378	415	109.8	610	489	121
울산지방경찰청	126	124	98.4	230	182	48
경기지방경찰청	1,682	1,610	95.7	2,473	2,111	362
강원지방경찰청	65	62	95.4	116	77	39
충북지방경찰청	124	121	97.6	463	391	72
충남지방경찰청	578	596	103.1	1,101	960	141
전북지방경찰청	103	106	102.9	227	181	46
전남지방경찰청	275	263	95.6	457	370	87
경북지방경찰청	117	116	99.1	394	330	64
경남지방경찰청	206	211	102.4	319	230	89
제주지방경찰청	53	49	92.5	53	45	8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116~209.

2) 범죄자 관련 정보

• 성별

단위: 명, %

계(A)	남	여(B)	B/A*100	미상
26,602	20,295	5,609	21.1	698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323.

• 내·외국인 현황

단위: 명

계	내국인	외국인										
		계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대만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기타
26,602	26,267	335	174	42	34	24	9	9	6	5	4	28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339.

• 전과 유무

단위: 명

계	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이상	
26,602	11,322	12,285	4,640	2,690	1,565	1,015	620	1,755	2,995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346.

• 범죄자별 처분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보호 사건송치	기타
전 체	26,602	4,444	21,328	232	598
외국인	335	42	282	4	7
여 성	5,609	1,664	3,517	202	226
학 생	467	24	416	6	21
소 년	236	5	132	11	88
공무원	131	3	127	-	1
정신장애	49	6	42	-	1

※ 기 소: 구공판, 구약식

※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 타: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출처: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p.429, 342, 546, 619, 588, 640, 688.

2. 청소년 성매매 관련 통계(2005 ~ 2010)

-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2005 ~ 2010)

단위: 건, 명

연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10년	528	1,345	56	1,289
'09년	815	2,182	125	2,057
'08년	850	2,112	81	2,031
'07년	839	2,582	126	2,456
'06년	744	1,745	149	1,596
'05년	1,139	1,946	295	1,651

출처: 2011.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23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tat.nypi.re.kr>)

-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2005 ~ 2010)

단위: 건

연도	계	유형				
		인터넷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 마사지	기타
'10년	528	414	14	4	4	92
'09년	815	590	20	17	1	187
'08년	850	647	13	55	6	129
'07년	839	701	7	47	2	82
'06년	744	590	1	5	50	98
'05년	1,139	924	23	7	62	123

출처: 2011.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p.23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tat.nypi.re.kr>)

3. 존스쿨(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¹⁾ 교육실적(2005 ~ 2010)

단위: 개소, 명, %

연도	존스쿨 집행기관	접 수	교육 집행인원	집행률
'10년	42	13,471	14,283	106.0
'09년	39	37,679	34,762	92.2
'08년	29	19,433	17,956	92.4
'07년	29	17,127	15,124	88.3
'06년	22	12,541	11,217	89.4
'05년	13	3,210	2,214	69.0

※ 2009년까지 매년 집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저조 등으로 존스쿨 집행인원이 감소하였음(2011, 법무연감, p.189)

출처: 2010.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505

2011. 2010 법무부 여성통계. 법무부. p.40


2011. 법무연감. 법무부. p.189

1) 존스쿨(John-School,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 2004년 9월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구매 초범자에 대한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구매 남성의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2005년 8월 최초 실시되었다.

성매매 관련 연구보고서(2011년 발간)*

1. 가출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I :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

	연구자	정혜원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기간	2011.1~12(12개월)
	발행일	2011.12
<p>• 연구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이 가출에서부터 성매매 유입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지 탐색 - 청소년들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에서 선택과 협상을 통해 환경에 포섭되는지 분석 - 가출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모색 <p>• 연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연구 방법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사용 - 심층면접, 직접관찰, 사이트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 자문, 델파이 조사 등 실시 <p>• 연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 청소년들이 최초로 집을 벗어나게 되는 이유 -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하는 경험과 적응 - 가출 청소년들이 경험한 거리생활 중 성매매에 유입되게 하는 요인 -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이후 하게 되는 갈등과 변화 - 단계별 정책제언 제시 : 1단계(가출이전단계) - 예방, 2단계(가출 이후 성매매 진입직전까지) - 초기개입과 보호,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지원, 3단계 -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지원 		


* 2011년 발간된 ‘성매매’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주된 검색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자체별 여성연구기관(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이며, 연구소 홈페이지의 발간자료를 검색하였다. 본 자료는 보고서 제목 순서대로 배열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발행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2. 가출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II :


가출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연구자	정혜원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기간	2011.1~12(12개월)
	발행일	2011.12
<p>• 연구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추출하고, 어떠한 개별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청소년 성매매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함 -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 <p>• 연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 실시 - 표집: 일반 여자 청소년(비례규모확률표집), 가출 여자 청소년(할당표집) <p>• 연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문헌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추출 - 가출과 성매매를 기준으로 세 집단을 구성 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차이 분석 - 가출 청소년의 생활실태 분석 : 가족의 구조적 특징, 학교생활, 가출이후의 생활 등 - 가출 청소년 성매매와 위험요인·보호요인 영향력 분석 - 위험요인이 청소년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 성매매 유입 억제를 위한 예방적, 정책적 제언 제시 		


3.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자	서해정
	발행기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기간	2011. 4~8(5개월)
	발행일	20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현황 파악 및 정비 - 지원체계 활성화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 자문회의, 간담회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여성폭력 관련 범죄통계 분석 -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운영 현황 및 협력체계 파악 - 2006~2010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운영실적 분석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 제시 		


4.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및 지원욕구 조사: 지원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연구자	김자영, 김지혜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기간	2011.1~12(12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필요 - 포괄적인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설문조사, 토크이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등 실시 - 설문조사: 전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전수조사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여성의 개인적 특성 분석 : 성장배경, 가정환경, 폭력피해 경험 - 정신건강 실태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함 - 인지적 영역: 자신, 타인,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및 태도(학습화된 무력감, 자아존중감) - 행동적 영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수면, 흡연, 음주, 약물, 자해, 자살) - 정서적 영역: 심리적으로 갖게 된 여러 가지 감정 및 정서상태(불안, 대인예민, 신체화, 우울, 적대감, 복합 PTSD) - 성매매피해여성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욕구 조사 -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포괄적 정책제언 제시: 제도적 측면, 연계적 측면(정신보건 관련기관 연계 활성화), 지원체계적 측면(정신건강 지원체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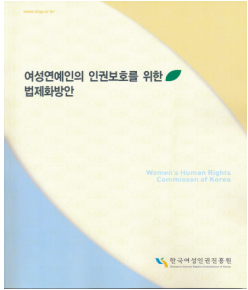
5. 성매매피해 청소년 자립지원 모델개발

	연구자	김인숙(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기간	2011.8~12(5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 모델 개발의 필요성 대두: 보호, 교육, 자활을 포함한 연속적, 통합적, 실현가능한 자립지원 모델 개발 - 청소년의 단계적 요구에 맞는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입안의 근거 자료 제시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종사자 욕구조사, 해외 지원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자립지원 실태 분석 -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삶의 경로와 자립욕구 조사 - 성매매피해 청소년 시설 및 대안학교 운영실태 및 효과성 분석 -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지원시스템 조사 -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자립지원 모델 4가지 유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유형: 청소년지원시설 특화 모델, B유형: 학력지원 특화 모델, C유형: 취업지원 특화 모델, D유형: 비시설보호 특화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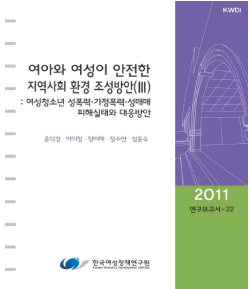
6. 성매매피해 통합지원매뉴얼

	연구자	변정애, 정양희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기간	2011.8~12(5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여성의 구조, 상담, 의료,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한 매뉴얼의 필요성 대두 -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자활지원 통합 제시 및 현 상황에 부각되는 문제를 언급하여 현장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킴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분야별 자문회의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 매뉴얼 - 법률지원 매뉴얼 - 의료지원 매뉴얼 - 자활지원 매뉴얼 		



7. 여성연예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자	김선택(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연구기간	2011.8~12(5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 대두 - 체계적인 법제화 및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 자료 마련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자문회의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예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개념, 유형 및 실태 검토 - 여성연예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현행법적 구제의 불충분성 논의 - 여성연예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국회계류 입법안 문제점 논의 - 여성연예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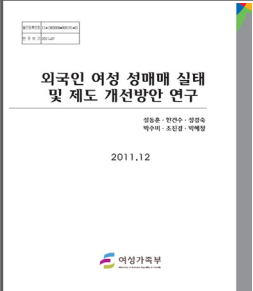
8.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Ⅲ:
여성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연구자	윤덕경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간	2011.1~12(12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이 경험하는 여성폭력의 실태 파악 및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에 관한 검토 필요 -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및 실질적 대응책 제시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실태조사, FGI, 심층면접, 안전포럼 및 국내컨퍼런스 개최, 자문회의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청소년 안전과 관련된 공식통계 분석 - 여성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법·정책적 대응 논의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실태 분석 - 지원체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분석 - 여성청소년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제시 		

9. 유희주점영업의 유희종사자 실태 연구

 <p>유흥주점영업의 유희종사자 실태연구</p> <p>2011</p> 	연구자	변화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구기간	2011.7~12(6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업소 유희종사자의 실태, 문제점 규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대두 -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유희주점영업 유희종사자 규정에 초점을 두어 법규정 개정안과 관련제도 개선안 제시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자문회의, 사례분석, 설문조사, 개별인터뷰, 2차 자료 분석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의 유희종사자 관련규정 및 문제점 분석 - 유희주점 및 유희종사자의 규모, 실태 파악, 관리체계 분석 - 해외 유희주점영업 관련 사례분석 - 유희주점 유희종사자에 관한 국민 이해도 및 의견수렴 - 유희주점영업 유희종사자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10.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자	설동훈(전북대학교)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연구기간	2011.5~12(8개월)
	발행일	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성매매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의 적발 사례가 늘고 있음 -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실태 파악 및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 연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설문조사, 심층면접, 참여관찰 등 실시 - 심층면접, 직접관찰, 사이트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현장 자문, 델파이 조사 등 실시 •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여성의 이주와 업소 배치 - 유흥업소 취업 유형 및 노동 조건 - 외국인 여성의 삶의 질과 인권침해 실태 -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단속사례 분석 -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방지 대책안 제시 		

성매매 관련 법령(2012년 개정)*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1)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품접객업 내 상담소 연락처 등 게시 내용 신설(제20조의2)
 - 2)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 설정
- 개정일 : 2012년 2월 1일
- 시행일 : 2012년 8월 2일
- 법률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20조의2(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업무와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불법원인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p> <p>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p>

* 성매매와 관련한 법률 중 2012년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업의 영업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장소, 그 밖에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2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를 위반한 자 	<p>제24조(과태료)①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조를 위반한 자
<p>〈신 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가. 게시물의 크기 :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300mm 이상

나. 게시장소 : 출입구 등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다. 게시물 재질 및 색상

(1)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2) 색상

(가) 글씨 : 흑색

(나) 바탕 : 백색

(게시방법의 예시)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등 채권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근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항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피해에 대한 각종 상담, 구조, 의료,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유흥주점영업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도의 연락처 기재
성매매 피해상담소 연계(24시간) : 1366

여성가족부 장관, 시·군·구청장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1)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추가 : 국가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가능 (제7조의2)
 - 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벌칙 강화 :
 -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일 : 2012년 2월 1일
- 시행일 : 2012년 8월 2일
- 법률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p><신 설></p>	<p>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p> <p>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p>	<p>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p>

개정 전	개정 후
<p><u>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p> <p>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p> <p>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p>	<p><u>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p> <p>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p> <p>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p> <p>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p>

3.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¹⁾

• 주요 개정 내용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신설(제1조의2)
- 2)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제1조의3) : 온라인 제
공자가 상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규정
- 3)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제1조의4) : 성범죄의 수사절차상 피해
자가 보호되어야할 중요 조치들을 정하여 수사절차상 입을 수 있
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함
- 4) 보호시설 등의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제1조의5)
- 5)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 존중(제1조의6) :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함에 있어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의사
존중 및 변경 가능
- 6)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에 대한 범위의 구체화(제2조의2)
- 7) 수강명령 위탁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 확대(제6조)
- 8) 소년부 송치 부적절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상담과정
등 수강명령시간 규정(제6조의2)
- 9) 가해아동·청소년의 교육이수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제6조의3)
- 10) 공개정보 열람을 위한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의 이용 접속시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공공아이핀) 사용 도입(제17조)
- 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기관을 관할경찰서에서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제20조)

1) 법률개정 전후 비교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12)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의 관련 규정 신설(제22조의 2~제22조의5) :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
 - 13)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련 사항 조사 요청시 통보내용 및 관련기관의 협조 근거(제24조)
 - 14)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시 서면 기재사항(제25조)
 - 15)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 의무사항 구체화(제26조)
- 개정일 : 2012년 3월 13일
 - 시행일 : 2012년 3월 16일(일부 9월 16일 시행)

여성과 인권

2012년 상반기 (통권 제7호)

등록번호 서울중.사00033

국제연속표준간행물(ISSN) 2093-5714

발행일 | 2012년 6월

발행인 | 김호순

편집인 | 김지혜

기획 및 편집 | 김자영, 최선화

편집자문위원 |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김영옥(성공회대학교 강사),
변혜정(전 서강대학교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교수),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유복임(전 다시함께센터 소장),
정경숙(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발행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주소) 100-859 서울시 중구 중림동 419 센트럴플레이스빌딩 3층

전화) 02-3210-1050

팩스) 02-3210-1051

홈페이지) <http://www.stop.or.kr>

인쇄 | 경성문화사